Ⅰ. 일반

1. 국가개요

가. 국가개황

국명	미합중국(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면적	9,833,517 ㎢ (자료원 : CIA, 2018 기준)
수도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인구	327,167,434 명 (자료원 : 미 인구조사국, 2018 기준)
민족(인종)	백인(76.6), 흑인(13.4%),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3%), 아시아인(5.8%),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이상 인종(2.7%)(주: 히스패닉 인구는 백인, 흑인 등 상기 6개 인종에 모두 포함돼 집계됐는데, 히스패닉 인구만 별도로 계산하면 전체 인구 중 히스패닉 인구 비중은 18.1%) (2017 기준)
언어	영어
종교	기독교/가톨릭(70.6%), 유대교(1.9%), 불교(0.7%), 이슬람(0.9%), 힌두교(0.7%), 토착신앙(0.3%), 기타(1.5%), 무교(22.8%)
기후	ㅇ 서해안 지방: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와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시애틀(Seattle) 등이 위치한 서해안은 지중해성 기후 지역으로서, 1년을 통틀어 기온의 큰 변화가 없으며 따뜻한 편이다. ㅇ 내륙지방: 라스베이거스(Las Vegas) 등의 내륙 사막지대는 기온의 일교차와 연교차가 매우 심하다. 계절에 상관없이 30°C 이상의 일교차가 난다. ㅇ 로키 산맥(the Rockies) 지대: 산악지대이므로 봄이나 여름에는 기온이나 습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산을 넘기에 적당하다. 하지만 겨울은 눈에 항상 뒤덮여 있고 아주 추운 편이다. ㅇ 5대호(Big 5 Lakes) 지방: 시카고, 디트로이트(Detroit) 등이 있는 5대호 지방은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를 띤다. 여름에도 서늘하고 겨울에는 상당히 춥다. 밤낮의 기온 차도 큰 편이다. 여름에 천둥과 회오리바람을 동반하기도 한다. ㅇ 남부지방: 올랜도(Orlando), 마이애미(Miami) 등이 있는 플로리다(Florida)는 1년 내내 비가 많고 습기가 있다. 특히 여름에는 천둥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조지아(Georgia)와 앨러배마(Alabama), 테네시(Tennessee)주는 사계절이 뚜렷하나 동부 지방에 비해 겨울이 온화하고 여름이 무덥다. ㅇ 동해안 지방: 일반적으로 봄과 가을이 짧다. 여름에는 40°C를 넘을 때도 있는 반면, 겨울은 영하 10°C 이하가 되는 날이 많다. 오대호 주변에 저기압이 발생하면, 이 일대에 짧으면 3~4일, 길면 일주일 이상 비나 눈이 오는 경우도 있다.
국가원수	대통령 :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일반-국가개요)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관계

가. 한국과의 국교 수립 및 협정 현황

국교 수립일

1882-05-22 (자료원 : 미국 국무부)

협정 발효 현황

협정명	발효일자	발효내용	비고
조미 수호 통상 조약	1882-05-22	조선이 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이에 개입하여 조정을 행사하도록 함. 상호 외교관을 파견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수출입 관세에 대한 규정을 명문화 함	
한미 상호방위조약	1953-08-08	미군 2개 사단을 한국 휴전선 서부전선에 배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2008-11-11	비자 없이, 관광 혹은 상용 목적 (비이민 B 비자 목적들만 해당 됨)으로 최대 90일까지 체류가 가능	
주재원 비자(L비자) 유효기간 연장	2010-12-03	최장 3년인 L 비자 유효기간을 5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함에 따람 미국이 이를 수용	
한미 자유무역 협정	2012-03-15	한미 간 관세 장벽 철폐 및 상호 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 마련	2018년 3월 한미 FTA 재협상안이 타결되었으며, 이번 재협상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를 20년간 연장하는 한편, 미국 환경 기준 충족 시 수입이 허용되는 미국산 자동차 수입 쿼터는 2배로 늘리게 됨. 동시에 진행됐던 무역 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부과를 면제해주는 대신 이전 대미 수출량의 70%까지만 철강 수출이 허용되는 쿼터제를 FTA 재협상의 일환으로 포함.

<자료원 : 국사편찬위원회, 국가기록원, 산업통상자원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상무부>

한국교민 수

2,492,252 명 (자료원 : 외교부(2017년 기준))

나. 최근 양국간 현안이슈

정치

ㅇ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지속되며, 미-중 통상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의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도 직, 간접적인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18년 6월 12일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며, 회담 후 양 국은 합의문에 서명하며 북한의 비핵화와 북한체재안전보장을 약속하였다.

경제

ㅇ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한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를 결정하였다. 2017년까지 3년간 대미 수출치의 70%에 해당하는 앱솔루트 쿼터 제를 도입하기로 협의하였다.

ㅇ 트럼프 행정부는 외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 부과를 검토 중에 있다. (무역확대법 232조에 의거)

ㅇ 미 정부가 JCPOA를 탈퇴하면서 이란에 대한 제재가 재개되었다. 한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에 대한 일시적 면제권을 부여받았다.

문화

ㅇ 지역별 한인 타운 및 문화원을 중심으로 한인 문화가 형성되어 있으며, 미국 젊은 층 사이에선 K-pop과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을 접하는 경우가 많다. 도시별로 한국 음식점 및 현지 식당에서도 한국식 요리를 종종 볼 수 있는 등 한국 문화 및 음식이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일반-한국과의 관계)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경제지표

가. 주요 경제지표

경제지표	2014	2015	2016	2017	2018
경제성장률 (%)	2.45	2.88	1.57	2.22	-
명목GDP (십억$)	17,521.75	18,219.3	18,707.15	19,485.4	20,513
1인당 GDP (PPP, $)	54,952.4	56,718.32	57,814.53	59,792.01	62,517.53
정부부채 (% of GDP)	104.58	104.79	106.84	105.2	106.14
물가상승률 (%)	1.61	0.12	1.27	2.14	2.4
실업률 (%)	6.18	5.27	4.87	4.35	3.78
수출액 (백만$)	1,621,873.79	1,503,328.35	1,451,023.53	1,546,272.96	1,664,085.33
수입액 (백만$)	2,421,330.16	2,315,889.22	2,249,943.88	2,408,475.7	2,614,326.9
무역수지 (백만$)	-799,456.37	-812,560.87	-798,920.35	-862,202.74	-950,241.57
외환 보유고 (백만$)	132,308.62	119,222.48	118,594.76	125,286.24	127,486.16
이자율 (%)	0.13	0.38	0.63	0.88	-
환율 (자국통화)	1	1	1	1	1

<자료원 : IMF>

경제 동향

2018년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은 3.5%로 전 분기(4.2%) 대비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견조한 성장을 지속했다. 개인소비지출 증가율은 미국의 감세 효과와 양호한 공용 상황으로 전 분기(3.8%) 대비 증가한 4.0%를 기록했다. 민간투자는 감세, 재정지출 확대 등 경기부양 효과가 이어지면서 비주택 고정투자와 지식재산권 투자 증가에 힘입어 12.0%의 성장을 보였다. 실업률은 3.8%로 완전고용에 근접한 수준에서 취업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임금이 상승하는 등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물가도 연준 목표 수준인 2.0%를 유지했다.

경제 전망

IMF에 따르면, 2019년 미국 경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 2.7%의 성장을 이어갈 전망이다. 고용시장 호조 및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개선, 주택가격 상승과 주가 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 양호한 소비 심리 등의 요인으로 민간소비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준비은행은

금융시장 급락이나 경기의 큰 폭 둔화는 연준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으며 미국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은 '중간(moderate)'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무역 분쟁, 관세부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 분쟁 확대 시 경기성장세가 위축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자료원: 국제무역센터, 한국은행)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일반-경제지표)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Ⅱ. 무역

1. 수출입

가. 국가별 수출입

- 수출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캐나다	280,582,448,467
2	멕시코	235,745,087,295
3	중화인민공화국	116,071,708,830
4	일본	62,441,249,701
5	영국	56,103,379,996
6	독일	49,641,402,076
7	대한민국	43,444,787,481
8	네덜란드	40,184,660,174
9	홍콩	37,126,659,073
10	벨기에	34,149,204,363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캐나다	266,764,846,599
2	멕시코	229,701,720,993
3	중화인민공화국	115,602,060,260
4	일본	63,234,270,311
5	영국	55,280,153,195
6	독일	49,164,592,884
7	대한민국	42,308,096,518
8	네덜란드	39,682,742,036
9	홍콩	34,872,025,357

10	프랑스	32,618,447,002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캐나다	282,242,783,021
2	멕시코	243,314,383,193
3	중화인민공화국	129,893,514,886
4	일본	67,602,396,570
5	영국	56,243,524,085
6	독일	53,497,508,196
7	대한민국	48,326,087,662
8	네덜란드	41,502,955,479
9	홍콩	39,921,727,912
10	브라질	37,220,703,138

<자료원 : UN Comtrade>

- 수입 상위 10개국(최근 5년)

2015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04,028,116,963
2	캐나다	301,942,705,090
3	멕시코	299,181,820,273
4	일본	135,023,800,046
5	독일	127,170,567,394
6	대한민국	74,045,677,880
7	영국	58,887,110,546
8	프랑스	48,864,400,404
9	인도	46,677,949,828
10	이탈리아	45,424,138,451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481,516,029,544
2	멕시코	296,761,578,397
3	캐나다	282,955,447,094
4	일본	135,116,982,811
5	독일	116,266,722,998
6	대한민국	71,881,138,597
7	영국	55,153,137,778
8	프랑스	47,769,520,324
9	인도	47,740,263,696
10	이탈리아	46,607,827,030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국가명	금액($)
1	중화인민공화국	526,022,307,970
2	멕시코	317,207,180,158
3	캐나다	305,878,828,303
4	일본	139,797,020,593
5	독일	119,991,393,155
6	대한민국	73,448,658,005
7	영국	53,950,438,183
8	이탈리아	51,352,712,176
9	인도	50,572,908,283
10	프랑스	50,036,407,688

<자료원 : UN Comtrade>

나. 품목별 수출입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최근 5년)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60,892,034,793
2	271019	기타	47,366,710,742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5,277,494,511
4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21,754,446,056
5	300490	기타	20,869,914,060
6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20,673,522,412
7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9,077,215,240
8	120190	기타	18,882,659,282
9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8,504,250,775
10	710239	기타	18,322,918,669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61,069,757,655
2	271019	기타	37,651,703,733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4,267,743,018
4	120190	기타	22,821,180,908
5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21,927,837,788
6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9,848,789,723
7	300490	기타	19,173,789,675
8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18,856,003,600
9	710239	기타	18,845,374,096
10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8,604,872,955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166,344,953,276
2	271019	기타	48,155,755,880
3	271012	경질(輕質)석유와 조제품	29,557,329,273
4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2,593,652,139
5	120190	기타	21,460,696,717
6	710812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19,609,616,103
7	854231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 변환기 · 논리회로 · 증폭기 · 클록(clock) ·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18,963,184,488
8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18,813,665,909
9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8,703,441,749
10	710239	기타	17,896,986,105

〈자료원 : UN Comtrade〉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최근 5년)

2015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2,593,219,159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98,653,499,815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5,073,067,919
4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8,258,234,802
5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3,048,519,267
6	300490	기타	48,177,091,913
7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0,475,866,342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39,806,419,966
9	271019	기타	30,695,301,047
10	710239	기타	23,603,523,149

〈자료원 : UN Comtrade〉

2016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08,066,464,403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07,650,915,701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86,422,887,484
4	300490	기타	51,344,197,521
5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50,618,647,817
6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0,161,122,949
7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5,811,660,447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36,358,383,527
9	710239	기타	23,532,309,629
10	271019	기타	23,034,262,221

<자료원 : UN Comtrade>

2017년

No	HS CODE	품목명	금액($)
1	27090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139,300,637,825
2	870323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하고 3,000시시 이하인 것	103,294,738,551
3	999999	종류에 지정되지 않은 상품.	99,776,126,434
4	851712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56,407,263,672
5	300490	기타	50,419,823,523
6	851762	음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 · 변환용 · 송신용 · 재생용 기기[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48,123,207,047
7	870324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47,619,147,595
8	84713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및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에 한한다)	40,472,015,130
9	271019	기타	28,092,285,922
10	847150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 · 입력장치 · 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3,511,502,768

〈자료원 : UN Comtrade〉

국가정보(무역-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한국과의 수출입

가. 한국의 對주재국 교역 현황

(금액 : 백만$)

년도	수출액	수입액	무역수지
2014	70,285	45,283	25,002
2015	69,832	44,024	25,808
2016	66,462	43,216	23,246
2017	68,610	50,749	17,861
2018	59,438	48,651	10,78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나. 주요 수출입 품목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14,591	1,551	13,039
2	7420	자동차부품	5,664	429	5,235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3,157	3,720	-563
4	8121	무선전화기	5,246	514	4,731
5	1333	제트유및등유	2,367	1	2,365
6	8132	보조기억장치	1,685	69	1,615
7	7251	건설중장비	1,046	149	897
8	3203	타이어	1,330	82	1,247
9	2140	합성수지	982	898	83
10	8352	축전지	907	28	878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출품목(2018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411	승용차	9,378	1,198	8,180
2	7420	자동차부품	4,423	280	4,143
3	8311	집적회로반도체	3,524	2,654	870
4	8121	무선전화기	3,481	16	3,465
5	1333	제트유및등유	2,026	2	2,024
6	8132	보조기억장치	1,236	34	1,202
7	7251	건설중장비	1,020	43	977
8	3203	타이어	941	45	896
9	2140	합성수지	873	727	146
10	8352	축전지	811	26	785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7년)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303	5,074	-4,771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3,157	3,720	-563
3	1310	원유	0	725	-725
4	1350	LPG	17	1,903	-1,886
5	0221	가축육류	0	1,711	-1,711
6	1340	천연가스	0	806	-806
7	7471	항공기	165	1,223	-1,058
8	0136	사료	1	1,174	-1,173
9	7411	승용차	14,591	1,551	13,039
10	7472	항공기부품	964	1,527	-563

- 한국의 對주재국 상위 10개 수입품목(2018년 (9월))

(금액 : 백만$)

No	코드(MTI 4단위)	품목명	수출금액	수입금액	무역수지
1	7321	반도체제조용장비	190	3,105	-2,915
2	8311	집적회로반도체	3,524	2,654	870
3	1310	원유	0	2,238	-2,238
4	1350	LPG	13	1,987	-1,974

5	0221	가축육류	0	1,708	-1,708
6	1340	천연가스	0	1,479	-1,479
7	7471	항공기	123	1,385	-1,262
8	0136	사료	1	1,206	-1,205
9	7411	승용차	9,378	1,198	8,180
10	7472	항공기부품	758	1,145	-387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무역-한국과의 수출입)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무역협정

가. 무역협정 체결현황

협정명	체결국가	체결일자	발효일자	비고
U.S.-Australia FTA	호주	2004-05-18	2005-01-01	
United States-Bahrain FTA	바레인	2001-09-14	2006-01-11	
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콰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2004-08-05	2006-03-01	
Chile Free Trade Agreement	칠레	2003-06-06	2004-01-01	
United States- Colombia Trade Promotion Agreement	콜럼비아	2006-11-22	2012-05-15	
Israel Free Trade Agreement	이스라엘	1985-04-22	1995-01-01	
Jordan Free Trade Agreement	요르단	2000-10-24	2001-12-17	
Morocco Free Trade Agreement	모로코	2004-01-15	2006-01-01	
Oman Free Trade Agreement	오만	2006-01-19	2009-01-01	
Korea US Free Trade Agreement	한국	2018-03-26	2012-03-15	미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한미 FTA 재협상에 돌입하여, 2018년 3월 26일 재협상안이 타결되었다. 미국 측은 별다른 국회 통과 절차가 불요하나, 한국은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어 발효일은 재협상 이전 발표일로 표기하였다.

나. 논의 중 협정

협정명	협정대상국가	협정진행내용	비고
USMCA	캐나다, 멕시코	협상안 타결, 이행 준비	2018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G20 회담에서 협정문에 대한 삼국 정상의 서명이 완료되었다.

국가정보(무역-무역협정)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수입규제 및 관세

가. 대한 수입규제 현황

- 반덤핑/상계관세/세이프가드/수입쿼터

No	HS코드	품목명	규제내용	조사개시일
1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반덤핑(조사중)	2018-01-17
2	7305.11, 7305.12, 7305.19, 7305.31, 7305.39	대형구경강관(Large Diameter Welded Pipe)	상계관세(조사중)	2018-01-17
3	5503.20	저융점 폴리에스터(Low Melt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규제중)	2017-06-27
4	8450.20, 8450.11, 8450.90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06-05
5	5503.20	합성단섬유(fine denier polyester staple fiber)	반덤핑(규제중)	2017-05-31
6	8541.40, 8501.61, 8507.20, 8501.31	결정질실리콘태양전지(Crystalline Silicon Photovoltaic Cells and Modules)	세이프가드(규제중)	2017-05-17
7	7304.31, 7304.51, 7306.30, 7306.50	냉간압연강관(Cold-Drawn Mechanical Tubing)	반덤핑(규제중)	2017-05-09
8	7213.91 7213.99 7227.20 7227.90	탄소합금강선재(Carbon and Alloy Steel Wire Rod)	반덤핑(규제중)	2017-04-17
9	4002.19	ESBR고무 (Emulsion Styrene-Butadiene Rubber)	반덤핑(규제중)	2016-07-27
10	2917.39, 3812.20	가소제 (DOTP; Dioctyl Terephthalate)	반덤핑(규제중)	2016-07-20
11	7208.40,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25.40, 7226.20, 7226.91, 7208.53, 7208.90, 7210.70, 7210.90, 7211.19, 7211.90, 7212.40, 7212.50, 7214.10, 7214.30, 7214.91, 7225.11, 7225.19, 7225.99, 7226.11, 7226.19, 7226.99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반덤핑(규제중)	2016-04-28

12	7208.40, 7208.51, 7208.52, 7211.13, 7211.14, 7225.40, 7226.20, 7226.91, 7208.53, 7208.90, 7210.70, 7210.90, 7211.19, 7211.90, 7212.40, 7212.50, 7214.10, 7214.30, 7214.91, 7225.11, 7225.19, 7225.99, 7226.11, 7226.19, 7226.99	탄소합금후판(Carbon and Alloy Steel Cut-to-length Plate)	상계관세(규제중)	2016-04-28
13	7202.92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반덤핑(규제중)	2016-04-19
14	7405.00	인동(Phosphor Copper)	반덤핑(규제중)	2016-03-30
15	7208.10/25/26/27/36/37/38/39/40/53/54/90, 7210.70/90, 7211.14/19/90, 7212.40/50, 7214.91/99, 7215.90, 7225.11/19/30/40/99, 7226.11/19/91/99, 7228.60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상계관세(규제중)	2015-09-01
16	7208.10/25/26/27/36/37/38/39/40/53/54/90, 7210.70/90, 7211.14/19/90, 7212.40/50, 7214.91/99, 7215.90, 7225.11/19/30/40/99, 7226.11/19/91/99, 7228.60	열연강판(Hot-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5-09-01
17	7209.15/16/17/18/25/26/27/28/90, 7210.70/90, 7211.23/29/90, 7212.40/50, 7215.10/50/90, 7217.10/90, 7225.19/50/99, 7226.92/99, 7228.50/60, 7229.90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5-08-17
18	7209.15/16/17/18/25/26/27/28/90, 7210.70/90, 7211.23/29/90, 7212.40/50, 7215.10/50/90, 7217.10/90, 7225.19/50/99, 7226.92/99, 7228.50/60, 7229.90	냉간압연강판(Certain Cold-Rolled Steel Flat Products)	상계관세(규제중)	2015-08-17
19	7306.61	강벽사각파이프(Heavy Walled Rectangular Welded Carbon Steel Pipes and Tubes)	반덤핑(규제중)	2015-07-21
20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90, 7225.91/92, 7226.99, 7228.60, 7229.90	도금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Flat-Rolled Steel)	상계관세(규제중)	2015-06-23
21	7210.30/41/49/61/69/70/90, 7212.20/30/40/50/60, 7215.90, 7217.90, 7225.91/92, 7226.99, 7228.60, 7229.90	도금강판 (Certain Corrosion-Resistant Steel Products)	반덤핑(규제중)	2015-06-23

22	7305.11/12/19, 7306.19	송유관(Welded Line Pipe)	반덤핑(규제중)	2014-11-05
23	7317.00, 8206.00	강철 못(Steel Nail)	반덤핑(규제중)	2014-06-19
24	7225.50, 7225.99, 7226.92, 7226.99, 7225.19, 7226.19	무방향성 전기강판 (NOES: Non-Oriented Electrical Steel)	반덤핑(규제중)	2013-10-22
25	7304.29, 7305.20,7306.29, 7304.39, 7304.59, 7305.31, 7306.30, 7306.50	유정용 강관 (OCTG : Oil Country Tubular Goods)	반덤핑(규제중)	2013-07-02
26	8450.20, 8450.11, 8450.90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반덤핑(규제중)	2012-01-09
27	8450.20, 8450.11, 8450.90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상계관세(규제중)	2012-01-09
28	8504.23/90	유입식 변압기(Large Power Transformers)	반덤핑(규제중)	2011-07-14
29	7306.61	연벽사각파이프(Light-Walled Rectangular Pipe and Tube)	반덤핑(규제중)	2007-07-18
30	7312.10	PC강선(Prestressed Concrete steel wire strand)	반덤핑(규제중)	2003-02-27
31	5503.20	폴리에스터 단섬유사(Polyester Staple Fiber: PSF)	반덤핑(규제중)	1999-04-30
32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99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반덤핑(규제중)	1999-03-16
33	7208.40/51/52/53/90, 7210.70/90, 7211.13/14/90, 7212.40/50, 7225.40/50/99, 7226.91/99	철강후판(Cut-to-length Carbon Steel plate)	상계관세(규제중)	1999-03-16
34	7219.13/14/32/33/34/35/90, 7220.12/15/20/9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반덤핑(규제중)	1998-06-30
35	7219.13/14/32/33/34/35/90, 7220.12/15/20/90	스테인레스 냉연강판 코일(cold-rolled stainless steel sheet and strip in coils)	상계관세(규제중)	1998-06-30
36	7221.00	스테인레스 선재(Stainless Steel Wire Rod)	반덤핑(규제중)	1997-08-26
37	7306.40	스테인리스 용접강관 (ASTM A-312 welded stainless steel pipes)	반덤핑(규제중)	1991-11-01
38	7306.30	스탠다드 강관(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s)	반덤핑(규제중)	1991-10-04

<자료원 :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 통합지원센터>

수입금지품목

양의 내장으로 제조된 하기스(Haggis)를 비롯한 동물의 폐로 만든 식품, 쿠바산 시가, 앱상트(주류), 위조품, 개와 고양이의 털로 제조된 물품, 무기류, 헌팅 트로피(Hunting Trophy), 문화제 등의 미국 수입은 금지되어있다. 이 밖의 특정 동·식물, 이란, 쿠바, 미얀마와 수단으로의 상품 수입도 금지되어있으나, 특정 물품 혹은 사전 허가를 받은 물품 등에 한 해 수입이 허가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자료원 :https://www.cbp.gov/travel/us-citizens/know-before-you-go/prohibited-and-restricted-items)

나. 비관세장벽

인증제도

미국에서는 산업별로 생산자 적합성 선언(자체 인증으로 제조제품이 이미 수립된 안전이나 품질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했다는 자체선언)이나 산업협회별 자발인증제도가 보편적으로 활용되며, 정부 차원의 강제 인증은 드물게 사용된다. 미 정부는 제품이 강제 준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생산자나 공급자 및 유통 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하며, 산업별 협회의 자발적 인증 활동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시에만 제품의 강제 요건 준수 판정에 직접 관여한다. 미 의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 특정연방기관에 일정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당해 연방기관이 공공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일련의 규정을 제정하도록 하는데, 이 규정과 함께 인증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주요 인증별 현황은 아래와 같다.

1) 정부 차원에서 요구하는 인증의 종류

ㅇ 일반 사용자나 공공의 건강 혹은 안전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인증
- 식품, 약품, 의료기기 등에 대한 미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인증
- 정보통신기기, 전구, 의료기기, 케이블 모뎀, 전화기 등 전파 발생장치 및 사용 시 전파를 발생하는 부품이나 구성요소에 대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인증
-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에 대한 미 연방항공청(FAA: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인증
- 인공호흡장치나 기타 호흡보조기구에 대한 미 산업안전보건연구소(NIOSH: National Institute for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인증
- 광산에서 사용되는 전자제품 및 기타 잠재 위험 기기에 대한 광산안전보건청(MSHA: 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인증

ㅇ 지방정부 차원이나 개별정부조달 구매 이전, 재시험 필요성 감소 목적 인증
- 미 국방부(Dept. of Defense)의 군에서 사용되는 부품, 자재 등에 대한 적격 제품 목록(QPL: Qualified Products Listing)
- 이를 생산하는 제조업체 대한 적격 생산자 목록(QML: Qualified Manufacturing Lists) 제도

ㅇ 판매용 제품의 상태나 질을 판정하는 균일한 판단 기준 제공 인증
- 미 농무부(USDA, U.S. Dept. of Agriculture)의 육제품에 대한 등급부여 및 인증제도

2) 연방정부가 인가(Accreditation)한 민간기구 인증

연방정부는 직접 주관하는 인증제도와 함께 민간기구의 인증을 인정(accreditation)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미 노동부 산하 산업안전보건청(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전기·전자 제품을 대상으로 운용하고 있는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를 들 수 있다. 법령에 의거, 모든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은 미 산업안전보건청이 인가한 국가공인 시험소인 NRTL에서 인증(테스트 통과 업체로 등재 혹은 레이블 부착)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유통되는 거의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부착된 UL 마크도 NRTL로 인가된 민간 기구인 안전인증 시험기관(UL: Underwriters Laboratories)에 의한 민간 인증마크이다.

3) 강제인증과 자율인증

한국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 정부부처, 행정기관,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 중 강제인증제도는 134개, 자율인증제도는 178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강제인증제도의 경우 에너지부 등 연방정부부처에서 85개, 연방통신위원회 등 행정기관에서 49개를 운영하고 있고 자율인증 제도는 연방정부부처에서 42개, 행정기관에서 12개, 민간기구 및 단체에서 124개를 운영하고 있다.

TBT

비관세 장벽의 유형 중 하나인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은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 등 국가 간의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지칭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 존재하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예는 아래와 같다.

ㅇ 차별적으로 적용 중인 미 섬유 원산지 판정 기준인 '얀(yarn) 포워드 룰'로 인해 미 수입시장 내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저하
- '얀 포워드 룰'은 의류 제품에 대해 역내 생산을 인정받고 관세 특혜를 받으려면 실부터 옷이 되기까지의 전 과정이 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섬유업은 대부분 개발도상국으로 이전된 상태이고 우리 기업들은 일부 화학섬유 외에는 '얀 포워드 룰'에 따라 역내 의류 제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얀 포워드 룰: 직물, 의류 등 섬유 완제품에 들어간 원사의 생산지가 결국 섬유완제품의 원산지가 되는 제도를 의미

ㅇ 식품 안전 현대화법(FSMA) 시행 이후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및 검역 강화로 인해 수입통관 시 시간 및 비용의 증가
-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동일 상품에 대해서도 매번 검역을 실시하고 있어 통관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이 증가됨.
- 통관 기간 동안 물품 보관비용, 운반비용 등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통관이 지연될수록 기업 부담이 커짐.

ㅇ 육류 가공 제품에 대한 까다로운 수입 규정
- 미국은 육류 수입에 관해 까다로운 기준을 가지고 있어 동물성 제품의 경우 USDA의 APHIS로부터 증명서를 받아야 하며, 육류와 가금류, 계란의 경우에는 별도의 증명서를 받아야 함.
- 식품류 수출 시 FDA에 해외 식품 공장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공장은 수출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라면 수프나 건강음료에 첨가된 쇠고기에도 검역증이 필요하고 조미료에 가공육류를 이용한 제품을 미국으로 수입하기 어려우며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원료로 들어간 육류의 경우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곳에서만 가공되거나 생산되어야 함.
- 현재 호주에 인증받은 공장을 통해 제품을 만드는 몇몇 기업을 제외한 그 외 한국 및 해외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수 없음.

다. 관세제도

관세제도 개요

미국의 관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내의 미국 세관(www.cbp.gov)이다. 동 기관은 매우 광범위한 정보를 미국에 수입되는 매 품목에 대한 정보를 전산화 처리하고 있어 어느 국가에서 어떤 제품이 주로 수입되고, 수입 시 가격은 얼마이며 주 생산업체는 누구인지 등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광범위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입제품의 가격은 적절한지, 원산지는 맞는지 등에 대해 서류조사를 하고 이에 따라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세관의 수입규제는 없다. 미국 세관은 농무부(www.usda.gov)와 식약청(www.fda.gov)을 비롯해 모든 국가 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불법적인 수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해충, 해로운 짐승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미국은 무기류, 마약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수입이 자유화돼 있으며, 섬유와 같은 품목에 한해 일부 '관세율 쿼터'(TRQ; Tariff Rate Quotas)로 관리하고 있다. 기본적인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ㅇ 수입 관련 규정 사이트: http://www.cbp.gov/trade/basic-import-export

관세율 알아보는 법

1) 관세산정을 위한 세번 분류(CLASSIFICATION)

수입상품의 관세율은 수입상품의 가격에 관세율(관세율표상의 세율)을 곱해 결정된다. 그리고 수입상품별 관세율은 해당 상품의 세번 분류에 따라 결정되므로 통관 신청 전에 수입품의 세번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나 통관사는 통관서류 제출 시 세번과 수입상품의 가격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돼 있다. 미국의 품목별 세번은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라는 책자를 이용해 파악이 가능하다. (12개의 Section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Section 별로 여러 개의 Chapters로 구성됐다) 과거에는 미국이 TSUA라는 독자적인 관세율 분류 체계를 적용했지만, WTO에서의 합의에 따라 HS체제로 개편됐다. Harmonized System은 6단위, 8단위, 10단위 및 12단위 등 다양한 분류방법이 이용되고 있는데 6단위까지는 세계 공통 분류이며, 8단위부터는 각국의 특성에 따라 독자적으로 분류해 사용하므로 세부품목을 분류하는 10단위는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다.

2) 관세 산정을 위한 가격결정

수입상품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이란 미국으로 수출하는 가격으로 지불됐거나 지불될 가격으로서 아래의 경비가 이에 포함돼야 하며, 이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 구매자가 별도로 지불한 포장경비
- 물품 판매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한 Commission
- 어떤 종류이든 상품에 보조된 경비
- 구매자가 재판매를 위해 지불한 Royalty 또는 License 비용
- 수출자가 물건을 팔기 위해 추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수출자의 경비

단, 아래의 경비는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수출국으로부터 미국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운송비
- 해상화재 보험료
- 미국에 수입된 후에 발생되는 기술보조경비, 운송비, 설치비 등
- 미국 내에서의 판매세금, 연방세금과 관세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을 신뢰할 수 없으며, 동종 또는 유사상품의 거래 실적도 없는 경우 공제가격(DEDUCTIVE VALUE)이 이용된다. 미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는 동일상품의 판매가격에서 이익금, 일반경비, Commission, 운송비, 보험료, 관세, 연방 세금과 수입된 후 추가된 경비를 순차적으로 차감해 가격을 계산한다.

상기 조건들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재료비, 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임금 및 기타경비 그리고 제조업자의 적정 이익 등을 합산한 구성가격(COMPUTED VALUE)을 산출해 거래가격을 결정한다.

3) 미국 관세율 확인법

미국의 관세율은 미국무역위원회(USITC)가 세번 코드인 HS Code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반덤핑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미국의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무역위원 홈페이지: www.usitc.gov

미국의 관세율표는 미국 무역위원회가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가장 최신의 관세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어 무역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세율을 조사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수출하려는 품목의 HS Code(최소 여섯 자리 필요)를 입력한 후 검색을 한 다음, 검색 결과 중 정확한 품목을 골라서 클릭 후 검색을 다시 누르면 해당 품목의 수입량, 관세 등 상세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다.

- 미국 무역위원회 관세율 홈페이지: https://hts.usitc.gov/

상기 링크의 관세율표에서 취급품목의 HS코드를 바탕으로 현재 일반 관세율 및 한-미 FTA 특혜관세율 확인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래 그림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의 HS코드가 6001.10.20(미국 측 기준)일 경우, 현재 일반 관세율은 17.2%이고 'KR'이라고 돼 있는 것이 한-미 FTA 특혜관세를 의미하므로 동 제품을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무관세가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미 FTA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미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하다.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무역-수입규제 및 관세)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통관 및 운송

가. 통관제도

통관 유형별 절차

1) 일반 통관절차 개요

미국의 '통관'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비화물신고(Consumption Entry)를 뜻하며 이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또는 개인사용 용도의 물품들에 대한 통관절차로 가장 기본적인 신고절차를 뜻한다. 소비화물 신고에는 상황에 따라 정식(Formal) 또는 약식(Informal) 통관으로 분류된다.

- 약식통관(Informal Entry)

항공, 해상 또는 우편화물로 미국에 들어오는 제품들 중 $2,500 미만의 인보이스 가격 또는 가치(Value)의 품목 통관에 활용 가능하다. 미국산 제품으로 해외로 수출되었다가 다시 미국으로 반입되는 경우도 활용 대상이다. 개인 이삿짐 등 개인 사용 물품으로 이민이나 해외 근무 후 귀국하는 경우에는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세금이 면제되며, 판매 또는 양도가 금지된다. 식품 등 다른 미 정부기관(미 식약청, 미 농림부 등)관할 및 규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약식 통관이 불가능하다.

소량의 상업용 샘플의 경우, 무관세 소비 통관(Duty Free Consumption Entries)이 가능하다. 무관세 소비 통관에서도 일반 물품은 분기별 3종, 알코올음료와 담배 제품은 분기별 1종으로 샘플 통관 수량을 제한하고 있다. 제품에 “Not for Sale”이라고 명시하거나 상업적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훼손된 물품에 한해 샘플 통관이 가능하다. 미국 세관의 샘플 통관 안내서에는 물품의 가치가 $2,500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 채권(Bond)을 통한 임시 수입(TIB또는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또는 까르네(Carnets) 통관이 가장 적절한 샘플 통관 방식으로 안내되고 있다.

- 정식통관(Formal Entry)

인보이스 가격이 $2,500 이상이거나, 수입허가 규제 품목, 국가의 세입보호 대상 품목과 세관 행정업무 수행상 필요할 때의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정식통관(Formal Entry)이 요구된다. 소비 통관(Consumption Entry)은 해외에서 수입되는 물품 대부분에 적용되며 품목분류에 따라 관세를 지불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미국 내에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로 가장 많이 이용된다.

쿼터 통관(Quota Entry)은 미국 내에서 판매를 위해 수입된 물품을 통관하는 경우 쿼터로 수입물량이 제한되어 있는 통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최근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적용되고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한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은 추가 관세 부과를 면제받았으나 쿼터제를 적용받아 수입 물량이 제한되어 있다.

창고통관(Warehouse Entry)은 특정한 경우에 따라 정식통관 과정을 거치기 전에 보세창고로 입고하는 통관을 뜻하며 앞서 소개한 쿼터 통관에 물량이 초과되어 다음 쿼터 오픈 시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 창고로 우선 입고하여 다음 쿼터 물량 오픈까지 보관, 통관이 가능하다. 또한, 정식 소비화물신고 통관에 앞서 물품 포장, 라벨링 등 단순한 추가 작업이 필요한 경우 창고로 우선 통관하여 보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식통관에는 통관 채권(Bond)을 세관에 제공해야 하며 통관 채권은 세관에 납부해야 하는 관세 및 수수료에 대한 납부 의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관과의 계약이다. 세관 채권은 관세와 관련 수수료에 대한 보증의 개념으로 세관으로 납부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에 모든 관세와 관련 수수료 지불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모든 수입자와 수입된 상품을 미국 내에서 운송하는 모든 운송업체는 세관 채권(Customs Bond)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반출허가를 받기 전에 세관 채권을 세관에 제공해야 한다. 수입품이 반덤핑 또는 상계관세 대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본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관 채권의 보증인(Surety)은 미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가 인정한 보험회사 및 기타 채권 전문 기관에서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채권

종류는 1~2회 사용 가능한 단기 세관 채권(Single Entry Bond)과 지속적인 통관에 사용 가능한 지속 세관 채권(Continuous Bond)으로 구분되며 1년에 수차례 수입되어 통관되어야 하는 품목에는 지속 세관 채권 사용이 유리하다.

통관 시 유의사항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료기기는 미 식약청 관할로 관련 규제가 적용되며 기본적으로 해외 생산기지 등록, 현지 에이전트 지정 및 등록, 제품 등록 및 시판 전 허가, 라벨링 규제 준수 등 관련 규제가 준수되어야 통관이 가능하다. 식품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육류 함유량 등의 제품 성분에 따라 미 농림부(USDA)의 규제가 추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 외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소비재는 미 소비자 안전청(Consumer Protection Safety Commission)의 안전성 규제가 적용되며 소비자 안전법에 따라 미 세관에서 안전성 테스트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의류, 원단, 보석, 운동용품, 냉장기구, 가구, 차량 등에 대한 안전성 규정 준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유아 및 아동의 접근이 가능한 모든 소비재의 안전성 규정 준수가 요구된다.

한미FTA 협정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 제품은 한국산으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미FTA 특혜관세 적용에는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세관에서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도 미국으로 제품을 배송하기 이전에 미리 원산지 증명서가 갖춰져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를 포함한 원자재 구매내역, 생산일지 등 관련 증빙 서류는 통관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5년의 보관 기간 동안 미 세관에서 사후검증을 위해 언제든지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최근 한미FTA로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되었으며 미 식약청도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는 화장품, 의약품 등에 대한 검증과 실사를 강화하여 한국어로 표기된 효능, 효과까지 확인하는 등 단순 화장품, 생활용품, 의약품 구분에 만전을 기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나. 주요 포워딩 업체 및 통관업체

ㅇ B&H

주소	147-19 Sprinfield Lane #A, Jamaica, NY 11413
전화번호	(718)525-7050
이메일	imports@bhchb.com
홈페이지	http://www.bhchb.com/

ㅇ Express Customhouse Broker

주소	18225 150th Ave, Springfield Gardens, NY 11413
전화번호	(718) 995-4700

ㅇ Excel International of New York

주소	700 ROCKAWAY TPKE. #401, LAWRENCE, NY 11559
전화번호	(516)371-2400
이메일	excel@excelny.com

홈페이지	http://www.excelny.com/

∘ Far East Forwarding, Inc

주소	177-17 150th Ave. Rm #203, Jamiace NY 11434
전화번호	1-718-244-7770
이메일	euimankimchb@yahoo.com

∘ KGL Networks

주소	230 Pegasus Ave. Northvale NJ 07647
전화번호	1-201-750-3535
이메일	ceo@kglnetworks.com
홈페이지	http://kglnetworks.com/

∘ Advanced International Freight

주소	20 Enterprises Ave. North Secaucus NJ
전화번호	1-551-257-7070
이메일	david@aif-usa.com
홈페이지	https://www.aif-usa.com/

∘ Binex Line

주소	19515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전화번호	1-310-416-8600
이메일	laimport@binexline.com
홈페이지	http://www.binexline.com/

∘ UCB Logistics, Inc.

주소	19401 S. Main St., Site 102, Gardena, CA 90248
전화번호	1-310-988-7042
이메일	laimport@binexline.com
홈페이지	https://www.unitedchb.com/

○ NGL Transportation

주소	500 W. 140th St., Gardena, CA 90248
전화번호	1-310-595-6752
이메일	logistics@ucb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www.ngltrans.com/

○ WeConnect Logistics

주소	500 West 140th Street, Gardena, CA 9028
전화번호	1-213-810-7297
이메일	dsp.la@ngltrans.com

○ Andrew Seo CHB

주소	12062 Valley View St., Suite 209, Garden Grove, CA 92845
전화번호	1-310-337-7272
이메일	info@andrewchb.com

○ MKC Customs Brokers International Inc.

주소	930 W. Hyde Park Blvd., Inglewood, CA 90302
전화번호	1-310-674-7100
이메일	mikec@mkcchb.com
홈페이지	https://www.mkcchb.com/

○ VIP Customs Services

주소	301 East Ocean Blvd., Suite 1730, Long Beach, CA 90802
전화번호	1-310-323-3009
이메일	info@vipcus.com

○ Pride Global Logistics

주소	1817 N Crenshaw Circle Vernon Hills, IL 60061
전화번호	1-847-362-6900

이메일	Info@pgl-llc.com
홈페이지	http://www.pgl-llc.com

ㅇ C.H.Robinson

주소	14701 Charlson Road Eden Prairie, Minnesota
전화번호	1-855-229-6128
이메일	solutions@chrobinson.com
홈페이지	http://www.chrobinson.com

ㅇ International Freight Services Inc

주소	1088 Thorndale Avenue, Bensenville, IL 60106
전화번호	1-630-274-6000
이메일	ifs@ifscargo.com
홈페이지	http://www.ifscargo.com

ㅇ Gandhi International Shipping

주소	7333 N Monticello Ave, Skokie, IL 60076
전화번호	1-847-673-6100
이메일	sales@gandhiShip.com
홈페이지	http://www.gandhishipping.com/

ㅇ PRINAJ SERVICES INC

주소	1505 Sibley Blvd, Calumet City. Illinois 60409
전화번호	1-833-277-4625
이메일	info@prinajservices.com
홈페이지	https://prinajservicesinc.com/

ㅇ PY Express USA

주소	2727 W. Airport Fwy., Irving, TX 75062
전화번호	1-214-205-9916
이메일	dfw@pumyang.com

홈페이지	http://www.pyexp.com/

○ US Com Logistics

주소	749 Port America Pl. suite 350, Grapevine, TX 76051
전화번호	1-817-421-4777
이메일	mhsoh@uscom.net
홈페이지	http://www.uscom.net/

○ Southwest Freight

주소	8189 S. Central Expressway, Dallas, TX 75241
전화번호	1-214-371-1901
이메일	blake.bostick@swfreight.com
홈페이지	http://www.swfreight.com/

○ Masterpiece International

주소	2222 S. Service Road, # 270, Dallas, TX 75261
전화번호	1-972-756-1010
이메일	dal@masterpleceintl.com
홈페이지	https://masterpieceintl.com/

○ DFW Freight

주소	2701 W. 15th St. # 600, Plano, TX 75075
전화번호	1-469-879-4238
이메일	info@dfwfreight.com
홈페이지	http://dfwfreight.com/

○ DB Schenker

주소	1760 Crossroads Drive, Odenton 21113
전화번호	1-410-674-8629
이메일	julian.duerschmidt@dbschenker.com

홈페이지	https://www.dbschenker.com/usa/

○ EXPRESS AIR FREIGHT / SKYLINE FREIGHT (IAD)

주소	45005 Aviation Drive Suite 130, Dulles, VA 20166
전화번호	1-703-996-8885
이메일	akelican@expressairwas.com
홈페이지	http://www.expressairfreight.com/

○ Expedited World Cargo, Inc

주소	P.O. Box 16548 - Washington, DC 20041
전화번호	1-703-318-0100
이메일	info@ewcnow.com
홈페이지	http://www.ewcnow.com/

○ Tigers Global Logistics

주소	23651 Overland Drive, Sterling, VA 20166
전화번호	1-703-661-4230
이메일	info@go2tigers.com
홈페이지	http://www.go2tigers.com

○ Vandegrift

주소	20 South Charles Street, Suite 501, Baltimore, MD 21201
전화번호	1-410-230-0373
이메일	twelsh@vandegriftinc.com
홈페이지	https://www.vandegriftinc.com/

○ KCC Transport System, INC.

주소	30991 San Clemente st. Hayward, CA 94544
전화번호	(650) 259-8899
이메일	kccsfo@kccusa.com

홈페이지	http://www.kccusa.com/kor/customs/

∘ Glovis

주소	41873 Ecorse Rd #200, Belleville, MI 48111
전화번호	1-734-398-3320
이메일	stpark@glovis.net
홈페이지	http://www.glovis.net/

∘ Ceva

주소	10049 Harrison # 100, Romulus, MI 48174
전화번호	1-284-618-3100
이메일	Kathleen.Norris@Cevalogistics.com
홈페이지	https://www.cevalogistics.com/

∘ O.T.S. USA

주소	3115 Beam Rd # A, Charlotte, NC 28217
전화번호	1-877-769-8879
이메일	info@otsusa.net
홈페이지	http://www.otsusa.net/

∘ Logos Logistics

주소	16490 Wahrman Road Ste 100, Romulus, MI 48174
전화번호	1-734-403-1777
이메일	info@logos3pl.com
홈페이지	http://logos3pl.com/

∘ NALARA

주소	35000 Industrial Road Livonia, MI 48150
전화번호	1-334-737-3820
이메일	bsl@nalara.com

홈페이지	http://www.nalara.com/

국가정보(무역-통관 및 운송)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Ⅲ. 투자

1. 투자환경

가. 투자유치제도

외국인투자법

ㅇ 미국에는 투자규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개별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법 및 주 정부 관할 관청이 법률에 의해 운용하는 규칙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 미국은 외국인 직접 투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고, 단독 투자나 합작투자 모두 가능하며, 투자 형태에도 제한이 없다.
- 외국인이 기존 기업을 인수할 경우 미 상무성에 통보해야 하며 상장기업을 인수할 경우 증권거래 위원회에서 관여하게 된다.
- 대미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안전보장 관련 규제로 1988년 종합무역법 5201조(Exon-Florio Amendment)에 의거해 행해지고 있다.

ㅇ 이 외에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출입, 정부조달 등이 제한되는데 근거법으로는 1985년 수출관리 수정법(102조), 1986년 국방취득개선법(101조), 1987년 국가비수정법(98조) 등이 있으며, 대통령에게는 '국가 안전 보장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금지하는 권한이 부여돼 있다(Exxon Florio 조항).

-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장관이 의장이며, 여러 정부 부처들로 구성된 부처 간 조직인 외국인 투자위원회(CFIUS, Committee on Foreign Investment in the US)는 외국 기업에 의한 미국 기업의 매수, 합병, 인수를 검토(자발적인 신고 여하에 상관없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이는 2007년 개정된 외국인 투자 및 국가안보법(FINSA, Foreign Investment and Natiotional Security Act)에 의거한다.

1) 외국인 투자유치

ㅇ 미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은 연방정부보다 주 정부 차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미국의 각 주 정부는 해당 주의 경제개발, 고용 창출 등을 위해 토지 무상 제공, 각종 세액공제 또는 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투자지원 제도 내용은 주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SelectUSA 또는 주 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다.
- 해당 사이트에는 미국의 투자환경, 투자 데이터 등은 물론 미국의 주요 산업에 대한 정보, 그리고 미국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용까지 모두 등록돼 있어 미국의 대외 투자유치 포털사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
- 참고사이트 및 전화번호 : www.selectusa.gov, (미국) 1-202-482-6800

2) 외국인의 미국 내 부동산 투자법

ㅇ 미국에 소재한 부동산에 외국인들의 투자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2015년 12월 외국인 부동산 소유와 관련된 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가 통과돼 1980년 제정된 FIRPTA(Foreign Investment in Real Property Tax Act)로 외국인에게 부과했던 조세를 면제해 외국 투자가들과 자본(특히 외국 Pension Fund)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

- 참고 사이트 : 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irpta-withholding

3) 투자촉진 프로그램 정보

ㅇ 미국 주(州), 카운티 정부 및 공기업의 한국 소재 오피스(총18개소)가 결성한 협회(ASOK: Association of American State Offices in Korea)를 통해서 미국 지역별 투자 관련 정보를 구할 수 있다.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릉로 7, Invest Korea Plaza 404호

- 전화 : 02-3497-1651
- 이메일 : asok@asok.or.kr
- 웹사이트 : www.asok.or.kr

투자인센티브

가.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1) 인센티브 담당 부서

Select USA

미 상무부(Dept. of Commerce)산하의 무역기구(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소속 Select USA는 연방정부 차원의 외국인 투자진흥기관이다.

- 전화: (미국) 1-202-482-6800
- 홈페이지: http://www.selectusa.gov
- 이메일: (대표) info@selectusa.gov (한국 담당자) Keida Ackerman, Keida.Ackerman@trade.gov

2) 인센티브 종류

조세감면

- Tax Credits and Deductions
  -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미국 내에서 사업하는 크고 작은 해외 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credits-deductions-for-individuals

- Tax Information for Businesses
  - 미국 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기업을 위한 조세 정보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

- Business Use of Car
  - 개인 차량을 비즈니스 용도로만 사용할 경우 차량 운영 비용을 연방 개인소득세에서 공제 가능하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taxtopics/tc510

- Credit for Employe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Taxes Paid on Certain Employee Tips (Food and Beverage Industry)
  - 식품 및 음료 산업의 고용주일 경우 종업원이 팁으로 얻는 소득에 대해 고용주가 지불한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세금을 크레딧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credit-for-portion-of-employer-social-security-paid-with-respect-to-employee-cash-tips-irc-45-b-credit

- Disabled Access Credit
  - 휠체어 진입로, 장애인 또는 노인의 이동에 어려움을 주는 건축물을 제거하는 등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세금 크레딧이나 세액 공제 혜택 제공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tax-benefits-for-businesses-who-have-employees-with-disabilities

ㅇ Work Opportunity Tax Credit

- 고용주로서 특정 그룹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의 임금의 25~50%를 세금 공제로 청구할 수 있다. 적격 대상 집단은 지속적으로 고용에 중대한 장벽에 직면해 있는 특정 재향 군인, 특정 전과자, 푸드스템프(SNA)) 수혜자 및 기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지정된 지역 사회 주민 등을 포함한다.

현금지원

ㅇ Department of Education Funding Opportunities

- 미국 교육부에서 프로그램과 경연대회를 통해 지원금 제공하고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2.ed.gov/fund/grant/find/edlite-forecast.html

ㅇ National Energy Technology Laboratory (NETL) Unsolicited Funding Proposals

- 미국 에너지부는 장기, 고위험, 고수익 기술에 중점을 둔 에너지와 에너지 관련 연구 제안서를 검토하고 지원금 제공
- 상세 내용 링크: http://www.netl.doe.gov/business/unsolicited-proposals

ㅇ Advanced Technology Vehicle Manufacturing Loan Program

- ATV(Advanced Technology Vehicles Manufacturing) 론은 미국의 고급 기술 차량(ATV) 및 관련 구성 요소의 개발을 지원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energy.gov/lpo/services/atvm-loan-program

ㅇ Clean Energy Loan Guarantee Program

- 혁신적인 청정에너지 기술의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 고급 화석 에너지, 원자력 에너지, 재생 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을 포함한 광범위한 에너지 기술 관련 프로젝트에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energy.gov/lpo/title-xvii

ㅇ Grants.gov

- 정부기관, 교육기관, 비영리기관, 중소기업 등이 연방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보조금을 수여받을 수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grants.gov/

ㅇ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SBIR)

- 연방 정부의 필요에 부합하는 혁신적 기술 연구를 진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ir.gov/

중소기업 지원

ㅇ Regional Innovation Clusters Initiative

- 미국 중소기업청(SBA)은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연결, 교육, 상담, 멘토링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소기업, 대학 및 연구소, 지역 경제 조직, 투자자 간 지역 네트워크를 육성한다. 또한, 첨단 제조업을 위한 R&D의 상업화, 수출, 국내외 마케팅, 공급망 강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a.gov/content/innovative-economy-clusters

ㅇ HUBZone Certification

- 낙후도시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연방 조달 계약에서 독점계약을 하거나 입찰에서 유리한 조건에 놓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a.gov/contracting/government-contracting-programs/hubzone-program

ㅇ 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Program (STTR)

- 연방정부의 R&D 분야에서 자금지원 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과 비영리 연구 기관의 합작 투자기회 제공 및 공공/민간 부문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 상세 내용 링크: https://www.sbir.gov/about/about-sttr#sttr-program/

더 많은 연방정부 지원 인센티브 정보는 Select USA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ㅇ Select USA 홈페이지: https://www.selectusa.gov/federal_incentives

나. 주별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및 담당 기관

1) 뉴욕주

인센티브 담당 부서

ㅇ 뉴욕주 정부 산하 경제개발을 담당하는 부서인 Empire State Development(ESD)에서 투자진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데 뉴욕주 ESD는 뉴욕 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 기업의 뉴욕으로의 투자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뉴욕(Global New York)'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 전화: 1-212-308-2300
- 이메일: globalny@esd.ny.gov
- 웹사이트: https://esd.ny.gov/global-ny-domestic-investment

인센티브 종류

가) 세제혜택 및 비용 지원

ㅇ Excelsior Job Program
-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자본 투자 보장을 위해 최대 10년간 아래 네 가지 종류의 세금 공제 혜택 제공한다.
- Excelsior Jobs Tax Credit: 신규 일자리 당 급여의 6.85%
- Excelsior Investment Tax Credit: 적격 투자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Excelsior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뉴욕주 내에서 이루어진 연구 지출액의 최대 6%까지 연방 R&D 크레딧의 50%를 공제
- Excelsior Real Property Tax Credit: 낙후 지역에 입주하고 높은 수준의 고용과 투자를 창출하는 산업에 해당되는 기업에게 세금 공제 혜택 제공

ㅇ START-UP NY
- 뉴욕주 대학에 입주한 신규 및 확장기업에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대학과의 제휴를 통해 주요 산업 분야의 첨단 연구시설, 연구자원,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해당 분야: 소매/도매 비즈니스, 식당, 법률/회계, 병원/치과, 부동산업/브로커, 호텔, 소매금융, 유틸리티/에너지 생산, 금융 서비스, 비즈니스 서비스 등

ㅇ Employee Training Incentive Program
- 기존 또는 신규 고용 직원에 대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세액을 공제한다.
- 3자 인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비용에 대해 직원 1명당 1만 달러까지 50%의 세액 공제 제공한다.
- 인턴십 프로그램으로 인턴에게 지불한 비용의 30%를 1인당 3천 달러까지 공제한다.

ㅇ New Markets Tax Credit Program
- 뉴욕주 저소득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6년 5,500만 달러의 예산이 마련되었

으며 2017년과 2018년에 거쳐 배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 최소 50%의 비용이 비도시 지역의 카운티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장비, 재고 등 기타 성장을 위한 자본 확대를 필요로 하는 기업, 비영리 시설 또는 부동산 프로젝트가 지원 대상이다.

ㅇ New York Empowerment Zone Program
- 기업의 창업, 확장, 고용을 장려하는 투자 펀드와 세금 공제 혜택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으로 고용 크레딧,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면제, 장비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 확대 등을 포함 한더,
- 뉴욕 사우스브롱스 지역, 어퍼 맨해튼 지역에 위치하거나 신규 창업 또는 확대한 기업은 연방, 주 정부, 뉴욕시 정부의 다양한 비용 지원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까지 2억8천만 달러의 비용 지원이 허가된다.

ㅇ 이외의 뉴욕 주 정부의 투자진출 세제혜택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sd.ny.gov/doing-business-ny/tax-based-incentives

나) 운영지원

ㅇ Business Mentor NY
- 금융 관리, 소매, 커뮤니케이션, IT, 인사관리, 홍보, 영업, 마케팅 등 다양한 산업의 네트워크의 멘토로 구성되어 있다.
- 비즈니스 관련 질문과 어려움에 대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전문가 네트워크를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ㅇ Entrepreneurial Assistance Program
- 뉴욕주 전역에 위치함 Entrepreneurial Assistance Program(EAP) 센터를 통해 기본적 비즈니스 관리기술, 비즈니스 개념 정립, 초기 단계의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자금 마련을 필요로 하는 신규 기업가를 지원한다.
- 지원 내용은 사업 타당성 검토, 사업 개념 및 사업 계획 재정비, 관리규칙 수립, 제품 개발 및 마케팅, 수출, 자금 마련 및 대출 등 비즈니스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항이다.

ㅇ New York State Surety Bond Assistance Program
- 여성 혹은 소수계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 신용지원, 트레이닝,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에 할당된 예산은 1,000만 달러이다.

ㅇ Procurement Assistance Program
- 뉴욕주의 소규모 기업이 주 정부기관과의 계약 기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원을 찾도록 가이드한다.
- 연방 정부, 주 정부, 지방정부 조달 관련 워크숍 제공한다.
- 기업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기관을 찾도록 돕고 입찰자 목록 등재 방법을 안내한다.

ㅇ 이외의 뉴욕 주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운영지원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sd.ny.gov/doing-business-ny/operational-support

다) 성장 및 혁신 지원

ㅇ Economic Development Fund Program
- 일자리 창출과 비즈니스 활동 증대를 통해 뉴욕주의 경제를 증진시키는 프로젝트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 EDF 프로그램은 건설, 시설 확장 및 복구, 기계 및 장비 구매, 유동자산, 직원 교육 등을 지원하고 지원된 자금은 부동산 구매, 철거, 건설 및 수리, 건설 관련 기획 및 설계, 트레이닝 등을 위해 사용 가능하다.

ㅇ Linked Deposit Program
- 뉴욕주의 기업이 경쟁력 강화, 시장 확대, 신상품개발, 신기술채택, 장비 현대화, 시설 확대 등을 위해 저금리에 비용을 대출받도록 지

원한다.
- 500명 이하의 제조기업, 100명 이하의 서비스 기업에게 이자율 2% 포인트 삭감한다.
- 500명 이하의 농업, 100명 이하의 기술혁신업체, 소수민족 및 여성 오너기업 등에 이자율 3% 포인트 삭감한다.

ㅇ Metropolitan Economic Revitalization Fund Program
- 뉴욕 포트 오소로티 지역, 나소, 웨스트체스터, 라클랜드 카운티 일부의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상당수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정부에 대출을 제공한다.
- 토지, 빌딩의 개선/건설/레노베이션, 기계와 장비 구매에 5백만 달러 또는 총 프로젝트 비용의 10%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한 대출을 지원한다.
- 이자율은 시장 상황과 신청자의 채무상환능력을 고려해 결정한다.

ㅇ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
-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적용을 위해 산학 협동을 장려하기 위해 뉴욕주는 15개의 Center for Advanced Technology를 운영 중이다.
- CAT는 기술기반의 응용 연구, 경제 개발, 국내외 협력 연구와 혁신, 연방정부, 협회, 기업, 벤처캐피탈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ㅇ 이외의 뉴욕 주 투자진출 기업에 대한 성장 및 혁신 지원은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s://esd.ny.gov/doing-business-ny/growth-support

2) 뉴저지주

인센티브 담당 부서

뉴저지주의 경제개발을 위한 독립 기관인 New Jersey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EDA)에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및 인센티브를 주선해 주고 있다.

ㅇ 연락처
- 전화: 1-866-534-7789
- E-mail: BusinessActionCenter@sos.state.nj.us
- 홈페이지: www.njeda.com

인센티브 종류

가) 중소기업 지원 정책

ㅇ Premier Lender Program
- 저금리 대출, 대출·신용한도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고정자산 또는 자본투자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고정자산 구입에 대한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 한도 200만 달러, 대출보증(loan guarantee) 한도는 150만 달러이다.
- 운영자본을 위한 대출참가 한도 75만 달러, 대출보증 한도는 150만 달러이다.
- 75만 달러까지 신용한도 보증한다.
- 자격조건은 지원금액에서 6만5000달러당 1개의 신규 일자리를 2년 내 창출해야 한다.

ㅇ Small Business Fund
- 고정 이자율로 직접대출, 대출참가, 대출보증을 짧은 승인 기간을 거쳐 제공함으로써 재정을 지원한다.
- 고정자산 또는 운영자본 마련을 위해 신용점수 680점 이상의 소기업과 또는 비영리단체에 50만 달러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 최소 1년 이상 운영돼 온 소기업, 3년 이상 운영돼 온 비영리 단체가 지원 대상이다.

ㅇ Garden State Growth Zone - Business Lease Incentive

- 뉴저지주 특정 지역에서 500~5,000스퀘어 피트 규모의 1층 사무실, 산업용도, 소매 공간을 최소 5년간 임대하는 기업 또는 비영리 단체에 일 년 치 임대료의 15%를 2년간 상환하는 제도이다.
- 해당 지역: Atlantic City, Camden, Passaic, Paterson, Trenton

ㅇ Garden State Growth Zone - Business Improvement Incentive

- 뉴저지주 특정 지역에서 최소 5,000달러의 비용으로 1층 상업 공간의 리모델링을 계획하는 경우 총 프로젝트 비용의 50%, 최대 2만 달러까지 보조금을 제공한다.
- 해당 지역: Atlantic City, Camden, Passaic, Paterson, Trenton

ㅇ Small Business Services

- 자격 조건 미달로 일반 대출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한다.
- 소액대출기관(Microlender)와 커뮤니티개발금융기관(CDFI)를 통해 500달러에서 500만 달러까지 대출 가능하다.

나) 대기업 지원 정책

ㅇ Grow NJ Assistance Program

- 글로벌 시장에서 뉴저지주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강력한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 프로그램
- 뉴저지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일자리 하나당 500~5,000달러의 세금공제 혜택과 250~3,000달러의 보너스 크레딧 제공
- 자격 조건은 프로젝트가 뉴저지주의 지정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아래와 같은 최소고용 및 최소자본투자기준을 충족해야 함.

ㅇ Economic Redevelopment and Growth(ERG) Program

- 거주용 건물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전체 가구의 10%를 중간 소득 가구에 제공할 경우 10% 보너스 제공한다.
- 상업용 건물 프로젝트: 전체 프로젝트 비용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프로젝트 타입에 따라 추가 지원금(Grant) 제공 가능하다.

ㅇ Bond Financing

- 제조업체와 비영리기관 면세 본드 구입을 위한 금융 지원 제도이다.
- 영리 업체에 50만~100만 달러의 면세본드를 부동산에 20년까지, 장비 구입에 10년까지 지원한다.
- 지원된 자금은 자본 개선 및 확장, 토지 및 건물 매입, 신규 건설, 리모델링, 장비구매 등에 사용 가능하다.

ㅇ Real Estate Impact Fund

- 전략적인 지역 재개발을 지원 및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요 지역에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신규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다.
- 지정된 지역에서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업에 최대 300만 달러를 지원한다.
- 지방정부, 지역 재개발 에이전시, 국가 개발부처 소유의 지정된 지역에서 진행되는 개발 프로젝트에 최대 75만 달러를 지원한다.

다) 제조업 지원 정책

ㅇ Salem County Energy Sales Tax Exemption

- 뉴저지주 살렘(Salem) 카운티 내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전기 및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세를 면제한다.
- 살렘 카운티에서 운영되는 제조업체여야 하고 최소 50명의 고용 직원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중 50%의 인원이 제조 공정과 직접적인 관련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ㅇ Urban Enterprise Zones(UEZ) Manufacturers Energy Sales Tax Exemption

- 최소 250명을 고용하고 50%의 인원이 제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Urban Enterprise Zones 기업은 전기 및 천연가스에 대한 판매세와 사용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 Urban Enterprise Zones이 되기 위한 자격 조건은 아래와 같다.
① 뉴저지 주 정부 법인 등록
② 27개 지정된 지역 중 한 개 지역에 위치 할 것
③ 뉴저지주 세제 준수
④ UEZ Business Certification System(http://www.nj.gov/dca/affiliates/uez/)을 활용해 인증 신청

라)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 관련 분야 지원

ㅇ Angel Investor Tax Credit Program
- 뉴저지 첨단 기술 관련 비즈니스에 투자할 경우 투자액의 10%, 최대 50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를 제공한다.
- 기업이 뉴저지주에 자본 및 자산을 보유하거나 사무실을 운영해야 하고, 225명 이하의 직원을 고용해야 하며, 최소 75%의 인원이 뉴저지에서 근무해야 한다.
- 해당 분야는 첨단 컴퓨팅, 첨단 소재, 바이오기술, 전기기기, 정보기술, 생명과학, 의료기기, 이동통신,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이다.

ㅇ Technology Business Tax Certificate Transfer(NOL) Program
- 이익을 내지 못하는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 기업이 순영업손실과 R&D 세액 공제액을 팔아 자본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을 신청 또는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지속적인 순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뉴저지주 법인 등록 후 3년 이하인 기업은 최소 1명, 3~5년인 기업은 최소 5명, 5년 이상인 기업은 최소 10명의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

ㅇ Edison Innovation Fund
- 뉴저지주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첨단기술 및 생명과학 기업의 개발, 유지, 성장을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 Edison Innovation Angel Growth Fund: 12개월간 상업 수익이 25만 달러 이상인 첨단 기술기업은 최대 25만 달러까지 후순위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Edison Innovation VC Growth Fund: 12개월간 상업 수익이 5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최대 100만 달러까지 후순위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Edison Innovation Growth Stars Fund: 12개월간 상업 수익이 2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은 50만 달러까지 후순위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 대출된 자금은 기업의 고용, 제품출시, 제품개선, 마케팅·세일즈를 위해 활용 가능하다.

ㅇ 뉴저지주는 더 많은 투자진출 인센티브와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아래 웹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njeda.com/financing_incentives

3) 일리노이주

인센티브 담당 부서

ㅇ Illinois Department of Commerce &Opportunity
- 전화: (미국) 1-312-814-7179
- 홈페이지: www.ildceo.net/dceo/
- 주소: 500 E. Monroe Street, Springfield, IL 62701 / 100W. Randolph Street, Suite 3-400, Chicago, IL 60601

인센티브 종류

가) 세제 혜택

세제 혜택 제공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고용 창출 및 유지에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에 제공된다. 이는 세계적 다국적 기업이 밀집한 미국의 특성상 외투 기업뿐이 아닌 미국 내 모든 기업에 제공되는 혜택으로 일리노이 주 내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Opportunity- DCEO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다. 주요 내용은 첫째, FDI를 통해 창출된 직업에 종사하는 인력에 한해 공제되는 소득세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급형태로 법인세에 적용시키는 혜택을 제공한다. 조세혜택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공제된 소득세가 당해 법인세보다 많은 경우, 잔액은 최대 5년까지 연장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인센티브 금액은 전체 투자액을 초과할 수 없다.

입주 조건은 특정 산업, 투자형태에 관계없이 500만 달러 이상 투자, 최소 25개 이상의 직업이 창출될 경우 인센티브 수여자격이 주어진다. 위 입주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Illinois Economic Development Board(IEDB)의 평가위원회에서 개별평가를 진행한다. 지정 절차는 첫째,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둘째, IEDB에서 평가해 마지막으로 최종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IEDB 평가기준은 첫째 투자프로젝트의 자금 안정성, 둘째 혜택에 따른 투자프로젝트 유치의 성사 여부, 셋째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된다.

나) Advantage Illinois 프로그램

미국 연방정부 기금으로 조성된 State Small Business Credit Initiative의 일환으로 일리노이주 Department of Commerce and Economic Development가 소규모 신규 비즈니스 진출 기업 대상으로 관리하는 대부 프로그램이다. Participation Loan Program(PAP)은 통상적인 대부 정책 적용이 어려운 기업의 일리노이주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 일리노이에 신규로 사업체를 진출한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업장은 글로벌 종업원 수 750명 이하의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시장 이자율 이하로 적용되며 5가지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사업 개선을 위한 기업을 지원한다.

다) 사업 자금 융자: Illinois Finance Authority(IFA)

사업자금융자 배경은 다음과 같다. 일리노이 주의 투자 인센티브 중 저금리 융자, 펀드제공 프로그램으로 일리노이 주 내 직업을 창출 또는 유지하는데 직접적 기여를 하는 기업 중 1차 금융권에서 정상적인 융자 또는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 또는 주 정부의 인센티브를 통한 조건이 금융권의 조건보다 더 유익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권에서 받은 융자 또는 펀드의 채무권을 주 정부가 구매·보증하는 형태로 기존 금융권과 주 정부 소유·보증의 Blended Financing이다. 해당 융자 또는 채권에 대해 주 세금 감면 적용되며 주 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저금리가 적용된다. 신규사업체 설립 또는 신규 이전하는 경우 해당되며 주 내 이전일 경우 Department of Commerce &Economics Opportunity- DCEO의 허가 하에 인센티브가 수여 가능하며, 기업의 외투기업 여부, 국적 등에 무관하게 모든 대상에 동등 적용된다. 자격 요건은 첫째 입주 대상 건물 또는 부지 구입, 둘째 신규 건축 또는 용도변경, 셋째 Capital Equipment 구매 또는 리스 등에 사용되는 자금 중 융자금에 한해 IFA가 최대 50%, 30만 달러 구매보증, 넷째 주 정부 보유·보증 금액에 한해 기존 금리보다 1.5% 낮은 금리를 적용 받는 이에 한해서다. 지정절차는 먼저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IFA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EDB에서 평가한 후 최종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IEDB 평가기준은 첫째 기업의 자금 안정성, 둘째 고용창출 규모 추이, 셋째 고도기술 수반 여부, 넷째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 가능 여부이다.

라) 소기업 사업 개발 대출 프로그램

주요 프로그램으로 Participation Loan Program, Enterprise Zone Financing Program, Capital Access Program이 있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비즈니스 프로젝트(프로젝트 사유, 규모 무관)
- 일리노이 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에 한함
- 융자금의 최대 25%/75만 달러까지 주정부가 구매·보증 제공
- Participation Loan Program 의 경우 주정부 기준 중소기업 대상
- Enterprise Zone Financing 의 경우 특정 지역에 소재한 기업에 한함

지정절차는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DCEO 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EDB 에서 평가한 후 최종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IEDB 평가 기준은 기업의 자금 안정성, 고용창출 규모 추이, 고도기술 수반 여부 융자를 통한 기업의 경쟁성 확보 가능 여부 등이다.

마) Infrastructure Support

Infrastructure Support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Illinois Business Development Public Infrastructure Program(도로, 수도, 전기, 등)
-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Economic Development Interchange and Access Road Program(고속도로)
- Illinoi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Rail Freight Program(화물열차 선로 개설)

일리노이 주 내 비교적 낮은 부지가격과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지역 중 투자하는 기업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인프라가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여건에 미달할 경우 주 정부의 자금을 이용, 수도, 전기, 도로 등의 인프라를 구축 제공하는 형태의 인센티브이다.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일리노이 주 내 신규투자 또는 일리노이 주재 기업 추가 투자
- 모든 인프라 구축은 기존 국가소유의 부지에만 가능하며 개인소유 부지는 활용할 수 없음.
- 투자프로젝트의 확정에 한해 제공되며 추후 투자 결정 번복 불가

지정절차는 우선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IDOT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IDOT 에서 평가, 최종 인센티브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IDOT 평가기준으로는 IEDB 평가결과, 기업의 투자프로젝트 확정 여부 및 프로젝트 유치를 통해 타주에 비해 일리노이 주가 얻을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들 수 있다.

4) 캘리포니아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 Governor’s Office of Business and Economic Development(Go-Biz)
  - 전화: (미국) 1-916-322-0694, 1-877-345-4633
  - 주소: 1325 J. St., Suite 1800, Sacramento, CA 95814
  - E-mail: gobiz.intltrade@gov.ca.gov
  - 홈페이지: www.business.ca.gov

인센티브 종류

가) 세액공제(Targeted Tax Credits)

- 개발지역 지정 세액공제(Economic Development Areas)
  - 기존 Enterprise Zone, Local Agency Military Base Recovery Area, Manufacturing Enhancement Area, Targeted Tax Area 4곳으로 지정된 개발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에게 고용, 시설구매 등 투자 규모에 따라 판매세 또는 소비세를 공제한다.
  - https://www.ftb.ca.gov/businesses/credits/eda/eda.shtml

- 연구개발 세액공제(Research &Development Tax Credit)
  - 캘리포니아 내에서 연구 개발을 실시하는 경우 조건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비용에서 주 정부 계산법에 의한 베이스 액수를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15%를 공제한다.
  - https://www.ftb.ca.gov/businesses/credits/rd/

-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공제(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 타주 또는 해외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전 또는 진출하는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 제도이다.
  - 캘리포니아 전체에 적용돼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다.

- 세액공제에 관한 계약은 Go-Biz 사무실과 협의해야 하며 캘리포니아 경쟁 세액공제 위원회(California Competes Tax Credit Committee)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캘리포니아 Go-Biz는 2018~2019년 회계연도 기간의 세액공제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확한 기간은 Go-Biz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 http://www.business.ca.gov/Programs/CaliforniaCompetesTaxCredit.aspx

ㅇ 제조업 판매세 및 사용세 부분 면제(Partial Sales and Use Tax Exemption for Manufacturing)
- 연구개발장비 구입과 생명공학, 특정분야 제조업에 대한 판매세와 이용세 일부를 면제하는 프로그램이다.
- 주정부 판매세와 이용세에만 해당되며 기타 특정 지역, 도시, 카운티의 세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 판매세와 이용세의 일부인 4.1875%를 감면해주는 혜택으로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 시작하여 2030년까지 혜택을 제공한다.
- 북미 산업코드인 NAICS코드 3111~3399에 해당되는 모든 제조업체, 생명공학에 대한 연구개발 비용, NAICS코드 541711~541712에 해당하는 기업들의 물리학, 공학, 생활과학 분야의 연구개발 비용이 이에 해당한다.
- https://www.cdtfa.ca.gov/industry/manufacturing-exemptions.htm

ㅇ 판매세 사용세 전액 면제 - 최첨단 제조업 및 운송업, 대체에너지 분야(Advanced Transporatation and Manufacturing Sales and Use Tax Exemption)
- 주정부 California Alternative Energy and Advanced Transportation Financing Authority(CAEATFA)에서 제공하고 있는 세금 감면 혜택 프로그램이다.
-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최첨단 제조업, 대체 에너지, 또는 최첨단 운송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업체들에게 주정부와 지방 정부 양쪽 모두의 판매세와 이용세를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 http://www.treasurer.ca.gov/caeatfa/ste/index.asp

ㅇ 신규 고용 세액공제(New Employment Hiring Tax Credit, NEC)
- 신규 고용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액공제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행정구역 혹은 경제개발지구에서 정규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한 기업이 신청 가능한 프로그램. 2014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1일까지 제공될 예정이다.
- https://www.ftb.ca.gov/online/New_Employment_Credit_Reservation/index.shtml

ㅇ 캘리포니아 영화, 텔레비전 세액공제 제도(California Film &Television Tax Credit Program 2.0)
-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California Film Commission)에서 영화제작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세금 공제 혜택이다.
- 15.5억 달러 규모의 기금이 2020년 6월 30일까지 할당되어 있다.
- 납세자가 영화 및 TV 프로그램 제작 관련 사용한 비용의 최대 25%까지를 납세자가 내야하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 세금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 http://film.ca.gov/tax-credit/

나) 금융 지원(Financial Assistance)

캘리포니아주로 이전 또는 새로이 투자해 기업체를 설립하는 경우,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 대출 보증(SBA Loan Guarantee)은 미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담보가 부족하거나 보증인이 없어서 대출이 힘든 기업들에게 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출기관을 소개한다. 미국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진출해 미국 내 지사를 둔 기업도 미국 지사가 현지 법인으로 설립됐다면 적용될 수 있다. SBA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대출보증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7(A) 대출 프로그램(General Small Business Loans: 7(a)), 소규모 기업들에게 단기간 제공되는 Microloan Program, 부동산 및 장비 구입 지원 프로그램(Real Estate &Equipment Loans: CDC/504), 자연재해 또는 유사시 지원되는 저금리 Disaster Loans 프로그램과 일반적인 기업설립, 확장 등에 지원받을 수 있는 Loan Program 등이 있다.
- 링크: https://www.sba.gov/loans-grants/see-what-sba-offers/sba-loan-programs

ㅇ 산업개발채권(Industrial Development Bonds)
- 제조용 시설이나 설비를 인수하려는 제조기업에게 제공되는 세금면제 채권으로 1,000만 달러까지 발행 가능하다.
- http://www.ibank.ca.gov/industrial-development-bond-financing/

ㅇ 캘리포니아 자금 접근 프로그램 및 담보지원(CalCAP Collateral Support Program)

- The California Capital Access Program(CalCAP)은 참여 은행과 금융사들의 일반적 대출 기준 충족이 어려운 영세업체들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 담보지원 프로그램은 5만 달러 이상의 대출에 대한 담보부족분을 지원하겠다고 보증해 주는 제도이다.
- 담보 가치의 최대 40%까지 지원하며 실업률이 110% 이상인 Severly Affected Community에 위치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10% 추가 지원 제공한다.
- https://www.treasurer.ca.gov/cpcfa/calcap/collateral/

ㅇ 오염 조절 세금 면제 채권 프로그램(California Pollution Control Financing)

- 오염 조절, 하수 처리, 쓰레기 재활용 시설의 인수, 건설, 설치, 새로운 설비의 인수와 설치를 하는 캘리포니아 사업체에 금융을 제공하는 사적 분야의 세금 면제 채권 프로그램이다.
- https://www.treasurer.ca.gov/cpcfa/tax_exempt.asp

다) 인력고용 및 훈련지원

ㅇ 직원 교육 비용 지원 프로그램(Employment Training Panel)

-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는 중소기업들의 인력 확보를 위해 Employment Training Panel(ETP)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들의 직원들이 업무 트레이닝을 받거나 기술력 향상을 위한 교육 비용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신청 기업은 직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파악해 관련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신청 가능하다.
- http://www.etp.ca.gov/

5) 텍사스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Office of the Governor (Rick Perry), Economic Development and Tourism

- 전화: (미국)1-512-936-0100, 0101 이메일: locatetx@gov.texas.gov
- 홈페이지: www.texaswideopenforbusiness.com, www.governor.state.tx.us/divisions/ecodev

인센티브 종류

ㅇ 텍사스 산업지역 프로그램: 텍사스 산업지역으로 지정된 부지에 투자를 할 경우 주 정부에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건축비, 기계 및 장비 구입비, 전기 및 가스비 지출 시 납부한 소비세 및 이용세를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투자 금액과 고용 인원수에 따라 결정한다. 환급액은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일자리 수와 비례하며 직원 한 명당 최소 2,500달러에서 최대 7,500달러 한도에서 책정한다.

ㅇ 텍사스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예: 텍사스 산업지역 이외 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상하수도와 도로를 포함한 공공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금을 제공하며 이는 총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ㅇ 텍사스 부동산 개발 프로그램: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지역(예: 텍사스 산업지역 이외 일반지역)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75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한해 투자사에게 최소 5만 달러에서 최대 75만 달러까지 지원한다. 지원액은 총 투자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투자사의 부동산 융자 상환액에 따라 20년간 분할지급한다.

ㅇ Tax Incentives: 제조 기계 및 장비 분야 에서는 임대 혹은 구매한 기계, 장비, 교체부품 등 사용수명이 6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생산 공정 필수품에 한해 텍사스 주 정부와 시 정부로부터 소비세와 이용세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가스 및 전기 분야에서는 제품 생산 및 처리

공정에 사용되는 가스 및 전기에 대해 주정부에서 소비세와 이용세를 공제해주는 혜택을 부여한다. 단, 법인은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전기와 가스량의 최소 50%가 제품 생산 공정에 사용된다는 것을 '주요 사용처 연구'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 재산세 공제 및 환급에서 텍사스 환경관리국으로부터 환경오염 관리 시설로 허가를 받은 경우 재산세를 공제 혹은 환급 받을 수 있다. 신생 및 확장투자의 경우 반드시 1994년 이후 시공, 설비 혹은 재건축된 시설이어야 하며 연방, 주, 지역정부의 환경규제 및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자유무역항인 경우 종가세를 면제한다. 조립, 보관, 제조, 생산에 사용될 목적인 제품이 자유무역항에 단기간(최대 175일) 머물 경우 종가세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ㅇ Financing &Grants: 농촌 지방 자치구 융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 및 카운티 주정부, 경제 개발 기업, 의료단지, 철도단지, 농업단지, 개인 상하수도 기업, 공익사업 지구로 융자 수혜 가능 분야를 제한한다. 둘째, 인구 2만 명 미만의 도시 외곽 농촌 지역 투자를 기본으로 하며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에 한해서만 동 융자 프로그램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100만 달러 미만 투자에 대해 최소 5만 달러 규모의 융자를 제공하며 융자금은 부동산 구입, 건물 건축, 부지 개발, 기기 구입, 상하수도 시스템 구축 등 지방 자치구의 경제 개발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사용이 가능하다. 텍사스 경제 개발 은행에서 경제 개발세를 부과하는 지역에 투자 시 동 지원금 혜택을 제공한다. 텍사스 500여 개의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지역의 산업개발팀이 주정부 지원금을 받아 지원한다. 소비세 채권은 경제 개발 소비세를 부과하는 지역에 투자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유료 의료시설, 다가족 프로젝트, 공공 서비스 관련 산업에 한해 적용된다. 세금공제 시설용 채권은 공항, 부두, 고속철도, 유해 폐기물 처리(직원훈련 및 보관시설 포함)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 냉난방 시설, 전기 및 가스 시설 관련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채권을 의미한다. 세금공제 산업용 채권은 승인된 산업 및 제조 프로젝트의 부지 및 사용가능 기간이 유한한 감가자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채권으로 최고 2,000만 달러(수수료 포함)까지 받을 수 있다.

ㅇ Workforce Development: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젝트 계획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동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지역의 기술 전문학교 등 교육기관과 연계해 직업훈련을 운영해야 한다. 단일 사업체에 최대 50만 달러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ㅇ 텍사스 엔터프라이즈 기금(Texas Enterprise Fund): 텍사스에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주 정부에서 텍사스에 프로젝트를 실현코자 하는 기업들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또 세금혜택을 줌으로써 기업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제개발을 유도하는 것이다. 2004년 이후 2018년 상반기까지 총 153개 프로젝트를 지원했으며 총 제공금액은 6억 1,798만 달러이다. 이를 통해 94,000여 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했다.

ㅇ 텍사스 신흥기술 기금(Texas Emerging Technology Fun): TETF는 신흥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상업화에 대해 최고의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조성됐으며, 텍사스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며 협력적이고 중요한 전문지식과 재정적 리소스를 활용하는 신흥 기술 프로젝트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6) 조지아 주

인센티브 담당부서

ㅇ 조지아 주 정부 경제개발부 Georgia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 전화: (미국) 404-962-4000
- 홈페이지: http://www.georgia.org/

인센티브 종류

가) 세금 공제

ㅇ 고용 감세 Job Tax Credit
- 조지아주 전략산업(제조, 통신, 방송, 물류, 연구개발, 관광, 가공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체들에 대해 신규 창출 일자리 당 연간 $4,000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다.
- 신규 일자리(풀타임)를 창출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 일자리당 연간 1,250~4,000달러이다.
-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금액은 일자리 창출 수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郡)의 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 환불 및 양도할 수 없으며 5년 이상 청구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공제 Quality Jobs Tax Credit

- 지난 12개월 간 최소 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당 일자리들에 카운티 평균 임금보다 10% 이상 높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체들에 대해 일자리당 2,500~5,000달러까지의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카운티 평균 임금의 110% 혹은 그 이상의 임금으로 최소 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회사가 대상이다.
- 일자리당 연간 2,500~5,000달러를 지원한다.
-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금액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郡)의 개발 단계에 따라 상이하다.
- 법인소득세 10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항구 사용 사업체에 대한 공제 Port Tax Credit Bonus

- 조지아 항구를 통해 수입과 수출을 진행하는 조지아 사업체들 중 전년도보다 최소 10% 이상의 거래량 증가가 있을 때 세금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년도의 항구 거래량이 최소 75톤 이상이거나 컨테이너 5대 이상, 혹은 10톤 이상이어야 한다.

ㅇ 취업 기회에 대한 공제 Work Opportunity Tax Credit Program (WOTC)

- 사회적 고용 약자를 고용하는 회사에 대해 연방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조지아 노동부는 고용주의 연방 소득세 부담을 줄임으로써 사회적 고용 약자를 채용할 때 고용주에게 재정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세액공제는 일자리당 1,200~9,000달러이다.

ㅇ 메가 프로젝트 공제 Mega Project Tax Credit

- 최소 1,800명의 신입사원을 채용하고, 연간 최소 임금으로 1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거나, 혹은 조지아에 4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
- 최소 18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조지아에 위치한 사업 시설에 최소 4억 5,000만 달러를 투자하거나, 연간 1억5,000만 달러의 인건비를 지출하는 회사가 대상이다.
- 일자리당 연간 5,250달러를 공제한다.
- 5년 동안 청구 가능하다.
- 법인소득세 10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투자 공제 Investment Tax Credit

- 3년 이상 조지아 주에서 사업을 운영해 온 제조업과 통신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세금혜택
- 최소 5만 달러를 공장 또는 설비 업그레이드에 투자해야 하며, 투자액의 8%까지 공제의 가능 대상이다.
- 세액 공제의 실질적인 금액은 사업체가 위치한 카운티(郡)의 개발단계 및 자본 지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 법인소득세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연구 및 개발 비용에 대한 공제 Research and Development Tax Credit

- 적합한 연구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기업은 지출 증가분의 일부와 동일한 세금 공제 혜택
- 기준시와 비교해 연구 개발 지출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 다른 공제가 적용된 이후 법인세 납부액의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 초과 공제는 원천징수에 대해 적용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Child Care Tax Credits

- 적격 보육 시설을 구매 또는 건설하는 고용주 또는 보육 시설을 제공 또는 후원하는 고용주가 대상이다.
- 적격 시설을 구매 또는 건설하는 경우: 건설 비용의 100% 공제(10년간 매년 10% 공제), 3년간 이월 가능하다.
- 적격 시설을 제공 또는 후원하는 경우: 직접 비용의 75% 공제, 5년간 이월 가능하다.
- 법인소득세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ㅇ Parolee Tax Credit
- 2017년 1월 1일부로 고용날짜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가석방 허가를 받은 개인을 채용한 회사가 대상이다.
- 1인당 공제액은 2,500달러이며, 1인에 대해 1회 사용 가능하다
- 과세연도당 고용주의 공제 한도는 5만 달러이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3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 법인소득세 100%까지 상쇄 가능하다.

ㅇ 재교육에 대한 공제 Retraining Tax Credit
- 새로운 장비를 사용하는 기술 또는 새로운 기술을 위해 직원을 교육하는 경우 이러한 지출에 대해 세금 공제 혜택이다.
- 고용된 직원에게 새 장비 사용법 및 신기술을 훈련시키는 기업이 대상이다.
- 직원당 교육비의 50%에 해당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최대 5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음).
- 법인세 납부액의 50%까지 상쇄 가능하다.
- 미사용 공제액은 최대 10년 동안 이월 가능하다.

ㅇ Quick Start Employee Training
- 적격 회사에 대해 신입 기술직을 위한 교육 자료, 강사 및 교육 공간을 무료로 제공한다.

ㅇ 영화, TV 및 디지털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공제 Film, TV and Digital Entertainment Tax Credit
- 조지아주에서 생산 혹은 후반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의 최대 30%을 공제받을 수 있다.
- 최소 지출액은 $500,000이다.
  * 세부사항은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georgia.org/competitive-advantages/tax-credits/

나) 세금 면제

ㅇ 세액 및 사용세 Sales Tax and Use Tax Exemption
- 많은 종류의 기계류 및 장비는 주 및 지방 판매세를 면제해준다.
- 최대 5~8%를 절약할 수 있다.

ㅇ 재고세 면제
- 공장 및 창고에 보관된 재고에 대해 재산세 감면해준다.
- 조지아주 내의 다수의 카운티에서도 재고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

* 세부사항은 http://www.georgia.org/competitive-advantages/tax-exemptions/ 에서 참고할 수 있다.
* 그 외에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재정지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제한 및 금지(업종)

ㅇ 주요 외국인 투자규제 사업분야는 통신, 에너지, 운송, 국가안전보장 등이 있다.
- (통신) 무선통신사업(TV, 라디오 운영사업 등)
  * 연방통신워원(FCC)는 통신서비스 외자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해당국과의 호혜주의를 적용하고 있어 장벽이 존재한다)
- (에너지) 원자력, 수력, 지력발전사업

* 라이선스 등록은 미국인 또는 미국 회사로 제한된다.
- (운송) 국내항공운송업, 수상/해상 연안운송업
* 미국에서 건조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선박을 소유하고 기업에 대한 의결권의 75% 이상을 미국 시민이 소유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 (국가안전보장) 각종 국방 관련 사업

나. 투자입지여건

특별경제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대외자유무역지대(Foreign Trade Zone)

미 세관 구역 인근에 지정된 구역으로 이곳을 통해 반입되는 해외 또는 국내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이 허용된다. 반입된 물품은 정식 통관이 되지 않은 상태로 수입 관세 및 제반 비용(Merchandise Processing Fee 및 관세 등)이 FTZ에서 반출되는 시점까지 연장되고 해외로 다시 수출되는 경우 면제된다. FTZ는 San Francisco, Fresno, San Pedro, Palm Springs, Sacramento, Santa Maria, Palmdale, Hueneme, Merced, Madera, Oakland, Long Beach, Victorville, Moreno Valley, Eureka, Oroville에 위치해 있으며 지정된 FTZ 지역 외에도 기존 사용하고 있는 창고 또는 공장 등을 용도(보관 또는 생산)에 따라 관할기관(FTZ Board)을 통해 FTZ로 지정받을 수 있다.
- 지역별 FTZ 위치: https://enforcement.trade.gov/ftzpage/letters/ftzlist-map.html

1) 얼라이언스텍사스(AllianceTexas) 자유무역지구

얼라이언스텍사스 자유무역지구는 텍사스 주 달라스 북서쪽으로 40분 거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약 2만 6,000에이커 부지에 400여 기업들이 입주하고 있다. 얼라이언스텍사스 자유무역지대는 약 430억 달러의 경제효과와 약 5만 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얼라이언스텍사스 자유무역지구는 편리하고 신속한 물류 시스템 및 통관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대형 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 미국의 Class 1철도인 Union Pacific과 BNSF를 통해 컨테이너 화물 보관, 물류창고로 운송, 화물 훼손 보험 클레임 등 복합 물류 터미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산업용 얼라이언스 공항, DFW 국제공항과 2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의 대형 물류기업인 FedEX, UPS, Ryder, Excel 등의 운송서비스 및 물류창고로의 접근이 용이하다. 약 400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이 중 63개사는 포춘 500대 기업이다.

- 홈페이지: www.alliancetexas.com
- 주소: 9800 Hillwood Parkway, #300, Fort Worth, TX 76177
- TEL: (1 817) 224-6000, FAX: (1 817) 224-6060

ㅇ 주요 혜택: 최대 175일까지 물품보관세(Inventory Tax)가 면제된다. 도난 사고 발생 시 연방 범죄로 다루기 때문에 보안 강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ㅇ 연방인센티브: 연방인센티브는 관세 면제, 관세 및 연방 물품세 납부 지연, 유리한 조건의 관세율 선택으로 구성된다.
① 관세 면제
- 재수출을 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② 관세 및 연방 물품세 납부 지연
③ 유리한 조건의 관세율 선택 가능
- 자유무역지구 생산 완제품이 외국산 재료보다 낮은 관세율일 경우, 자유무역지구를 나갈 때 낮은 관세율인 완제품의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사전 승인 요구)

2) 버지니아 주, 서포크(Suffolk) 자유무역지대

버지니아 주 최초의 자유무역지대로 버지니안 항만 당국(Virginia Port Authority)이 관리하고 있다. 관할지로는 버지니아 주의

Gloucester, Isle of Wight, James City, Mathews, Northampton, Southampton, Sussex, Surry, and York counties, Chesapeake, Franklin, Hampton, Newport News, Norfolk, Poquoson, Portsmouth, Suffolk, Virginia Beach, Williamsburg가 해당되며 North Carolina주의 Camden, Chowan, Currituck, Elizabeth City, Gates, Hertford, Pasquotank, Perquimans 도 포함된다. 버지니아 주에서 가장 개발된 자유무역지대로 FTZ #20으로 구분된다.

- 홈페이지: https://www.vedp.org/incentive/foreign-trade-zones-ftzs
- 담당자: Laura Smith 757-683-2135

ㅇ 주요 혜택

재수출 시 수입관세 감면, 미국 내 소비를 위해 운반되기 전까지 수입 관세 유보, 수입된 불량품에 관세 감면, 영구 물품 보관 가능, FTZ 내 생산시 부품 혹은 완성품 중 유리한 관세로 지불 가능

3) 미시건주 보더 카운티 인센티브

미시건 내 소재한 카운티(County) 중 캐나다 또는 미국 내 타주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14개의 카운티(Counties)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세금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음.

- 홈페이지: https://www.michiganbusiness.org/
- TEL: 1-517-373-9808

* 14개의 카운티는 다음과 같음 : Berrien, Branch, Cass, Chippewa, Dickinson, Gogebic, Hillsdale, Iron, Lenawee, Menominee, Monroe, St. Clair, St. Joseph and Wayne.

ㅇ 주요 혜택: 자격요건을 채운 사업체에게 최장 12년간 다음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Business Personal Property Tax 100% 감면 (PA-328)
- 물류, 유통업의 경우 세금 최대 50% 감면 (PA-198)

산업단지

ㅇ Cedar Crossing Industrial Park

규모	6070ha
위치	Baytown, TX 77523
임차료	$6~25/sf/연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281-383-2205 - 이메일: jklein@tgsgroup.com - 홈페이지: www.tgscedarport.com

ㅇ AllianceTexas

규모	3885ha
위치	13600 Heritage Pkwy. #200, Fort Worth, TX 76177
임차료	$4~25/sf/연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817-224-6000 - 이메일: info@alliancetexas.com - 홈페이지: www.alliancetexas.com

ㅇ MidAmerica Industrial Park

규모	3650ha
위치	4075 Sanders Mitchell St, Pryor, OK 74361
임차료	3~23달러/sq.ft./연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918- 825-3500 - 이메일: info@maip.com - 홈페이지: www.maip.com

ㅇ Americas Central Port

규모	180000m2
위치	1635 West First Street Granite City, IL 62040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618-877-8444 - 이메일: contact@americascentralport.com - 홈페이지: www.americascentralport.com

ㅇ Illinois International Port District

규모	58000m2
위치	3600 E 95th St, Chicago, IL 60617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773-646-4400 - 이메일: iipd@iipd.com - 홈페이지: www.iipd.com

ㅇ EDC, Inc. The Economic Development Council for the Peoria Area

규모	180000m2
위치	401 NE Jefferson Avenue, Peoria IL 61603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309-495-5910 - 이메일: shanley@greaterpeoriaedc.org - 홈페이지: www.greaterpeoriaedc.org

○ Watson Industrial Center

규모	62ha
위치	1050 East 223rd Street, Carson, CA 90745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310-952-6400 - 홈페이지: www.watsonlandcompany.com

○ Santa Clarita Valley Development Project

규모	278ha
위치	8561 Enterprise, Chino, CA 91708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661-288-4413 - 이메일: jimbrown@scvedc.org - 홈페이지: www.scvedc.org

○ Tahoe-Reno Industrial Center

규모	6070ha
위치	515 Double Eagle Ct, Reno, NV 89521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775-343-1135 - 이메일: lance@lancegilman.com - 홈페이지: www.tahoereno.com

○ Alma Industrial Park

규모	67 Acre
위치	Michigan Ave., Jerome Rd., Williams St.(Gratiot County, MI)
임차료	$6,000/Acr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989-875-2083 - 이메일: info@gratiot.org - 홈페이지: www.gratiot.org

○ Albion Industrial Park

규모	119 Acre
위치	Austin Ave. (Calhoun County, MI)
임차료	$6,000 / Acr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517-629-3926 - 이메일: 3929adeprez@albionedc.org - 홈페이지: www.albionedc.org

○ City of Evart Air Industrial Park

규모	47 Acre
위치	South Industrial Park Dr. (Osceola County, MI)
임차료	$1/Acre (자격요건 충족 필)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231-734-6119 - 이메일 : melora.theunick@evart.org - 홈페이지: www.evart.org

○ Chatham-Siler City Advanced Manufacturing Site

규모	1818 Acre
위치	Siler City, North Carolina, 27344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919-542-8274 - 이메일: AByrd@chathamedc.org - 홈페이지: chathamadvancedmanufacturing.com

○ Greensboro-Randolph Megasite

규모	1900 Acre
위치	342 N Elm St, Greensboro, NC 27401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336-626-2233 - 이메일: info@greensboro-randolphmegasite.com - 홈페이지: greensboro-randolphmegasite.com/

○ Northern Virginia Industrial Park

규모	18.69 Acre
위치	7347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임차료	위치별 상이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888-782-6110 - 이메일: contact@psbusinessparks.com - 홈페이지: greensboro-randolphmegasite.com

ㅇ East New York Industrial Business Zone

규모	100 Acre
위치	뉴욕주 뉴욕시 East Brooklyn
임차료	$12~25/sf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212-619-5000 - 이메일: newbusiness@edc.nyc - 홈페이지: www.nycedc.com/project/east-new-york-industrial-business-zone

ㅇ Lake Ontario Industrial Park

규모	57Acre
위치	뉴욕주 Oswego시 북동 지역 (Mitchell Street at intersection with County Route 1)
임차료	$15,000~25,000/Acre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315-343-1545 - 이메일: ooc@oswegocounty.org - 홈페이지: www.oswegocounty.org

ㅇ Lockport Industrial Park

규모	201 Acre
위치	NYS Routes 31, 93, 270 (뉴욕주 나이아가라 카운티)
임차료	$25,000/Acre (협상가능)
관할기관 및 연락처	- 전화: 1-716-278-8760 - 이메일: info@niagaracountybusiness.com - 홈페이지: www.niagaracountybusiness.com/lockport.asp

<자료원 : 각 산업 단지 홈페이지>

주요 지역별 여건

ㅇ 뉴욕주

- 면적: 5만 4,555sq. mi.(미국에서 27번째로 면적이 넓은 주)
- 인구: 1,986만 2,512명(2018년 추정치)
- 주도: 알바니(Albany)
- 주요 기관: 뉴욕주 주정부 청사, 유엔본부, 뉴욕증권거래소
- 주요 산업: 금융, 패션, 첨단기술, 엔터테인먼트, 물류 산업의 중심지

ㅇ 뉴저지주

- 면적: 8,722.58 sq. mi.(미국에서 47번째로 면적이 넓은 주)
- 인구: 903만 2,972명(2018년 추정치)
- 주도: 트렌턴(Trenton)
- 주요 기관: 뉴저지주 주정부 청사
- 주요 산업: 제약, 생명공학, 금융, 물류, 정유공업, 의류 제조 등

ㅇ 버지니아주
- 면적: 110,785.67 ㎢
- 인구: 847만 명
- 주도: 리치몬드(Richmond)
- 주요 기관: 버지니아 주정부 청사, 주 법원, 미 국방성
- 주요 산업: 수상 교통(해운), 섬유 산업, 탄광업, 담배 제조, 어업 및 어업 관련 제품, 식품 가공 및 항공우주산업

ㅇ 매릴랜드주
- 면적: 32,133㎢
- 인구: 605 만 명
- 주도: 아나폴리스(Annapolis)
- 주요 기관: 메릴랜드 주정부 청사, 주 법원, 발티모어 항구(Port of Baltimore)
- 주요 산업: 교육 산업, 항공우주 및 국방 산업, IT 및 사이버보안 산업, 바이오 및 의료 기술 산업

ㅇ 노스캐롤라이나주
- 면적: 139,390㎢
- 인구: 1,027 만 명
- 주도: 롤리 (Raleigh)
- 주요 기관: 노스 캐롤라이나 정부 청사, 주 법원
- 주요 산업: 담배 산업, 섬유 및 의류 제조 산업, 가구, 목재, 임업, 제지 산업, 자동차 및 중장비 제조산업

ㅇ 캘리포니아주
- 면적: 163,696 m2
- 인구: 3,978만 명
- 주도: 새크라멘토(Sacramento)
- 주요 기관: 캘리포니아주 주정부 청사
- 주요 산업: 식품 가공, 바이오텍, 기계, 패션, 플라스틱, 인쇄, 컴퓨터 및 전자, 철강, 화학, 우주, 건축자재, 가구 등

ㅇ 일리노이주
- 면적: 57,915m2
- 인구: 1,276만 명
- 주도: 스프링필드(Springfiled)
- 주요 기관: 일리노이주 주정부 청사
- 주요 산업: 기계류, 화학, 운송 장비, 컴퓨터 및 전자, 농업 및 식품, 가공 금속, 전자장비, 기구 및 부품, 플라스틱 및 고무

ㅇ 텍사스주
- 면적: 695,662㎢
- 인구: 2,830만 명
- 주도: 오스틴(Austin, www.austintexas.gov)
- 주요 기관: 주정부, 텍사스 상/하원, 법원
- 주요 산업: 에너지, 석유화학, 통신/IT, 항공
- 비고: 주정부의 풍부한 재정을 바탕으로 6대 산업인 통신/IT, 우주/항공, 의료/바이오, 에너지, 석유화학, 첨단 기술을 집중 육성 중. 텍사스의 휴스턴은 세계 에너지 수도로 불리며,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운집하여 있고, 달라스와 오스틴을 중심으로 첨단사업이 발달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투자-투자환경)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직접투자

가. 대내 외국인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201,393	201,734	465,765	457,126	275,381

<자료원 : UNCTAD Stat>

나. 대외 직접투자 현황

(금액 : 백만$)

2013	2014	2015	2016	2017
303,432	294,754	262,569	280,682	342,269

<자료원 : UNCTAD Stat>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투자-외국인직접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기업 투자

가. 한국기업 투자 통계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2014	1,554	525	9,461,772	2,249	5,953,728
2015	1,635	549	10,776,483	2,276	7,042,480
2016	1,774	522	18,053,611	2,479	13,554,295
2017	1,823	533	13,746,756	2,466	15,286,608
2018	896	291	5,677,532	1,168	4,616,596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나. 업종별 투자 동향

- 2014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3	0	715	3	628
광업	20	3	735,546	61	545,461
제조업	525	156	817,307	719	718,88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4	3	98,746	29	95,348
건설업	14	2	132,739	15	132,835
도매 및 소매업	302	117	503,139	439	497,890
운수 및 창고업	29	11	432,990	35	425,943
숙박 및 음식점업	98	46	172,308	162	175,287
정보통신업	204	57	393,210	228	338,340
금융 및 보험업	62	19	2,678,680	119	1,097,986
부동산업	74	42	3,334,075	134	1,785,812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4	30	109,642	134	87,4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47	17	30,254	62	28,124
교육 서비스업	9	6	1,686	32	1,72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2	1	14,270	30	14,97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7	0	1,586	23	1,43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0	15	4,879	24	5,64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5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6	2	1,995	4	845
광업	6	0	96,737	24	54,085
제조업	419	106	952,962	626	838,29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3	3	283,204	25	242,64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0	1,150	4	1,150
건설업	19	6	66,914	15	64,923
도매 및 소매업	336	147	901,048	489	869,798
운수 및 창고업	33	12	78,644	53	43,836
숙박 및 음식점업	101	63	709,946	144	606,363
정보통신업	244	71	288,203	298	283,534
금융 및 보험업	101	24	4,277,800	160	2,082,140
부동산업	103	41	2,975,390	149	1,822,74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8	29	74,420	105	74,429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68	20	15,644	80	13,488
교육 서비스업	14	9	2,349	19	2,21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3	2	40,500	36	34,827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8	4	4,515	26	2,52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9	4,612	18	4,186
국제 및 외국기관	1	1	450	1	45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6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8	0	3,770	8	970
광업	26	5	177,511	36	116,804
제조업	496	109	1,252,164	702	847,07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22	4	74,474	25	51,35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	1	2,050	3	2,050
건설업	21	8	47,263	24	46,616
도매 및 소매업	372	107	7,136,816	519	3,984,738
운수 및 창고업	33	7	41,966	37	19,300
숙박 및 음식점업	116	47	459,010	159	484,197
정보통신업	211	62	346,088	263	322,834
금융 및 보험업	113	43	4,308,376	212	3,467,150
부동산업	98	47	3,558,132	169	3,869,60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0	36	378,712	172	275,903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8	14	225,658	47	23,810
교육 서비스업	14	7	2,755	21	2,7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4	3	15,390	15	18,5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5	4	10,033	36	9,35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4	18	13,320	31	11,219
N/A	10	0	123	0	0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7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8	1	14,931	12	14,593
광업	13	2	116,135	25	62,565
제조업	449	111	821,825	632	741,85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34	5	138,134	35	84,327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1	1	17,100	2	17,100
건설업	22	7	118,432	30	120,410
도매 및 소매업	424	119	3,785,732	561	6,730,692
운수 및 창고업	29	11	72,420	32	42,595
숙박 및 음식점업	100	36	38,640	144	32,516
정보통신업	201	64	1,888,082	230	1,785,556
금융 및 보험업	139	35	3,787,421	213	3,471,012
부동산업	140	56	2,237,698	246	1,561,64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43	46	188,498	158	159,22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30	11	42,526	25	40,504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	1	300,750	1	257,967
교육 서비스업	18	7	110,015	23	109,46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	1	35,305	12	23,40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7	4	22,502	33	20,75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8	10	9,124	28	9,094
N/A	19	5	1,486	24	1,324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 2018년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건, 개 천 달러)

업종대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9	1	370	14	552
광업	4	0	391,510	9	367,131
제조업	210	54	453,322	292	375,900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11	2	55,502	11	93,068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2	2	1,980	2	1,980
건설업	7	2	35,000	8	33,700
도매 및 소매업	178	63	185,589	224	138,890
운수 및 창고업	19	3	16,282	19	11,729
숙박 및 음식점업	47	21	36,733	64	30,658
정보통신업	104	34	175,668	113	136,403
금융 및 보험업	87	27	2,842,624	121	2,270,227
부동산업	104	41	1,218,001	144	906,02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8	29	219,947	80	185,8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6	5	13,232	19	13,523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0	0	0	1	12,229
교육 서비스업	4	4	1,020	6	1,0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2	0	18,500	7	31,30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14	2	11,212	16	5,437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	1	880	6	876
N/A	7	0	160	12	111

<자료원 :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기업 진출현황

ㅇ Kwang Jin America Inc.

진출년도	199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자동차 도어 모듈, 힌지
모기업명	광진상공

ㅇ ANKOR Energy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광업 및 자원개발
취급분야	오일가스
모기업명	한국석유공사

ㅇ 티맥스소프트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소프트웨어
모기업명	티맥스소프트㈜

ㅇ 포스코대우

진출년도	197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광업 자원개발
취급분야	투자 자문, 대정부 승인, 법인 설립 등 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ㅇ 화천기계

진출년도	199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선반, 밀링, 연삭기, CNC 선반, 공작기계
모기업명	화천

ㅇ 현대상선

진출년도	1984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콘테이너, 버크 화물해상운송
모기업명	현대상선

ㅇ 아이이엔한창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변압기
모기업명	한창트랜스

ㅇ 한국타이어

진출년도	198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한국타이어

ㅇ 피스코리아

진출년도	198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Nails, Staples, Pins, Brads, Tebo Decker/Fastner
모기업명	피스코리아

ㅇ 넥센타이어미국기술연구소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업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타이어
모기업명	넥센타이어㈜

ㅇ 코메론USA

진출년도	1997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각종줄자, Wheels and Markers, Private Label System
모기업명	코메론

ㅇ 삼양사

진출년도	200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의약품연구개발
모기업명	삼양사/Akina, Inc.

ㅇ 유니버셜베어링

진출년도	199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Needle Roller(Transmission Part)
모기업명	한화

ㅇ 대한통운

진출년도	200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항공 및 해상화물 운송
모기업명	CJ대한통운

ㅇ 고려도장기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파우더 코팅머신, 자동화 설비 시스템
모기업명	고려도장기산업

ㅇ 에이스안테나

진출년도	1993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Repeater, Antenna, Connector, Cable
모기업명	에이스테크놀로지

ㅇ 에드윈유에스에이㈜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스킨케어 화장품, 헬스케어
모기업명	에드윈코리아

ㅇ 에이씨아이

진출년도	201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물류업
취급분야	전자상거래와 특송물품의 항공배달
모기업명	에이씨아이 월드아이드㈜

ㅇ CJ 제일제당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식품류
모기업명	CJ제일제당

ㅇ AJ렌터카

진출년도	2016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렌터카
모기업명	AJ렌터카

ㅇ 안다미로

진출년도	2000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Wholesale Electronics Games
모기업명	안다미로㈜

ㅇ 아쿠아즈 USA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낚시용 웨이더 자켓 신발 등
모기업명	아쿠아스포츠

ㅇ 코일마스터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Power Inductor, Transformer
모기업명	Coilmaster

ㅇ 아시아나해운

진출년도	1989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수출화물 운송
모기업명	조선해운㈜

ㅇ 바이오프로테크USA

진출년도	200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Medical Supplies, 의료용 치료 전극, 의료용 센서
모기업명	바이오프로테크

ㅇ 인바디 미국법인

진출년도	2000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의료기기 체성분 분석기
모기업명	인바디㈜

ㅇ CJ CGV 아메리카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영화 등 콘텐츠
모기업명	CJ제일제당

ㅇ CJ E&M 아메리카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엔터테인먼트
모기업명	CJ E&M

ㅇ 진광산업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Acryl계 접착제 판매
모기업명	진광산업㈜

ㅇ 대교아메리카

진출년도	1990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학습지 기반 프랜차이즈
모기업명	대교

ㅇ 포스쿠대우

진출년도	197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Textile, Stell-Ferrous Metal, Aerospace, Electronics
모기업명	포스코대우㈜

ㅇ 다산기공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총기부품 제조 및 수출
모기업명	다산기공

ㅇ 모락스

진출년도	200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Shipping, Forwarding, NVOCC
모기업명	모락스

ㅇ 덴타존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의료기기
모기업명	디엑스엠

ㅇ 이마트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생산,판매법인
업종	기타
취급분야	소비재 전반
모기업명	이마트㈜

ㅇ 디카팩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디지털카메라 방수팩, 캠코더, 무전기, 아이패드
모기업명	디카팩

ㅇ 이생아메리카

진출년도	198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Package, Film, Sheet, Printing, Plastic Container
모기업명	SR테크노팩

ㅇ 동진아메리카

진출년도	2003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플라스틱 식품용기
모기업명	동진기업

ㅇ 현대글로비스아메리카

진출년도	200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물류
모기업명	현대글로비스㈜

ㅇ 동아아메리카

진출년도	199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양강장제, 숙취해소음료 등
모기업명	동아쏘시오홀딩스

ㅇ GS글로벌

진출년도	197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Steel, Valve, Oil Products, Consumer Goods
모기업명	GS글로벌

ㅇ 동부USA

진출년도	199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열연 강판, 냉연 강판, 파이프 등 철강 완제품
모기업명	동부제철

ㅇ 동국인터내셔널

진출년도	1993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후판, 형강, 가전
모기업명	동국제강

ㅇ 도스코아메리카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Steel Tubing Distributor
모기업명	동아스틸주식회사

ㅇ 제노레이아메리카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의료용 디지털엑스레이 판매 및 서비스
모기업명	제노레이㈜

ㅇ 하코

진출년도	198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기내식
모기업명	한진중공업㈜

ㅇ 해태

진출년도	198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한국 식품 및 간식류
모기업명	해태제과㈜

ㅇ 한일디벨로프먼트

진출년도	199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스포츠 시설 및 스파 / 부동산 임대
모기업명	한일건설

ㅇ 한솔아메리카

진출년도	1991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제지
모기업명	한솔제지㈜

ㅇ 한솔골드포인트 / 로지스틱스

진출년도	1991
진출형태	지점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국제해상운송
모기업명	한솔로지스틱스㈜

ㅇ 하이브시스템

진출년도	201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영상장비
모기업명	하이브시스템㈜

ㅇ 하이코어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지점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Gear system, controller, addon, application
모기업명	하이코어㈜

ㅇ LA할리우드장로병원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의료사업 진행 및 의료서비스 제공
모기업명	차병원

ㅇ 홍진HJS

진출년도	199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Helmets(Motorcyclem Snowmobilet)
모기업명	홍진HJC

ㅇ 휴롬아메리카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녹즙기, 슬로우 주스기
모기업명	휴롬㈜

ㅇ 휴스틸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강관 판매
모기업명	휴스틸㈜

ㅇ 현대USA

진출년도	197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철강, 화학 상품 및 기계 도구 등
모기업명	현대종합상사㈜

ㅇ 현대해운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운수업
취급분야	수출입 상업화물 및 해외 이주화물, 국제택배

모기업명	현대해운㈜

ㅇ 일진전기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변압기 XPLE Cable
모기업명	일진전기㈜

ㅇ 재능교육

진출년도	199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교육 프랜차이즈
모기업명	재능교육㈜

ㅇ 농심아메리카

진출년도	199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라면, 스낵 등 생산판매
모기업명	농심

ㅇ 오뚜기아메리카

진출년도	200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식품류
모기업명	오뚜기㈜

ㅇ 깨끗한나라

진출년도	1988

진출형태	지점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Pulp, Waste Paper, Machinery
모기업명	깨끗한나라

ㅇ 신한다이아몬드공업미국법인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Diamond Saw Blade(Machine Tool)
모기업명	신한다이아몬드공업㈜

ㅇ GC글로벌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화장품 수출판매업
모기업명	지씨로지스틱스

ㅇ KB손해보험미국법인

진출년도	1987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업
취급분야	손해보험 업무 관리 대행
모기업명	KB손해보험㈜

ㅇ KDB대우증권아메리카

진출년도	1992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미래에셋대우㈜
취급분야	Brokerage

모기업명	미래에셋대우㈜

ㅇ 구주글로벌뉴욕

진출년도	200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구주글로벌㈜
취급분야	도매 및 소매업
모기업명	섬유 제조, 섬유 봉제

ㅇ 네이처리퍼블릭 USA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네이처리퍼블릭

ㅇ 대륙제관북미법인

진출년도	198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제관 기계, 제관 부품
모기업명	대륙제관㈜

ㅇ 동국제강뉴욕사무소

진출년도	198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동국제강㈜
취급분야	제조업
모기업명	철강 제품 수입

ㅇ 두산 E&S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발전소 Engineering Services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ㅇ 두산갤러리뉴욕

진출년도	2009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아트갤러리
모기업명	두산갤러리

ㅇ 레이아메리카

진출년도	201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덴탈 및 메디칼 엑스레이 진단 영상
모기업명	레이

ㅇ 루트로닉미국법인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레이저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모기업명	루트로닉

ㅇ 마이다스아이티미국법인

진출년도	2002
진출형태	지점
업종	CAE Software 판매, 서비스
취급분야	도매 및 소매업

모기업명	마이다스아이티

ㅇ 메타바이오메드미국법인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의료기기 제조판매
모기업명	메타바이오메드㈜

ㅇ 미래에셋자산운용미국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업
취급분야	자산운용
모기업명	미래에셋자산운용㈜

ㅇ 바텍미국법인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치과용 엑스레이 시스템 개발 및 제조
모기업명	바텍㈜

ㅇ 삼성C&T아메리카

진출년도	199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의류 수입/판매, 엔터테이닝
모기업명	삼성물산㈜

ㅇ 삼성SDS미주법인

진출년도	199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의류 수입/판매, 엔터테이닝
모기업명	삼성SDS㈜

ㅇ 삼성증권뉴욕법인

진출년도	199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금융 보험업
취급분야	금융서비스
모기업명	삼성증권㈜

ㅇ 신성통상뉴욕지사

진출년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OEM/ODM 의류 제조 수출
모기업명	신성통상㈜

ㅇ 인프라닉스북미지사

진출년도	2012
진출형태	지점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및 제조
모기업명	인프라닉스㈜

ㅇ 엔씨엘이디

진출년도	2014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LED 응용제품 수출판매업

모기업명	엔씨엘이디㈜

ㅇ 해브앤비

진출년도	201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화장품(닥터자르트)
모기업명	해브앤비

ㅇ 삼성전자미국법인

진출년도	197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전자제품 판매
모기업명	삼성전자㈜

ㅇ 아모레퍼시픽뉴욕법인

진출년도	200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화장품
모기업명	아모레퍼시픽㈜

ㅇ 코오롱USA

진출년도	198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폴리에스터 필름
모기업명	코오롱인더스트리㈜

ㅇ 파리바게트미국법인

진출년도	2006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모기업명	파리크라상㈜

ㅇ 한샘미국법인

진출년도	1985
진출형태	생산법인
업종	제조업
취급분야	키친캐비넷 제조 및 공급
모기업명	한샘㈜

ㅇ 한화미주법인

진출년도	198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석유화학, 철강, 기계유
모기업명	한화케미칼㈜

ㅇ 효성중공업피츠버그

진출년도	2001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초고압 변압기, 차단기 등 판매
모기업명	효성㈜

ㅇ 새한USA

진출년도	200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미용실 용품 도소매

모기업명	새한화장품㈜

ㅇ 두산중공업미국법인

진출년도	2008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발전 설비 영업 및 구매
모기업명	두산중공업㈜

ㅇ 두산인프라코어아메리카

진출년도	1992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Machine Tools
모기업명	두산인프라코어㈜

ㅇ LG전자USA

진출년도	1995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가전제품 판매 및 서비스
모기업명	LG전자㈜

ㅇ LG생활건강뉴욕법인

진출년도	1998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화장품(후, 숨, 빌리프 등)
모기업명	LG생활건강㈜

ㅇ LGCNS미국법인

진출년도	2003

진출형태	서비스법인
업종	서비스업
취급분야	컨설팅, 시스템통합 등 IT 서비스
모기업명	LGCNS㈜

ㅇ 엠더블유티에스

진출년도	2017
진출형태	판매법인
업종	도매 및 소매업
취급분야	자동차 부품 및 각종 와이어
모기업명	태양쓰리시㈜

<자료원 : KOTRA 해외진출기업 디렉토리>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투자-한국기업 투자) 항목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투자진출방식

가. 투자진출 형태

법인

미국 각 주의 법에 의해 설립된 미국의 국내 회사(Domestic Company)로서 외국인이 투자한 회사이다. 미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하고자 하는 경우 무역장벽의 타개, 현지 국가의 생산요소 및 기술정보의 이용, 금융 또는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 자회사 형태의 사업이 적절하다. 먼저 미국에 현지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1명 이상의 설립자가 있어야 하며, 설립자는 외국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설립되는 당해 주의 상주자가 아니어도 무방하나 등록된 에이전트(Registered Agent)는 해당되는 설립 주 영토 내에 거주하는 상주자여야 한다.

초기 자본금으로는 금융업을 제외한 여타 산업에 속하는 법인에 대해 별도의 자본금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을 발행할 경우, 이사회 의장은 주주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회사설립 절차로는 회사명 사용 가능 여부 확인과 회사등록, 필요 시 각 지방정부의 규정에 따른 영업허가나 면허를 신청해야 하며, 주 정부 사업자 등록과 고용진흥국(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에 등록절차가 별도로 요구된다. KOTRA 뉴욕 무역관에서 한국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오랜 기간 상담해 보면 현지법인 즉, 미국법인(U.S. Entity)으로 설립할 경우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한국) 기업의 자회사이기에 외국회사(Foreign Entity)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외국 법인으로 설립할 경우 미국 내 영업활동과 특히 철수할 때 미국법인과 여러 가지로 상이한 사항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영업활동 계획과 전망 그리고 철수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가능한 한 많이 하고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한다. 외국 법인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하려면 영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주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한다.

미국법인의 경우는 한국 본사에서 송금하는 자금이 일반 비용으로 송금하기보다는 대출이나 투자개념으로 송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유는 미국법인이 본사의 하나의 부서가 아니라 독립된 법인이고 아울러 타국에 소재한 법인이기 때문이다. 대출의 경우는 본사에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고, 투자금일 경우는 이익 배분(Dividend)를 지급해야 한다. 미국법인이 현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도 한국의 본사가 원금 상환을 보증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미국계 은행들은 미국 내 법인과 한국 본사와의 관계 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지만, 미국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을 사용할 경우보다 한국에 소재한 본사와 미국법인 간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층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철수를 가정한 검토도 필요하다. 미국에서의 영업활동이 저조해 미국 내에서 많은 부채가 있을 경우 미국법인의 경우 법인을 청산하면 모든 부채가 탕감될 수 있지만, 외국 기업의 경우는 외국(한국)에 있는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에 한국 본사가 채무를 100% 변제해야 한다. 이런 경우는 단지 부채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사무실을 임대했을 경우에도 임대기간 중에 철수를 하려면 남은 임대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데, 미국법인인 경우 기업의 청산으로 임대료에 대한 전액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지만, 외국(한국) 기업일 경우는 한국에 소재한 본사가 모든 임대료를 지불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에 진출할 때는 진출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서 기업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항, 그리고 특히 철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회계사와 변호사와 상담해 이를 최대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할 것을 권한다.

- ㅇ 법인 설립 구비 서류
  - 주정부 법인 등록증(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미국 국세청 세금번호(EIN)
  - 정관(By-law)

모든 해외진출 시 법인과 사무소 설립 후, 주재 지역의 관할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지사

지사는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하는 업무장소로서 외국법에 의해 설립된 외국 회사다. 따라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지사는 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외국회사(Foreign Company)다. 지사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히 제정된 법규나 규칙은 거의 없고 설립에 따른 요구조건은 해당 지역의 조례에 따르기 위한 '사업허가신청(Filing of Authorization)'을 사업장이 있는 주 정부에 하는 것이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특정 기업의 지사는 단순히 모기업의 자회사로 간주되고 있으며 별다른 자본금 등이 필요 없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모기업이 지사의 모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 지사는 모든 법인에 해당되는 회계감사(Statutory Audit)가 이루어지지 않으나 지사 수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사의 경우 미국에서 세무신고, 회계감사, 회사법상 요구사항이 자회사에 비해 많지 않고 적자가 나더라도 본사에 자금을 송금할 수 있으며, 지점의 손실을 본사에 합산해 본사의 이익금과 상계해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진출 초기에는 지점 형태의 사업을 많이 영위한다.

- ㅇ 지사 설립 구비 서류
  - 주 정부 외국인 회사 등록증(Certificate of Authority)
  - 미국 국세청 세금번호(EIN)
  - 정관(By-law)

모든 해외진출 시 법인과 사무소 설립 후, 주재 지역의 관할 총영사관에 신고하고 재외국민등록을 해야 한다.

연락사무소

미국은 법적으로 연락사무소 방식의 투자 진출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내 연락사무소 기능의 오피스가 필요할 경우, 투자 진출 전 법률 및 회계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 적절한 투자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

나. 회사 유형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미국에서 규모를 불문하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사업조직 형태이다. 주식회사의 형성과 운영은 주 법령에 의해 정해진다. 주식회사의 존재는 정관의 등록으로 시작된다. 정권에는 회사의 명칭, 수권 자본의 상세 정보 및 기타 일정한 확인 정보 등이 기재된다. 주식회사의 사업과 업무는 이사회에 의해 조정되며 이사들은 주식회사의 주주들에 의해 선출된다. 이사회는 회사의 임원을 선출하며 이들은 매일 매일의 사업운영을 감독한다. 보통주는 주식회사에서 기본적인 주주권을 대표한다.

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기업등기부 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각 주의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이 관장하는 주식회사부서(Division of Corporation)에 등록해야 한다. 회사 명칭이 기존 회사와 같거나 혼동을 일으키면 안 된다. 회사 명칭에는 주식회사임을 표시하는 'Corporation(약칭 Corp.)', 'Incorporated(약칭 Inc.)' 또는 'Co. Ltd.(Company Limited)'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등기부 등본에는 회사 명칭, 회사설립 목적, 사무소의 주소, 존속기간, 발행할 주식 총수 및 주식의 종류, 등록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대리인이 있는 경우),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을 회사에 대한 소송서류 송달을 위한 대리인으로 지명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

회사 설립 때에는 등록 절차에 소요되는 수수료와 회사 설립에 따른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회사 사규를 제정해야 하고 회사 설립인의 설립총회 의사록 및 이사회의 의사록 등을 기록해야 한다. 비록 주식회사가 다른 형태의 기업보다는 정부 규제를 많이 받지만, 큰 규모의 기업은 물론 간단한 경영을 원하는 소기업의 조직 형태로도 주식회사가 가장 적합한 형태라 할 수 있다.

설립 등기 시에는 주주의 신원을 밝히거나 등록할 필요도 없다. 주주 한 사람이 주식 100%를 소유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회사의 모든 임원의 직책을 맡을 수도 있다. 설립 시 납입 자본금의 경우, 한국에서는 최소한 자본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발행주식 100주에 1주당 납입금 1달러면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런 자본금 납입에 대한 규정도 주 정부별로 상이하다. 참고로 뉴욕주의 경우는 주당 가격이 없는 'No Par Value'로도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 실제로 기업을 주 정부에 등록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지는

않다.

회사 운영의 책임자가 미국의 영주권자일 필요도 없으며 책임자는 미국 밖에서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다. 다만 미국 내에 등록된 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등록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데, 이 대리인은 사무소가 소재한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주식회사 설립 주의 법이 주식회사의 내부 사항을 규정하기 때문에 설립 주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내부 사항이란 주주와 임원, 주주와 이사, 주주와 회사의 채권자, 주주 상호 간의 관계 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주주의 투표권, 이익배당의 실현, 회사장부의 검사 등이 회사 설립지의 법에 의해 규제되는 사항이다. 뉴욕 주에서는 회사법(Business Corporation Law)이 이런 역할을 한다.

한편 일반주식회사인 C 주식회사(C Corporation)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이중 특히 이중과세(법인과 주주에게 이중으로 과세) 문제가 사업하는 이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면서 주식회사로서의 장점을 가질 수 있는 형태가 S 주식회사(S Corporation)다. S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회사 설립일 또는 회계 기간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약 75일 이내(설립 후 세 번째 달 15일까지)에 연방국세청 양식 2553(IRS Form 2553)을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Form 2553은 아래 링크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https://www.irs.gov/forms-pubs/form-2553-election-by-a-small-business-corporation

회사 설립지를 어느 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할 때 설립자는 그 주의 세금에 관한 법규뿐 아니라 공해 방지에 관한 법, 그 주에서 영업하는 회사에 부과되는 각종 환경 관련 규제 등도 고려해야 한다. 만일 뉴욕 주 이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회사가 뉴욕 주에서 영업활동을 하려면 신청서를 접수해 뉴욕 주에서 영업할 수 있는 해외기업(Foreign Corporation) 자격 사업허가증(Certificate of Authorization)을 얻어야 한다. 이 자격을 얻으면 뉴욕 주의 규제에 따라야 하며 뉴욕 주의 법원에서 소송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이하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는 회사화되지 않은 사업 조직 형태로서 본질적으로 주식회사(Corporation)와 파트너십(Partnership)의 성격이 혼재된 법인이다. 파트너십이 가지고 있는 연방 세법상의 유리한 지위와 주식회사의 주주에게 주어지는 유한책임의 유리한 지위를 결합한 기업 형태이다. LLC는 S 법인(S Corporation)과 C 법인(C Corporation)의 장점을 살린 특수 형태 법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C 법인은 주주와 법인에게 이중으로 과세되지만 S 법인은 파트너십과 같이 단일 조세가 적용되는 법인이다. 파트너십의 경우에는 회사 부채에 대해 무한의 개인 책임을 부담할 최소한 1인의 무한책임 사원이 있어야 하지만 LLC에는 모든 출자자들이 유한책임, 즉 출자범위 내에서의 책임만을 가진다. 또한,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와 달리, 연간 개최하는 이사회, 주주총회, 사규 등의 형식이 필요 없고, 구성원에게 많은 자율적 권한이 주어지는 장점이 있어 소규모 자본의 업체들이 선호하는 형태다.

유한책임회사의 명칭에는 Limited Liability Company 또는 LLC., L.L.C. 등의 약칭이 포함돼야 한다. 회사 정관에는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에서 요구하는 바와 비슷한 사항들, 즉 △회사 명칭 △뉴욕 주 정부사무국(Secretary of State)을 소송 서류를 접수할 목적상 대리인으로 지정할 것 등의 요구사항들이 들어가야 한다. 정관에는 LLC가 1인이 지배할지 또는 여러 명이 지배할지, 아니면 1인의 지배인 또는 여러 명의 지배인이 동시에 경영할지 여부를 명기해야 한다. 또 회사의 특정 채무에 대해 특정 사원이 책임지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관이 발효한 뒤 120일 이내에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주당 1회 광고를 해야 하며, 이 절차는 파트너십의 경우와 유사하다.

LLC 사원(Member)들은 서면으로 경영계약서를 채택해야 한다. 경영계약서는 영업 일반에 관한 사항들과 사원 및 지배인의 권리, 권한, 책임, 제한 등에 관해 규정한다. LLC는 사원 보유지분 2/3 이상의 서면 동의 또는 표결로서 해산할 수 있다. 또한, LLC는 경영계약서에 정한 특정 사원의 파산, 사망, 해산, 강제퇴출, 퇴출 및 무능력(한정치산, 금치산 선고)이 발생할 때 해산한다. 다만 해산사유 발생 후 180일 이내에 잔존 사원 지분의 과반수의 표결 또는 서면 동의를 받으면 LLC를 지속할 수 있다. 또 해산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경영계약서에 LLC를 지속할 권한이 있으면 이에 따라 지속할 수도 있다. LLC는 다른 LLC, 다른 주나 외국의 주식회사와 합병할 수 있다.

LLC는 많은 장점이 있으나, 다른 유형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기업체를 LLC로 전환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형태의 기업이 LLC의 자산을 양도할 때 따르는 납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법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아직은 LLC에 대한 판례가 많지 않아 주별로 LLC의 해체에 대한 법이 상이한 점을 사전에 고려해서 기업 관련 법을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사전에 상의가 꼭 필요하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LLC 해체를 마음대로 못하고 해체를 신청한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유

지해야 하는 등 주 정부별로 LLC에 대해서 상이한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1인이 LLC를 설립할 경우, 소유자와 기업이 분리되지 않는다. 즉, 기업의 유한책임이 적용되지(Disregarded Entity) 않고 소유자가 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즉, 1인 소유 LLC의 경우 LLC의 이익이 100% 1인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인 LLC의 경우는 유한책임이 아닌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조치는 LLC가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는 것과 유한책임이라는 장점이 있어 이를 악용하기 위해 LLC를 설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주 정부별로 다를 수 있지만, 뉴욕주의 경우 부부 2인이 설립할 경우에 2인으로 간주하지 않고 1인으로 간주해 세금은 각자가 보고를 하지만 동 LLC에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이들 부부가 모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

개인사업자

개인회사(또는 개인사업이라고도 칭함, Sole Proprietorship)는 가장 단순한 형태이고 가장 흔한 기업 경영방식이다.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하는 개인은 어떤 형식적 절차나 조직을 위한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개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다. 다만 개인 기업가가 개인의 명의가 아닌 가공의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영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국의 지방자치 행정단위인 카운티 정부의 서기(Clerk)에게 기업의 상호를 등록해야 한다. 상호 증명서(Business Certificate)에는 사업체의 상호, 주소, 개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입해야 한다.
*뉴욕 주의 경우에는 개인이 'and Company' 또는 '& Co.'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개인회사 소유자가 가공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고자 할 때에는 당국에 의해 공인된 상호증명서(Certified Copy of Business Certificate)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또 상호증명서는 영업장소에 눈에 띄도록 게시해야 한다. 기업주는 기업 이익의 전부를 향유하지만, 자신의 행위 및 그의 고용인이 고용의 범위 내에서 행한 모든 행위에 대해 무한책임(Unlimited Liability)을 진다. 기업주(Owner)의 사망 또는 은퇴 시에 개인회사는 존속이 중지된다. 개인회사의 수입은 개인 납세신고 'Schedule C'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때 사업 경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총 수입으로부터 공제한다. 손실은 그 개인의 여타 소득으로부터 상계하며 개인의 전체 납세 의무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개인회사는 설립 초기에는 설립이 용이하고 설립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개인이 무한책임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러한 기업 형태를 선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로부터 개인 업주의 다른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파트너십

파트너십 종류에는 (1) 회사의 채무(Liability)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는 General Partner로만 구성된 General Partnership, (2) 1인 이상의 General partner와 회사 채무에 대해 유한책임을 지는 Limited Partner로 구성된 Limited Partnership, (3) General Partnership을 바탕으로 하되 다른 파트너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유한책임으로 제한하는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등이 있다.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은 2인 또는 그 이상의 개인이나 법인(다른 파트너십, 주식회사, LLC 등 모두 가능)이 일반적인 사업체를 영위하고 공동으로 관리하며, 사업체의 이윤 및 손실을 공유하는 계약에 기초한 조합이다. 일부 파트너들은 상표권, 저작권, 기술, 서비스 또는 부동산 등을 투자하면서 참여할 수도 있다. 파트너십은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성립된다. 구두에 의한 파트너십 합의도 인정될 수도 있으나 법원에서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트너 간의 서면 계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각 파트너의 채무에 대한 책임 한계는 기업 형태에 따라 달라지고 아울러 경영에 있어서 상이한 발언권을 갖는다. General Partnership은 비슷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공동으로 파트너십을 운영한다. 또한 각 파트너는 자본이나 용역(Service)을 출자하거나 또는 자본과 용역을 함께 출자할 수도 있으며, 용역만 출자하는 것도 있다. 뉴욕 주의 경우 영업을 하는 카운티마다 증명서를 등록하도록 돼 있는데, 이 증명에는 일반 파트너십의 명칭, 주소, 각 파트너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만일 파트너십의 구성원에 변화가 있거나 파트너 또는 파트너십의 주소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된 증명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와 같은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범죄(misdemeanor)에 해당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각 파트너는 경영 및 기업 지배구조에 있어서 각자 정해진 범위의 발언권을 갖는다. 특히 중요한 사항의 결정, 예컨대 새로운 구성원을 영

입하거나 기존에 합의된 파트너십을 수정하려고 할 때에는 결정권을 보유한 구성원의 만장일치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통상적인 영업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서는 단순 과반수 표결로 의사결정을 한다. 물론 파트너십의 합의에 의해 이런 규칙은 개정할 수 있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의 채무에 대해 무한 또는 유한의 개인 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출자한 자본 외에 파트너가 가진 개인 자산까지도 채무 변제를 위한 자산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또한 각 파트너는 다른 파트너, 고용인, 혹은 파트너의 대리인이 파트너십 영업의 범위 내에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질 수도 있다. 연대책임이란 A, B, C 3인의 파트너가 있을 경우, 채권자는 A에게 채권액 전부를 청구할 수도 있고, A가 자산이 없으면 B나 C에게 청구할 수도 있으며, A, B, C 모두에게 1/3씩 청구할 수도 있는 책임을 뜻한다. 가장 구속력이 강한 채무가 바로 이 같은 연대채무라고 할 수 있다.

파트너십은 과세대상 실체(Taxable Entity)가 아니고 일종의 도관회사(Pass Through Entity)이기 때문에 파트너십의 소득은 파트너 개개인의 소득에 귀속된다. 따라서 기업 자체는 별개의 과세대상 사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연방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는다. 파트너십은 양식 1065(Form 1065: U.S. Return of Partnership Income), 즉 일종의 정보 보고서(Information Report)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파트너십이 시현한 수익금 액수를 보고하는 것이다.

각 파트너는 파트너십 수익 중 자신의 몫만큼 자신의 소득세를 보고할 때 계산하면 된다. 파트너십의 손실에 대해서는 자신의 다른 소득까지를 포함해 공제할 수 있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이 달리 정하는 바가 없으면 동등하게 이익을 분배하게 되며, 손실의 경우에도 이를 같은 방식으로 분배한다. 그러나 계약에 의해 이 같은 규정은 변경할 수 있다. 만일 파트너십 계약이 손익의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규정하지 않았다면 남보다 많은 자본과 용역을 출자했다 하더라도 손익은 동등하게 분배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파트너십 합의계약서에는 손익의 분배에 관해 명확한 규정을 정하게 된다.

파트너십의 존속 여부는 개인회사와 마찬가지로 영속성이 없다. 파트너십은 파트너 어느 한 사람의 사망, 파산 또는 탈퇴로써 법률적으로 해산되며 파트너십의 청산 및 종료의 절차가 뒤따른다. 1인 또는 여러 명의 파트너,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는 다양한 이유로(파트너가 무능력자 판결을 받거나 파트너십 합의에 따라 의무 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에 파트너십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

기업 운영을 규정하는 자세한 서면 합의 없이는 파트너십을 운영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의사, 간호사 들과 같이 전문가들이 파트너십 형태의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세무상의 고려(예를 들면 부동산의 공동소유)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일반 파트너십은 피하는 편이 좋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파트너십을 해야 한다면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를 택하는 것이 좋다.

합자회사

한국의 합자회사와 같은 성질을 지닌 회사조직으로 무한책임 출자자(General Partner)와 유한책임 출자자(Limited Partner), 각 1인 이상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회사이다. 무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영업상 채무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고 경영에 대해 전반적인 권한을 갖는다. 반면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대신(다만 출자를 약속한 자산의 범위 내에서는 책임을 짐) 경영권한은 갖지 않는다. 유한책임 출자자는 회사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 되며 회사 이름에 자신의 이름을 포함시킬 수도 없다.

설립절차(뉴욕의 경우)

- 합자회사 증명서(Certificate of Limited Partnership)를 뉴욕 주 주 정부 사무국(Secretary of State)에 등록한다 .
- 합자회사는 주정부(Department of State)에 등록함으로써 설립되며, 설립일을 증명서(Certificate) 등록일 이후(등록 후 60일을 넘지 않아야 함)로 지정했으면 그 날짜에 설립된다.
- 증명서의 접수 등록 후 카운티에서 지정하는 두 개의 신문에 6주 연속 주 1회 합자회사증명서를 광고해야 한다. 광고한 사실의 증명은 증명서 등록 후 12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법에 의하면, 파트너 간의 기본 관계를 규정하는 파트너십 계약을 갖추도록 돼 있고, 파트너십 계약은 모든 무한책임 출자자가 서명해야 한다. 다만 유한책임 출자자의 서명은 필요하지 않다.

- 합자회사 형태는 특히 기업에 대한 출자자들의 출자금이 다른 경우, 다수의 기업경영에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다만 합자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모든 실정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합자회사는 미국 연방국세청(IRS)이 법인화되지 않는 사단(인적 결합, 단체)으로 분류하고 세금을 물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한책임 출자자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만들 수도 있다.

- 만일 무한책임 출자자가 1인일 경우, 회사 투자액의 15%에 해당하는 순 투자액을 투자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세청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

유한책임파트너십

이 사업 형태는 전문 직업인을 위한 기업 형태이다. LLP는 전문 직업인들이나 혹은 전문 직업인으로 구성된 일반 파트너십(General Partnership)이 주체가 돼 주 정부에 LLP를 등록함으로써 설립된다. 회사 명칭은 R.L.L.P., PLLP, L.L.P., 또는 LLP 등을 사용해야 한다. 파트너는 LLP의 채무에 대해서 개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회계/법무법인 안내

ㅇ 한미회계법인

전화번호	212-768-9144
주소	1430 Broadway #906 New York, NY 10018
홈페이지	http://klcpagroup.com/klcpa/
이메일	kenneth@klcpagroup.co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경림 회계사(한인/교포)

ㅇ CKP 회계법인

전화번호	213-201-2202
주소	3435 Wilshire Blvd., Suite 2240,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http://www.ckpcpas.com/
이메일	kevinchun@ckpcpa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Kevin Chun 파트너 회계사(한인/교포)

ㅇ UHY Advisors

전화번호	619-540-7001
주소	719 Griswold Street, Detroit, MI 48226
홈페이지	http://uhy-us.com
이메일	jjayo726@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장혁 회계사

ㅇ Rehmann

전화번호	248-952-5000
주소	1500 W Big Beaver Rd, Troy, MI 48084
홈페이지	http://www.rehmann.com/
이메일	info@rehmann.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A

ㅇ Michail &Associates, CPA, P.C.

전화번호	248)-689-8866
주소	3424 Rochester Road Troy, MI 48083
홈페이지	http://www.michail.us/
이메일	maged@michail.u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A

ㅇ JC&Company 회계법인

전화번호	949-485-4900
주소	10 Corporate Park, Suite 210, Irvine, CA 92606
홈페이지	http://jclawcpa.com/
이메일	jchung@jclawcp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정용덕 대표 변호사/회계사(한인/교포)

ㅇ ACI Law Group 법무법인

전화번호	1-714-522-3300
주소	6 Centerpointe Dr., Suite 630, La Palma, CA 90623
홈페이지	http://www.acilawgroup.com/
이메일	pa@acilawgrou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진정 대표 변호사(한인/교포)

ㅇ Fisher Phillips 법무법인

전화번호	213-330-4500

주소	444 South Flower Street, Suite 1500, Los Angeles, CA 90071
홈페이지	https://www.fisherphillips.com
이메일	spark@fisherphillip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박영수 변호사(한인/교포)

ㅇ LBBS(lewis Brisbois Bisgaard &Smith LLP) 법무법인

전화번호	213-580-7910
주소	633 West Fifth St., Suite 4000, LOS Angeles, CA 90071
홈페이지	https://lewisbrisbois.com/
이메일	scott.lee@lewisbrisboi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Scott Lee 파트너 변호사(한인/교포)

ㅇ Lee &Hong 법무법인

전화번호	213-623-2221
주소	660 South figueroa St. Suite 2300, Los Angeles, CA 90017
홈페이지	http://www.lhlaw.com/
이메일	erich@lh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에릭 변호사(한인/교포)

ㅇ Law Office of Sook Jin Kang, P.C.

전화번호	212-564-5550
주소	39W. 32St. Suite 600 New York NY 10001
홈페이지	http://www.sjkanglaw.com/
이메일	nyc3932@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강숙진 변호사

ㅇ Kim &Bae, P.C.

전화번호	212-319-6888
주소	45 Rockefeller Plaza #2000 New York, NY 10111
홈페이지	http://www.kimbae.com/
이메일	bjkim@kimba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B.J. Kim, Christine Bae 변호사

ㅇ The law office of Gus Michael Farinella PC

전화번호	212-675-6161
주소	130 W 15th St., New York, NY10011
홈페이지	https://www.lawgmf.com/
이메일	heip@lawgnf.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A

ㅇ 골드파인 회계사무소

전화번호	212-714-6655
주소	40 Exchange Place, Suite 1602 New York, NY 10005
홈페이지	https://www.goldfinecpa.com/
이메일	info@goldfinecp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A

ㅇ 문주한공인회계사

전화번호	718-279-1254
주소	202-16 45th Avenue #2Fl Bayside, NY 11361
홈페이지	http://www.cpamoon.com/
이메일	mooncpa@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문주한 회계사

ㅇ 김경주공인회계사

전화번호	212-268-8940
주소	306 5th Avenue #7Fl New York, NY 10001
홈페이지	http://www.kimcpa.com/
이메일	jacqueline@kimcpa.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김경주 공인회계사

ㅇ Jeffrey J. Lee CPA

전화번호	408-519-5781
주소	253 N 1st St, San Jose, CA 95113
홈페이지	http://www.leecpa.us/board/korean.php
이메일	jlee@leecpa.us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지홍 회계사

∘ Song &Lee Law Firm

전화번호	408-748-3308
주소	4633 Old Ironsides Dr #260, Santa Clara, CA 95054
홈페이지	https://www.pillsburylaw.com/en/offices/silicon-valley.html
이메일	contact@songlee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송희영, 이연수 변호사

∘ Pillsbury Winthrop Shaw Pittman LLP

전화번호	650-233-4554
주소	2550 Hanover St, Palo Alto, CA 94304
홈페이지	https://www.pillsburylaw.com/en/offices/silicon-valley.html
이메일	julie.park@pillsbury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박여훈 변호사

∘ PNJK Partners, LLP

전화번호	855-765-5557
주소	1480 Renaissance Dr., Suite 412 Park Ridge, IL 60068
홈페이지	http://www.pnjkllp.com/
이메일	admin@PNJKLL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박형춘, 김준현 회계사

∘ Coryo

전화번호	847-472-9221
주소	1699 Wall Street, Suite 702 Mt. Prospect, IL 60056

홈페이지	http://www.eif.co.nz
이메일	Ryan@mirae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박현주, 김영언 변호사

ㅇ Arnold &Porter LLP

전화번호	202-942-5000
주소	601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1
홈페이지	https://www.arnoldporter.com/en/
이메일	richard.alexander@arnoldporter.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데이빗 박

ㅇ Akin Gump Strauss Hauer &Feld LLP

전화번호	202-887-4000
주소	Robert S. Strauss Building 1333 New Hampshire Avenue, N.W.Washington, DC 20036
홈페이지	https://www.akingump.com
이메일	dlee@akingump.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데이빗 리

ㅇ Greenberg Traurig, LLP

전화번호	202-331-3100
주소	2101 L St NW, Washington, DC 20037
홈페이지	https://www.gtlaw.com/en
이메일	leelu@gtlaw.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루시 리

ㅇ Nelson Mullins

전화번호	202-712-2817
주소	101 Constitution Ave NW # 176, Washington, DC 20001
홈페이지	https://www.nelsonmullins.com/
이메일	woojin.shin@nelsonmullin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신우진

∘ CohnReznick LLP

전화번호	703-744-6700
주소	8000 Towers Crescent Dr #1000, Tysons, VA 22182
홈페이지	https://www.cohnreznick.com/
이메일	jinah.lee@cohnreznick.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진아

∘ Law Office of Sul Lee PLLC

전화번호	214-509-6609
주소	2560 Royal Lane, Dallas, TX 75229
홈페이지	https://www.sulleelaw.com
이메일	sul@sulleepllc.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이설 변호사

∘ The Law Firm of Sim, Parvathaneni &Brown, PLLC.

전화번호	817-523-8247
주소	3010 LBJ Freeway #130, Dallas, TX 75234
홈페이지	http://spblawfirm.com/
이메일	thslaw1@gmail.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심현근 변호사/ 공인회계사

∘ Law Offices of Patrick Wright

전화번호	214-745-1080
주소	10888 Shady Trail, Dallas, TX 75220
홈페이지	http://www.wrightfirm.com/
이메일	chung@wrightfirm.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정혜진 변호사

∘ Haynes and Boone LLP

전화번호	214-651-5000
주소	2323 Victory Ave. #700, Dallas, TX 75219
홈페이지	http://www.haynesboone.com/
이메일	info@haynesboone.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A

∘ Kelly CPA

전화번호	469-857-0011
주소	2251 Vantage Street #300, Dallas, TX 75207
홈페이지	https://kellycpatexas.com/
이메일	hello@kellycpatexas.com
한국인교포 변호사 유무	N/A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투자-투자진출방식)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청산 및 철수

관련 법 및 절차

가. 개요

외국 기업이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기업 경영의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철수해야 하는 상황, 둘째, 투자된 기업을 미국 내 또는 외국의 기업에 매각함으로써 매각 대금을 회수해 철수하는 상황, 셋째, 한국 기업의 내부 사정에 따라 철수하는 상황일 것이다. 철수 형태로는 현지법인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가 철수하는 경우와 현지법인(U.S. Entity)이 아닌 지점, 연락사무소 등의 외국 법인(Foreign Entity) 형태로 운영되다가 철수하는 경우가 있다. 두 경우 모두 철수 절차는 모든 주에서 비슷하다. 다시 말해서 각 주 정부 재무부로부터 납세필증을 받고, 주 정부 국무부로부터 법인 해체 확인서나 외국 법인 철수 확인서를 받으면 철수는 완료된다. 완벽한 철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철수한 후에도 투자했던 현지법인이나 비현지법인은 주 정부로부터 계속적인 세무 보고를 요구 받게 된다. 이에 따른 불필요한 과세를 당해 금전적 손실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철수 절차를 철저히 마무리해 경제적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법인 철수 및 청산 절차

1) 현지법인의 철수

미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다가 철수하는 경우 해당 주정부의 국무부에 미지급된 세금이 없다는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함께 해체(Dissolution) 신청을 함으로써 미국법인을 철수하게 된다. 납세필증은 주에 따라 소득세뿐 아니라 프랜차이즈 세금, 고용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납세필증을 받지 않고 철수한 법인은 매년 주 법인세 신고서 제출 통보를 계속 받게 되고 벌금을 추징받을 수도 있다. 각 주에 따라 법인 해체에 필요한 요구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납세필증과 법인 해체확인서 신청서를 주정부 국무부 법인해체 부서에 제출하는 것이 공통절차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납세필증을 받기 위해 철수일까지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Final Corporation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하며, 다른 세금 체납도 없어야 한다. 마지막 법인세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마지막 신고서임을 세무신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 세무당국은 철수 이후에도 세금보고서 신고 및 세금미납을 이유로 과세를 부과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한편 주 세무당국은 납세필증 발급에 앞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세무보고 내용을 검토해 감사 통보를 하고 감사를 할 수도 있다.

뉴욕주의 경우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과 해체신청서(Application for Dissolution) 및 해체필증(Dissolution Certificate)을 준비해야 하며, 관련 양식 및 구체적인 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 ㅇ 참고사이트
  - 뉴욕주에서 자발적 기업 해체 시 참고 사이트: http://www.tax.ny.gov/bus/doingbus/tr125.htm
  - 뉴욕주의 기업관련 모든 서류 사이트: http://www.dos.ny.gov/corps/buscorp.html#discontinueassume

2) 외국법인의 철수

한국 기업이 미국 현지법인을 따로 설립하지 않고 외국법인으로서 영업하다가 철수하는 경우, 주 정부에 철수신청서(Application for Withdrawal)를 제출하고 주 정부로부터 철수증명서(Certificate of Withdrawal)를 받음으로써 절차가 마무리된다. 물론 철수 신청서에는 주 세무당국이 발행한 납세필증(Tax Clearance Certificate)을 첨부해야 하고, 납세필증 발급에 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현지법인의 경우와 대동소이하다. 뉴욕주의 경우 철수 신청서는 'Certificate of Surrender of Authority of (회사이름)'이라 불린다. 뉴저지 주에서는 'Certificate of Withdrwal'라고 부른다.

다. 법인 철수에 따른 청산

철수 기업은 최종 법인세 신고를 필히 주정부 재무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기업의 매각에 의한 철수라면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반영한 신고서여야 한다. 종업원의 임금에 대한 세무 신고를 연말까지 마감해 다음 해 1월 말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철수 계획이 예정돼 있을

것이므로 기업 종업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최소한 30일 전 통지를 해서 새로운 직장을 찾도록 배려한다. 종업원 연금제도가 있었다면 연금관리기관이 연금 해체에 따른 종업원별 분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 분배 후 연말을 기점으로 연금 분배 양식인 'Form 1099-R'을 발행해주어야 한다.

외상 매출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철수를 한다면 철수 전까지 조기 회수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철수 후에도 아직 받지 못한 외상 매출금은 미국 내 외상 매출금 회수업체인 컬렉션 에이전시(Collection Agency)를 선임하거나 변호사를 고용해 회수할 수 있다. 한편 철수 기업에게 외상 매입금 또는 부채 등으로 인해 여러 채권자들이 있을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철수 기업은 주 국무부에 해체(Dissolution)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 이외에도 일련의 기업법상 준수해야 하는 절차들을 밟아야 한다. 예컨대 기업의 해체에 대한 지역신문광고, 채권자 이의신청 기간 공표 및 진행, 이에 따른 채권채무 정리 및 이전 등을 완료한 후에 실질적인 철수가 완료된다. 합작투자인 경우 철수에 따른 합작회사 지분에 대한 양도 절차가 따른다. 합작회사의 파트너 기업이 시장가격으로 지분을 인수하면 인수에 따른 청산금을 회수하면 된다. 매각하면 양도 차익이 한국 모기업의 투자 이익이 될 것이며, 지분 양도가 시장가격 이하 또는 장부가격 이하로 인수된다면 지분 양도 손실은 한국 모기업의 투자 손실로 처리돼야 할 것이다.

라. 법인 철수 및 청산 관련 법령

1) 개요

미국의 법인 관련 법령은 연방법에는 존재하지 않고 주 법령을 따르기 때문에 내용 역시 주별로 상이하다. 사전에 법인이 위치한 주법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수 및 청산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2) 법인 철수 및 청산 법령(뉴욕주 기준)

미국 국내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Non-Judicial Dissolution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 10: Judicial Dissolution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2: Formation and Dissolution of Cooperative Corporations;Classes; Powers; By-laws: Section17: Voluntary Dissolution

해외 주식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Business Corporation; Article13: Foreign Corporations; Section1310: Surrender of authority

미국 국내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7: Dissolution

해외 유한책임회사 철수 및 청산 법령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ction806: Surrender of certificate of authority
- NY Code-Limited Liability Company Law; Article8: Foreign Limited Liability Companies; Section807: Termination of existence

3) 철수를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필요(실제 사례를 통해 작성한 보고서 내용)

-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등록 차이점

한국에 소재한 본사 명의로 주정부에 외국법인(Foreign Entity)으로 등록하면 모든 책임은 본사가 져야 한다. 주식회사이므로 유한책임을 진다고 해도 본사가 남은 책임을 져야 하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법인(U.S. Entity)으로 등록 시에는 본사와는 별도 법인이기에 폐쇄 및 파산 시 본사의 책임이 전혀 없이 폐쇄와 파산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사무실 임대 계약기간 중 사무실(법인)을 폐쇄할 경우 건물주는 외국법인의 경우는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미국법인은 자산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도 실익이 없으므로 통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ㅇ 현지인을 책임자로 법인 등록 시 문제점

미국 내 사무실 주소가 없을 경우, 지사(법인) 설립을 서두르기 위해서 미국 현지인(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을 고용해 동인의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로 모든 서류를 갖추고 법인등록과 은행계좌 개설 등을 할 경우, 모든 권리와 책임이 동인에게 있다. 따라서 법인의 명의로 철수 업무를 처리할 수 없고 개인의 명의로 처리해야 한다. 지사 철수로 인해 법인과 개인 간의 고용취소 계약을 할 경우, 관계가 우호적이지 않을 경우 개인이 철수에 따른 업무진행에 협조를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철수에 따른 모든 책임(부채, 소송 등)이 개인에게 있기 때문에 이 경우 노사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관계가 비우호적일 경우에는 고용 취소계약 시 개인이 많은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지사(법인)의 철수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노사 간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할지라도 개인에 대한 모든 책임(부채, 소송)을 면제하는 조항이 고용취소 계약에 포함돼야 개인은 고용취소 계약에 동의할 것이기에 개인의 업무상의 실수, 문제 등도 모두 면제될 가능성이 높아 미래에 발생 가능한 바이어의 클레임 등에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을 수 있다. 본사는 고용취소 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ㅇ 법인 등록 시 해결방안
- 한국 본사나 소유주의 명의로 등록
- 미국 내 법인(U.S. Entity)으로 등록
- 법인등록 시 미국 내 주소가 없을 경우는 Incorporator(주로 변리사, 회계사, 변호사가 담당함)를 이용해 이들의 주소로 법인을 등록하고 사무실을 임차한 이후에 법인의 소재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이 좋다고 조언

ㅇ 사무실 임대계약 시 계약의 조기종료(Early Termination)시 보상조항 기재

일반적으로 표준계약에는 임대계약을 조기 종료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조기 종료 시에는 6개월간의 임대료를 지불한다는 등의 부속조항을 추가하는 노력을 임대 계약 조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런 협상은 변호사가 건물주의 변호사와 논의토록 한다.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면 협상이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맨하탄에 소재한 사무실은 통상 5년을 계약 단위로 하고 있다.

ㅇ 사무실 임대계약 시 본사가 계약을 하지 않고 현지법인이 계약토록 추진

사무실을 빨리 임대하기 위해서 본사가 임대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임대계약 조기 종료시 본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현지법인이 계약의 주체가 돼야 하며 만일 건물주가 본사가 연대보증을 요구할 경우는 조기 종료 후 6개월 정도 보증하는 것으로 협상해야 한다.

ㅇ 사무실 임대계약 시 건물주의 부동산중개인만을 사용토록 하는 조항

건물주는 빌딩 내의 많은 사무실 임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아울러 임대차 표준계약서에는 동 중개인만이 중개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지정하는 중개인도 같이 중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임대 계약 시 넣는 것이 철수할 경우 서브리스 등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이유는 건물주 중개인은 건물주를 위해서 일을 수행하지 임차인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ㅇ 건물주의 변호사 및 부동산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는 조항

건물주의 변호사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불한다는 조항이 표준계약서에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실제 비용이 얼마가 될지 모르기에 일례로 3,500달러까지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등의 조건을 붙이는 노력이 임대계약서 체결 시 필히 필요하다.

ㅇ 건물주의 실제 면적에 대한 과다 책정

건물주는 실제 계약면적을 다소 부풀려서 계약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따라서 청사진이나 시정부에 등록된 등기부를 보거나 실측해서 실제 면적을 정확히 계산해 계약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ㅇ 사무실의 서브리스(Sub-lease)와 양도(Assignment)와의 차이점

철수에 따른 사무실을 제3자에게 서브리스를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모든 사항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즉, 서브리스를 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기존 임차인은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임대계약의 양도는 2차 임차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기존 임차인은 2차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이런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기존 임차인의 법인이 등록 삭제(De-Registration)를 하면 건물주는 더 이상의 책임 추궁을 할 수 없게 된다. 서브리스 조항을 양도조항으로 변경할 경우 건물주는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양수하는 제3자도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대부분의 경우이다. 따라서 임대계약시 서브리스뿐 아니라 양도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사전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건물주는 양도계약에 대한 검토를 90일간 할 수 있는 조항이 대부분 포함돼 있어 건물주가 고의로 검토를 늦출 경우 양수인을 찾아도 양도계약을 맺을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한다. 이는 30~45일 정도로 합의가 가능하므로 임대 계약 시 이를 조정해둘 필요가 있다.

ㅇ 사무실 임대계약시 해결방안
-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고용, 계약서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상기와 같은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함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투자-청산 및 철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

가. 임금 수준

기준환율 : 1달러=1113.60원

대졸-사무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162	고졸-생산직 초임 (평균임금, 달러)	3,172	최저임금 (시간당, 달러)	7.25
비고	환율은 2018년 12월 6일 매매기준율 기준임. 사무직 및 생산직 임금은 학력 및 경력에 관계 없는 업계 연간 평균 임금 통계임(2017년 5월 기준), 최저임금은 연방정부 최저임금으로 각 주(州)마다 상이함.				

<자료원 : 미 노동부>

나. 노무관리

고용계약

1) 구인광고

직원 채용 규모와 업무 내용 그리고 직위가 결정되면 직원을 어떤 경로를 통해 채용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광고, 소개,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후보자를 물색하는 방법도 있고 대학마다 있는 직장 알선 사무소(Job Placement Office)에 의뢰하거나 전문적으로 구인을 알선하는 업체(Employment Agency, Recruiter, Head Hunter)를 통해 물색할 수도 있다. 구인 알선업체를 이용할 경우, 자격 요건을 갖춘 후보자들을 미리 선별해 보내주는 장점이 있지만, 수수료가 보통 연봉의 10% 내지 15% 정도가 되며, 핵심 직원을 채용할 경우 연봉의 30%까지 지불하기도 한다. 미국에서 직원 채용 광고 문안 작성 시 나이, 성별, 신분, 인종 관련 문구 등의 차별적 문구가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고용계약

채용이 결정되면 '오퍼레터(Offer Letter)'를 보내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보통 '오퍼레터'는 계약서 형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연봉과 복지혜택 등의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서 일할 것을 제안하니, 이를 수락한다면 서명을 해서 보내달라. 이 레터는 일정기간 당신에게 직장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고 고용계약서도 아니며 당신과 회사 간에는 임의 고용관계가 존재한다"의 내용으로 돼 있다. 대부분의 고용계약서에는 해고 사유가 되는 것들을 나열해 놓고 있는데 만약 고용계약서가 존재할 경우 고용 계약서에 나와 있는 규정에 따라서만 해고할 수 있어 임의 고용관계에 따른 자유로운 해고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보통 계약서 대신 오퍼레터를 이용한다. 오퍼레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회사 표준 양식을 만들어 사용해야 하며 서명본은 종업원 인사 파일에 넣어두어야 한다.

새 종업원이 맡을 업무와 관련해 회사 기밀 유지 서약 등을 받을 필요가 있다면 채용 시 받아두는 것이 좋다. 미국 이민법은 종업원 채용 시 미국에서 일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고용주에게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노동허가가 있는지 여부를 사회보장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토대로 확인해 Immigration Form I-9을 작성해야 한다. 미국 이민국은 이런 종업원의 자격 심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e-verify(전자고용인증) 사이트를 개설해서 즉석에서 종업원의 불법체류 여부와 고용 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사용주가 종업원을 고용 시 e-verify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 e-verify 사이트: http://www.uscis.gov/e-verify

근로시간

미국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은 법정 근로 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고용주들의 근로자들의 주당 40시간 초과 노동에 대해서는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 임금의 1.5배에 해당하는 초과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지불돼야 할 노동시간이란, 근로자가 직접 노동을 수행한 시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있었던 모든 시간이 포함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가사노동, 출장(여행시간), 대기시간, 훈련 기간, 유예기간 등이 모두 포함된다.

휴가

미국 근로기준법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둔 기업과 모든 공공기관은 아래의 경우 일 년에 최대 12주간의 무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 휴가 기간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을 계속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휴가 기간 이후 근로자가 동 직종에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녀출산
- 자녀양육
- 자녀, 배우자, 혹은 부모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해
- 근로자 자신의 심각한 건강 문제를 돌보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 직원의 휴가(Vacation) 경우, 첫 3년간은 13일, 3~15년간 20일, 15년 이후는 26일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다. 병가(Sick leave)는 근무 연수에 상관없이 13일을 사용할 수 있다. 유급병가 및 출산휴가에 대한 것은 주 정부 혹은 지방정부마다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리 주법 및 시 정부 조례를 찾아 숙지해야 한다.

해고

피고용인 해고 결정을 위한 적합한 문서를 구비해야 한다. 다음은 인사기록부의 '기록 사항'과 '기록 금지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기록사항

모든 승진 기록, 봉급 인상, 업무평가를 기록한다. 피고용인과의 회의에서 다루어진 모든 사안(예를 들어 고객으로부터 나온 피고용인에 대한 불평)을 메모로 남긴다. 이때 단순한 결론이 아닌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징계 결과 뒤 업무수행 내용과 업무수행 향상 또는 근무 태도 개선 등의 점검 기록을 포함한 피고용인의 모든 경고와 징계를 문서화한다. 의사 진단서 등 결근에 대한 피고용인의 해명을 포함해 결근과 결근 날짜, 무단결근, 반복적인 지각 등을 기록한다.

- 기록 금지사항

회사 변호사의 서신을 인사기록부에 보관하지 않는다. 만약 같이 보관했을 경우, 변호사와 고객 간의 비밀보장 특권을 상실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소송이 걸려올 경우 변호사 서신을 공개해야 할 수도 있다. 불확실하거나 미완성된 내용은 기록하지 않는다. 사실만 기입하며 결론을 기입해서는 안 된다. 1년 이상 미기록 공백 상태로 놔두지 않는다. 업무능력 평가 또는 이와 유사한 평가 없이 임금 인상 또는 보너스를 주지 않는다. 차별 대우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기준 하에서 피고용인이 해고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과 모든 사람에게 일관된 징계 절차가 적용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해고 결정은 반드시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와 해고 결정에 대한 변론, 그리고 단계적인 징계 등 기업의 인사방침과 인사관리 규정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법적으로 해고 60일 전에는 피고용인에게 통보해야만 한다. 단, 회사 사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퇴직금

은퇴연금제도는 매우 다양하며 선택에 따라 회사가 부담할 비용은 직원 연봉의 몇 퍼센트에서 25% 혹은 그 이상의 비용이 들 수도 있다. 은퇴연금제도는 회사의 비용 부담 측면에서 보았을 때, 직원이 은퇴 후 일정연금을 평생 받도록 규정하고 매년 그에 따라 상응하는 금액을 적립하는 제도(Defined benefit plan)와 회사가 매년 직원 은퇴기금에 적립할 금액을 정해 놓고 적립하는 제도(Defined contribution plan)가 있다. 직원의 은퇴혜택이 고정돼 있는 연금제도는 최근 고령화 추세와 기금의 투자성과 여부에 따라 회사의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 점차 사라져 가는 추세다.

매년 회사의 적립액이 정해진 경우, 직원이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기금의 투자 성과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한, 회사의 비용부담이 확정적이고 한정적인 은퇴연금 제도에는 Profit Sharing Plan이 있는데 회사가 직원 급여의 25%까지 적립해줄 수 있다. 매년 적립하는 급여 비율은 바꿀 수 있으며, 이 제도는 회사가 비용을 100% 부담하는 제도이다. 최근에 많이 채택되고 있는 연금인 401(k)Plan은 직원이 본인 급여에서 49세 이하인 경우 연간 1만 9,000달러(2019년 기준)를 (50세 이상은 추가로 6,000달러를 더 불입 가능) 적립할 수 있고, 회사에서 직원 적립액에 대해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이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퇴연금제도가 있는데, 그에 관련된 비용과 직원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감안해 효과적인 복지 혜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임금

미국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7.25달러이나 각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되며, 직종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주별 최저임금에 대한 최신 정보는 아래 미국 노동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노동부 웹사이트 : http://www.dol.gov/whd/minwage/america.htm

노무관리 유의사항

개인적 서비스 고용계약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은 임의 고용관계이다. 이것은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자유롭게 고용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인사관리 규정은 묵시적 고용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피고용인은 더 이상 임의 고용관계가 아니므로 계약상 법적 권리를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인사관리 규정에 피고용인은 해고사유가 있을 때만 해고된다고 명시됐다면, 단계적인 징계가 해고에 앞서 내려질 것이며, 구체적인 위반 사항들이 해고 사유로 명시될 것이다. 이 경우, 피고용인을 임의로 해고할 수 있는 고용주의 무제한적인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상기한 고용주의 해고권한제한은 고용관계가 임의 고용 관계임을 명시한 뚜렷하고 구체적인 면책조항의 삽입으로 무효화 될 수 있다. 인사관리 규정의 다른 규정인 임금 인상, 복지 혜택, 고용 기간과 고용조건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약속이 될지 모른다. 따라서 그러한 약속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추가 면책 조항과 고용정책을 임의로 바꿀 수 있다는 고용주의 권리를 천명하는 것은 그 같은 약속을 무효화 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인사관리 규정에 고용주의 임의적인 해고권한 보유 등을 포함해 구두 약속에 대한 문서화된 면책조항, 피고용인은 기업의 과거 관행과 정책들이 지속되리라고 믿어선 안 된다는 경고 등은 묵시적인 고용계약 관계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만일 기업의 인사관리 규정과 다른 문서에 면책 조항과 고용주의 권리 보유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고용주는 이러한 조항들을 삽입한 채 인사관리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새 인사관리 규정이 예전 인사관리 규정보다 우선시 됨을 문서로 피고용인에게 알려야 한다. 심지어, 묵시적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했을 때 반드시 주법이나 규정에 명시된 공공 정책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선호

일반적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는 외국기업이나 그들의 미국 내 자회사들은 고용 차별을 금하는 연방 및 주법의 적용을 받지만, 감원 시 적용되는 2가지 중요한 예외조항이 있다. 한미친선, 통상, 항해조약은 한국회사가 미국 내 영업활동을 관리 운영하기 위해 그들 스스로가 원하는 간부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방 및 주법은 출생국에 기초한 고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 조약은 미국 내 한국 회사들이 한국인을 선호해도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조약은 외국회사들이 다른 형태의 차별, 즉 감원과 고용에 있어 한국인을 선호하면서 연령과 성 차별을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한국인이 한국 내 모회사의 해외 근무방침에 의해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면 비 한국인이 한국인을 그대로 두면서 자신이 감원 대상이 된 것이 불법적 차별 때문이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그러나 비 한국인들의 그 같은 주장에 대비, 한국 회사들은 일정한 범주 내에서 해외 근무제도를 확립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한국인이 미국 내 현지법인 자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한국회사들은 자회사에게 한국인 고용 조건 등을 지시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 회사들이 고용문제에 관한 그 같은 통제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미국 내 자회사들이 상기한 조약이 부여하는 차별 주장으로부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조약이 부여하는 보호혜택에 대한 다른 제한들 또한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보호혜택은 한국회사나 미국 내 자회사들

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직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간부를 따라 미국에 온 개인 비서는 감원 시에 조약에 의한 보호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또한 회사에 고용된 한국계 미국인들도 똑같은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설명되는 것처럼 간부직이 아닌 한국인 직원이나 한국계 미국인들은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 조건이란 면제 하에서 보호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고용차별법의 또 다른 예외는 진실한 직업상의 요구조건(Bonafide occupational qualification)이란 개념이다. 이는 어느 특정 인종이나 출생국, 성, 종교에 속한 성원이 되는 것이 특정 직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의미해, 이상의 한 그룹 에 멤버가 되는 것이 해당 직업에 있어 아주 필수적일 때만 이 예외는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이 예외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매우 좁게 적용되고 있다. 한국 회사와 미국 내 회사들에게 이 예외가 폭넓게 적용된다고 생각해도 무리는 없다. 이는 많은 미국 내 고용인들이 한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문화와 사회적 규범, 영업 형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또 미국 내 한국인이나 한국의 모회사와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나라 출신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이 예외는 한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미국 내 한국 회사의 직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다. 사회보장세

건강보험

미국은 노인 의료 보험(메디케어), 저소득층(메디케이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건강보험 부담은 개인 혹은 고용주가 사설 기관을 통해 비용을 지불하고 직접 가입해야 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오바마케어를 통해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시행했으나 지난 2017년 의회를 통과한 신규 세법에 따라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기됐다. 연방 공화 의원들은 신규 세법을 통해 건보 미가입 시 벌금을 0달러로 낮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무력화했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2016년부터 종업원 50인 이상(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풀타임 직원 기준)을 둔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했다. 하지만 건보 미가입 시 벌금이 사라지면서 고용주의 건강보험 제공 의무도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많은 사업체가 인재 유치를 위해 직원들에게 베네핏으로 고용인과 가족들의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일정 부분 혹은 모든 금액을 고용주가 부담한다.

이와 별도로 미국은 만 65세 이상이 되면 메디케어를 통해 건강보험을 제공한다. 근로자와 고용주는 연방보험기금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Tax, 이하 FICA 세금)에 따라 소득의 일정부분을 메디케어 세금으로 납세해야 한다. 메디케어 세금 요율은 근로자 소득의 2.9%로 1.45%는 근로자가, 나머지 1.45%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고용보험

연방실업세법(Federal Unemployment Tax Act, FUTA)에 따라 20주 중 하루라도 한 명 이상을 고용할 경우 고용주는 실업세를 부담해야 한다. 세금 요율은 종업원당 최대 7,000달러까지 6%가 부과되나 세금 크레딧 5.4%가 적용되어 실질적인 요율은 0.6%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 주 정부가 정한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별도로 가입해야 한다. 뉴욕주의 경우 모든 영리 목적의 사업체 근로자, 가정에서 주당 40시간 근로하는 가내 근로자, 돌보미, 수행인 및 입주 가사 도우미, 농장 노동자(전년도 농장 노동으로 1,200달러 이상을 받은 자), 비영리 기관에서 임금을 받는 대부분의 근로자, 그 외 산재보상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서 직원이라고 판단하는 근로자를 두고 있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만약 자영업자로서 단일 사업 소유주, 합명회사 내 개인, 소유주들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고 (각각 1주 이상) 회사 내 모든 직책을 맡고 있는 1인 또는 2인 법인은 소속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산재보험을 갖추어야 하는 고용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이 없는 매 10일에 대해 최고 2,000달러의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5인을 초과하는 직원에 대해 보험을 들지 않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
보험사는 보험을 체결, 수정 또는 취소할 대 뉴욕주의 산재보상 위원회에 이를 고지한다. 산재 보장 위원회는 대체 보험 없이 보장이 취소

될 경우 해당 사업 소유주에게 연락을 취한다. 보험은 민간보험사와 공공보험사 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국민연금

62세 이상 은퇴자에게 지급하는 국민연금(Social Security)은 근로자의 소셜시큐리티 세금(Social Security Tax)으로 충당된다. 세금 요율은 근로자 소득의 12.4%로 근로자가 6.2%, 고용주가 6.2%씩 각각 부담한다.

국가정보(투자-노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세금

가. 조세제도

법인세

1) 연방세

내국법인에 대해선 미국 내외의 전체소득이, 외국 법인에 대해서는 미국 내의 소득 및 국외의 특정 소득이 과세대상이다.
현재 연방정부의 법인세율은 21%로 2017년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 35%에서 14%포인트 인하된 것이다. 연방의 법인세 소득은 전 세계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잡기 때문에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 발생한 수익까지 보고해야 한다.

2) 주세 및 지방 법인세

연방 법인세와 별도로 주와 지방 정부에 따라 법인세 납부의 의무가 발생한다. 주 정부에 따라 법인세율이 다르지만 대략 5~9% 정도이며, 네바다, 사우스 다코다, 워싱턴, 와이오밍 주 등은 일부 주는 법인세가 없다. 뉴욕시처럼 지방 법인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법인 설립 시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1) 연방세

미국 시민이나 거주 외국인은 국내외의 전체소득이, 비거주 외국인은 미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된다. 세율 10~37%로 독신, 배우자 사별자, 세대주, 부부 공동 신고자, 부부 개별 신고자의 소득에 따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미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미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irs.gov

연방에 납세하는 개인소득세 역시 법인세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미국에서 발생했건 외국에서 발생했건 상관없이 전 세계 수입원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2) 주세 및 지방소득세

대부분의 주 및 컬럼비아 특별구는 독자적으로 개인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알래스카, 플로리다,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텍사스, 워싱턴 및 와이오밍 등이 있다. 코네티컷, 뉴햄프셔 및 테네시 주는 개인에 대해서는 투자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양도 이익)에만 과세하고 있다.
주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 대해서는 전 소득에,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주 내 원천소득에 한해서만 과세된다. 각 주의 개인 소득세율은 주마다 다르며 소득 수준별로 세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부가가치세

미국은 연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대신 주 정부와 지방정부가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현재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특별소비세(Excise tax) 항목으로는 휘발유, 항공 티켓, 담배, 주류, 건강 관련 상품 및 서비스가 있다. 대부분이 소비자가 구입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주별로 특정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품목과 세율은 주별로 상이하다.

판매세

미국은 각 주와 지방 정부별로 제화 및 서비스에 대한 판매세를 부과한다. 판매세는 부과되는 품목과 세율이 지역별로 다르며, 오리건, 몬테나, 델라웨어, 알래스카, 뉴햄프셔 등 일부 지역은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가정보(투자-세금)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외환

가. 외환제도

외환 제도 개요

미국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결정되는 변동환율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외환 당국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수단은 통상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 가능한데, 미국은 아래 4가지 정책수단 중 자본 유출입 규제를 시행한 사례는 없으며 나머지 3가지를 환율정책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율정책 관련 4가지 정책수단

- 시장 개입(Market Intervention)
- 금리 및 유동성 조절(Monetary Policy)
- 자본 유출입 규제(Capital Control)
-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

미국은 1980년대 중반의 플라자 합의, 2000년대 초반 중국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경기회복을 위해 달러와 약세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한 바 있다. 가장 최근 사례인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례를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미국 경상수지 적자 폭이 다시 확대되고 소비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미국은 수출경기 회복을 위해 달러화 약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요 정책수단은 위안화 절상 촉구 등 교역 상대국에 대한 압력과 양적완화정책 등 통화정책이다. 재무부는 1년에 두 차례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환율정책 보고서를 활용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의회는 중국에 대한 무역 관련 법안 상정 등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정책에 대한 신경전도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2017년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주요 교역국들의 통화가치가 국가 개입으로 인해 저평가돼 있다며, 미국과의 교역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해왔다. 중국과 일본, 독일은 물론 한국까지 환율조작국으로 거론하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018년 10월 미 재무부가 발표한 환율정책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일본을 포함한 6개국이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유지됐다. 특히 중국은 미-중 무역분쟁에 따라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이 거론됐으나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

외환 규제

미국은 직접적인 외환관리법은 없고, 적성국과 금융, 상업 거래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즉, 재무부는 적성국 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에 따라 적성국으로 규정한 나라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교역을 금지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적성국으로는 쿠바가 유일하며, 북한은 오랫동안 미국의 적성국이었으나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 때 적성국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밖에 대통령의 긴급 제재 조치, 특별법 등에 따라 국가간 금융 및 상업 거래에 제재가 가해진다. 미국은 지난 2010년 포괄적이란 제재법을 발효시켰으며, 해당 법은 2016년 미 의회에서 10년 더 연장된 바 있다. 이란제재법에 따라 미국은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게 미국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러시아 역시 미국의 경제제재 대상국이다. 미국은 지난 2017년 8월 신규 대러시아 제재를 발표,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기존 제재와 동일하게 특별지정 거래금지 대상자 거래의 전면금지 및 크림반도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 분야별 제재 대상자의 일부 거래 금지 항목에 철도 분야를 추가했다. 또한, 미국 제재법을 위반하는 외국 국적의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Secondary Sanction 조항을 신설,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은 자(군사정보 분야 관련 거래 수행, 러시아 자산의 부당한 민영화와 투자 촉진에 참여한 자 등)와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국가정보(투자-외환)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Ⅳ. 참고정보

1. 시장특성

가. 시장 및 소비자 특성

소비인구

미국은 GDP 대비 소비 비중이 약 70%에 이르는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이자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수입시장이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GDP 대비 개인소비지출 비중은 68%였고 2017년 기준 1인당 실질 GDP는 55,418달러를 나타냈다. 미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미국의 소득이 있는 15세 이상 인구는 약 2억 6,217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의 소비를 이끄는 주요 소비층으로는 소수민족, 밀레니얼 세대, LGBT를 꼽을 수 있다. 소수인종의 구매력이 확대됨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히스패닉, 아시아계를 타겟한 상품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한 15~34세의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 시장의 가장 큰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성적 소수자인 LGBT의 상당 비중이 높은 소득수준을 보유하고 있어 유망한 틈새시장의 소비층인 것으로 평가된다. 〈자료원 : 미국 상무부, 미국 통계청〉

소비 성향

ㅇ 메네상스 'The Menaissance(남자의 Men과 르네상스를 합친 신조어)'
- 경제전문 미디어 기관 Forbes는 남자들의 소비가 여성 소비자 대비 빠르게 증가해왔다고 분석했다. 남성 패션 및 의류 시장이 성장한 요인으로는 패션에 대한 남성들의 관심이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남성들의 생활습관이 도시화되면서 자신을 깔끔하게 가꾸는 것이 습관화됨에 따라, 남성미용(Grooming) 제품이나 의류와 같은 품목에 대한 소비가 자연스럽게 증가했다.

ㅇ 개인화되는 쇼핑 경험
-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발전돼 있는 소매업체들은 기계 학습, 심층 분석 및 인공지능(AI) 기술들을 활용해 보다 타깃이 명확하고 개인화된 쇼핑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소비자들은 이전의 소비자들보다 더 많은 온라인 발자취(쇼핑내역, 소셜미디어 프로필 및 관심사)를 남기고 있어, 소매업체들이 이러한 이점을 활용해 맞춤화·개인화된 제품과 마케팅을 제공하는 것이 쉬워지고 있다.

ㅇ 가상결제 시스템의 부상
- 앞으로는 지갑을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왔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접촉하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비접촉식 카드의 생산량은 2021년까지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측됐으며, 2017년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의 운영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업체들과 신용카드사들의 협력과 경쟁이 기대되는데, 삼성페이와 애플페이, 그리고 각종 피트니스 트랙커들을 활용한 페이 지갑 시스템의 활성화도 예측할 수 있다.

ㅇ 개인화된 스페셜한 경험과 서비스를 추구
- 기술의 발전을 통해 변화되는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앞으로의 소비유통 추세도 변화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노후한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와 젊은 밀레니얼 세대들은 모두 더욱 개인화·맞춤화된 특별한 쇼핑경험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쇼핑 경험에 대한 기대치를 상승시킨다. 이러한 기대치의 향상은 각각 다양한 지역 중소기업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별한 서비스와 제품의 인기를 높이고 있다.

ㅇ 소매업자들도 온라인을 통한 사업 방법을 채택할 것
- 유통업체들도 현재의 소비자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구매하고 유통하는 과정을 선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통업체들은 자신들끼리 연결된 B2B 마켓플레이스를 활용해 쇼핑을 시작하며, 백엔드 프로세스를 가속화 및 간소화해 궁극적으로 유통의 질을 높여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더 빨리 보여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Forbes)

한국 상품 이미지

한국 상품 이미지 개선으로 국가 이미지도 개선되었다. 한국에 대해 남북 대치 상황 등 불리한 여건 속에서 단기간에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LG전자의 소비자 가전제품에 대한 높은 만족도, 현대자동차의 품질 및 고객 우선 이미지 구축으로 한국 제품은 물론 국가 이미지도 상당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는 추세이다.

미국인이 보는 한국 사람은 여러 아시아인 중의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다.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나 다른 인종과 화합하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류 열풍이나 한국인들의 자긍심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지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 열풍에 대해 미국 식자층과 젊은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전 세계에 불고 있는 한류열풍의 영향으로 한국 상품의 미국 주류시장 진출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뷰티 제품의 경우 BB크림이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과 더불어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가 미국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등 미국시장에서의 약진이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최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Amazon에 Korea Beauty 섹션이 만들어지고 아울러 Sephora 체인점에도 한국 화장품을 Trending(트렌드 제품)으로 소개하는 섹션이 만들어졌다.

한식의 경우 맨해튼 한인 식당가에서 이민족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저녁 시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의 비율이 50 대 50이 될 정도로 한국 음식에 대한 인기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하듯 맨해튼 거리에 한식 푸드 트럭이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뉴욕에서 발행되는 전국지에도 소개가 되고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지고 있다. 한식 고급 레스토랑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레스토랑 평가 매거진에서 호평을 받는 등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특히 한인 대형 슈퍼마켓에서 매우 신선한 야채와 과일 그리고 생선류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아시아인은 물론 외국인들의 쇼핑이 왕성해지고 있으며, 김치에 대한 선호도도 증가하고 있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시장특성)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거래 유의사항

상거래 시 유의사항

품목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바이어에게 향후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신뢰감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역원의 도움보다는 가급적 간단한 대화들은 직접 영어로 바로 하는 것이 좋다.

일부 바이어의 지나친 가격 인하 및 소량 주문 등의 요구에도 가급적 성의있게 상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의 화려한 연혁을 강조하기보다는 품목의 객관적인 우수성, 주요 기업 납품사례, 비즈니스모델 등을 위주로 설명하는 것이 좋으며 정중하고 신중한 대화 자세가 필요하다.

품목이 설령 맞지 않더라도 향후 잠재 바이어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상세하게 바이어와의 상담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모든 계약서는 표준 계약서와 첨가 계약서가 있는데, 특히 첨가 계약서는 당사자들끼리 협약하는 사항으로서 매우 주의해서 계약해야 한다.

신문이나 각종 유인물에는 매우 요란한 광고가 게재되기도 하는데, 모퉁이 등에 작은 글씨로 된 조건들이 숨겨지다시피 기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를 TRICK이라고 표현하며, 최종 결정 시 자세히 읽어야 한다.

미국 바이어들의 한국기업에 대한 가장 많은 불만 중의 하나는 수차례의 LETTER(FAX) 발송에도 불구하고, 회신이 없는 경우이다. 비록 바이어가 원하는 제품이 한국기업과 관련이 없을 때에도 편지에 감사하다는 답장 LETTER를 꼭 보내는 것이 향후 비즈니스 관계 수립에 매우 유리하다.

SELLER들이 제품의 정확한 SPEC이나, 효능, 이를 구입하였을 때 얻는 효과 등을 비즈니스 당사자에게 명확히 설명하면(반드시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 필요) 거래 성사율이 훨씬 높다.

꼭 이루어야 할 비즈니스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정확한 정보교환 후 "FACE TO FACE"에 의한 상담이 성과가 높다.

미국 사람들은 상담할 경우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능률적으로 진행하기를 좋아한다. 날씨와 같은 대화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바로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에 이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상대방이 잘 이해를 못 할 경우는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을 종이에 간단하게 쓰든가 그림을 그리면서 핵심적인 사항을 이해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주의할 점은 미국인들은 어려서부터 신용의 중요함을 배우고 있어 말로 한 약속도 계약서를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생각한다. 따라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게 말로 승낙을 하지 않아야 한다.

바이어와의 면담에서 WAREHOUSE의 유무, 배달 방법이나 통관의례, PAYMENT 조건 등에 대해 정확한 대응방안이 있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바이어를 접촉하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가격 정보 외에도 위의 사항들을 함께 문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속하게 답변을 주고 일을 처리해 가는 첫인상을 주는 것이 거래선을 확보하는 핵심요소이다.

대부분의 초기 주문은 Trial Order로서 다품종 소량주문일 가능성이 높으며, 거래 결과를 통해 추가 주문이 늘어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최소 주문량을 높게 설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가격 정보를 보내면서 가격 대비 품질이나 AS 또는 기타 가격 차이를 보완할 장점들을 함께 보냄으로써 바이어들이 가격에만 집중하지 않

도록 유도해야 한다.

첫 접촉 시, 미국 내에 레퍼런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므로 회사소개 시 선진국 시장에 수출한 경력, 전문 제조기술 보유 등을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회사규모, 설립 연도, 연간 매출액 등이 명기된 회사 소개서를 사전에 준비해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바이어들을 처음 접촉할 때 요구되는 것은 영문 카탈로그, 회사와 제품 소개서, 가격표와 위에 언급했듯이 영문 홈페이지 주소, 담당자 정보, 필요에 의해서는 샘플 등이 필요하다.

무역거래는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무역거래는 특별히 거래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격과 딜리버리 조건이 FOB. FAS, CIF 중 어느 것인지 확실하게 해서 공급업체와 바이어의 책임이 어느 선까지인지 확실히 하는 것이 좋다. 계절성 있는 제품의 경우는 특별히 딜리버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딜리버리에 대한 책임 소재도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

지적재산권이 있는 제품의 경우 지적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없도록 경쟁업체에게 노하우나 기술을 노출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 또한 반품, 교체 등에 대한 책임도 누가 질 것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바이어들은 전 세계 공급업체들이 제품을 팔려고 접촉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더를 신중하게 진행하는 편이다. 따라서 바이어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거래조건이 다른 공급자들에 비해 경쟁적임을 잘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 오더량은 새로운 공급업체를 시험하기 위한 오더이기 때문에 물량이 적은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시험 오더를 작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다음에 올 큰 오더를 받기 위한 전초단계의 오더라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을 방문하기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시기는 추수감사절과 연말연시 기간이다. 동 기간에는 직원들은 장기 휴가에 업체들은 대부분 장기 휴무에 들어간다.

나. 상담 유의사항

상담 및 문화적 유의사항

1) 복장

미국에서는 한국에 비해 형식을 중시하는 면이 덜한 편이다. 비즈니스에 임하면서도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연령이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손님을 접대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사무실에서도 캐주얼 복장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직종과 장소에 따라 정장을 갖춰 입기도 한다. 공식적으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미팅이나 상담과 같은 자리에는 정장을 입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녁을 초대할 경우에도 최소한 캐주얼 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초대를 받을 경우 초대장에 명기된 복장을 하거나 만일 복장에 대한 언급이 없을 경우 필히 사전에 복장에 대해서 문의해서 결례가 되지 않도록 복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비즈니스 미팅 시에는 반드시 정장을 갖추어야 한다. 복장은 검정, 회색이나 푸른색 정장이 무난하며, 여기에 흰색 와이셔츠 그리고 푸른색, 또는 붉은색 계통의 넥타이가 많이 애용된다. 그러나 금요일 경우, 바이어 회사에서 금요일은 캐주얼 복장을 회사 규정으로 정하는 경우도 있어 바이어가 캐주얼 차림을 하고 미팅에 나올 경우도 있는데 이를 예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은 가정집 안에서도 신발을 신기 때문에 구두나 신발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에티켓 전문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55%는 어느 사람이 입은 복장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한다. 첫인상이 오래 기억되는 만큼 처음 만나는 경우 매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여름철에 더운 날씨라고 신체가 많이 노출되는 의상은 피하는 것이 좋고, 벨트도 정장과 구두와 매칭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캐주얼 정장의 경우 단정한 면바지에 목에 카라가 있는 셔츠를 입는 것이 보편적이다. 또한, 머리 손질도 매우 중요한 복장의 하나이므로 사전에 세발과 이발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이발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ㅇ 미국 복장 예절
- http://content.wisestep.com/how-to-dress-for-a-business-meeting-best-tips/

2) 인사

인사를 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예의에 맞다. 특히 악수를 하거나 대화를 할 경우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고 웃는 것이 중요하다. 악수할 때 손잡는 강도는 너무 세거나, 처지지 않는 정도로 하고 가능한 한 서로 이름을 말할 정도의 시간 동안 하는 것이 좋다. 악수를 건성으로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예의를 갖추어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상대방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못 부르고 있으면 이상하게 느낄 것이기에 다시 물어보는 것이 좋다. 아울러 이름을 기억하기 어려우면 명함을 보고 부르거나 스펠링을 물어봐서 노트해 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르는 것이 좋다. 명함은 소개를 받고 인사를 할 때 교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헤어질 때 교환하는 경우도 많다. 상대방이 보는 위치를 기준으로 글자를 가리지 않고 바르게 보이도록 건넨다. 명함을 지갑에 넣은 후에 바지 뒷주머니에 넣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 아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을 호칭할 경우 처음부터 이름(First name)을 부르는 것은 실례다. Mr. Mrs. Ms. 등이나 직업(Dr. Professor, Reverend 등)을 뜻하는 명칭을 성(姓)과 같이 사용해 호칭하는 것이 공식적이며, 존경의 의미를 담고 있다.

ㅇ 미국인과의 비즈니스 미팅 시 인사 예절
- https://www.workitdaily.com/business-etiquette-correct-greeting/

3) 선물

대체적으로 비즈니스 관계에서 고가의 선물이나 현금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미 있는 작은 선물은 감사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첫 대면에서 작은 선물은 서먹서먹한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바이어의 집에 초대를 받아 갈 경우에는 꽃이나 화분, 과일 바구니. 책 등이 일반적인 선물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상대방에게 선물을 받은 후에는 답례로 카드를 보내는 것이 예의다.

이외에 선물하기 전 종교적인 측면을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방이 크리스마스를 지킨다고 가정하고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좋지 않다.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는 것은 실례가 된다. 선물을 준다고 해도 자신들의 종교적인 믿음과 신념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크리스마스를 지키는지 또는 특수한 종교 절기를 지키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이 좋다. 어느 부서(그룹)에 감사의 의미로 선물을 할 경우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좋다. 선물하는 목적은 모든 사람에게 고마움을 기억하고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다. 또 특정 부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선물을 해야 한다면 특정 인물이 제외됐다는 느낌을 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ㅇ 미국 선물 예절
- http://www.advancedetiquette.com/newsletter/dec04_issue.htm
- https://smallbiztrends.com/2014/10/business-gift-giving-etiquette.html

4) 약속

비즈니스 약속을 잡는 것은 간단한 일인 것 같지만, 리더십 기술을 요하는 것이라고 소기업 전문 잡지는 설명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약속은 근무시간 중에 하는 것이 관습으로 일주일 정도 전에 전화나 이메일로 잡는다. 최근에는 이메일로 상대방이 편한 시간으로 조율해 잡는 것도 일반적이다. 아울러 가능하면 약속 하루 전날 약속에 대한 간단한 리마인더(Reminder)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이 좋다. 약속은 다른 사람의 시간을 나에게 할애를 받는 것이고, 아울러 만일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취소하고 나를 만날 경우는 나와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와 약속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약속시간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 가능하다면 최소 5분 전에 약속장소에 도착해 기다리는 것도 상대방을 예우하는 것으로 상대방은 고마움 마음을 갖게 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면 최소한 약속 하루 전, 또는 사유가 발생하자마자 상대방에게 전화를 하거나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음성사서함에 메시지를 남기고 이메일로 다시 알려주는 성의를 보이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다시 약속을 잡는 리스케줄링(Rescheduling)을 해서 지난번에 나누려고 했던 주제로 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ㅇ 미국 약속 예절

- http://etiquette.about.com/od/Manners/fl/Etiquette-of-Making-and-Keeping-Appointments.htm

5) 식사

개인적인 초대를 받은 경우에는 와인 등의 선물을 들고 가면 되며, 나중에 초대를 해준 상대방에게 감사의 서신을 보내도록 한다. 미국인들은 저녁 식사를 개인적인 관계를 위해 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대부분 비즈니스는 점심식사에 이루어진다. 식사는 일반적으로 초대한 쪽에서 비용을 부담한다.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면서 상대방과 처음 미팅을 할 경우, 식사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야 한다. 식당에서 만나면 우선 가볍게 인사와 악수를 하고 자리에 앉는다. 모든 사람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자리에 앉도록 하고, 자리에 앉으면 냅킨을 무릎 위에 놓는다. 혹시 늦게 도착한 사람이 있을 경우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것이 예의 바른 인사법이다.

음식을 주문할 때 같이 참석한 사람들 중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매우 사려 깊은 행동이다.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런 음식은 제외하는 것이 좋으며 음식점 종업원에게 문의해서 피하도록 한다. 특히 식탁에 놓여있는 다른 사람의 물을 마시지 않고, 빵을 먹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물잔은 항상 오른편에 있는 것이 내 것이고, 빵 접시(빵을 놓는 접시)는 항상 왼편에 있는 것이 자신의 빵 접시이므로 이를 혼동해 옆 사람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고 손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음식점에서 비즈니스 대화를 해야 하기에 비교적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거나 개별 방(Private Room)이 있는 곳으로 예약하며, 차선의 식당도 미리 알려주고 선택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배려로 인식된다. 풀 코스로 점심·저녁 식사가 이루어지면 보통 1시간 30분에서 2시간가량이 소요되는데 중간마다 이야기할 이슈(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상식이나 헤드라인 이슈)들을 미리 준비해 대화를 이끌어 가는 것도 중요한 식사 예절이다.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며 식사하는 것이 예의이며 웨이터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재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미국에는 한국인들에게는 생소한 팁 문화가 발달해 있는데, 웨이터에게 팁을 너무 적게 줄 경우 초대를 받은 상대방이 무안해 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일반적으로 고급 레스토랑의 경우 점심은 18~20%, 저녁은 20~25%의 팁을 주고 있다. 또한, 웨이터는 자기에게 할당된 테이블에 불편함은 없는지 수시로 체크하므로 비즈니스 미팅으로 대화를 나누는 중이라도 가볍게 응대해 주는 것이 좋다. 휴대폰은 끄거나 진동으로 전환한다. 남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전화를 받는 것은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 반드시 받아야 할 전화가 있을 때에는 양해(Excuse me)를 구하고 자리를 잠깐 피해서 받는 게 좋다. 소금, 후추 등 필요한 것이 있더라도 남의 그릇 위로 팔을 뻗는 것은 금물이므로 근처 사람에게 “Would you please pass me the salt/pepper?”라고 정중하게 요청해야 한다. 남의 음식에 손을 대거나 내 음식을 남의 그릇에 옮기지 말아야 한다.

ㅇ 미국 식사 예절

- http://whatscookingamerica.net/Menu/DiningEtiquetteGuide.htm,
- http://blog.oncallinternational.com/13-dining-etiquette-tips-next-business-meal/

6) 상담

미국은 다인종 다종교 국가이므로, 사람의 피부색, 말투, 사회적 신분, 종교, 정치성향 등에 기준해서 비판하고 차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특정 종교, 소수민족, 인종, 여성 등에 대한 차별적 발언은 비록 농담이라 할지라도 절대 금물이다. 특히, 여성의 외모와 나이 결혼 여부 등에 대한 언급은 절대로 먼저 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은 개인적인 친분이 쌓이기 전에는 초면부터 나이를 묻지 않는 것이 관례다. 뉴욕, LA,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는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들 각 인종들의 문화와 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이상한 손짓이나 몸짓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 최근에 LGBT(성 소수자로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를 말함)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런 사회적인 위치(Social Status)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일 해당 주제에 대해 대화할 경우에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인종적, 사회적, 종교적 편견적인 언급을 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대화 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떠한 차별적인 발언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ㅇ 미국 주별 인종별 성별, 연령별 인구분포도

- http://www.infoplease.com/ipa/A0762156.html
- https://en.wikipedia.org/wiki/Social_class_in_the_United_States

국가정보(참고정보-비즈니스 에티켓)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 현지 진출 성공사례

가. 성공사례

1) 친환경 인증으로 콧대 높은 미국 유기농 시장 진출 성공

야채 및 과일 세정제를 전문으로 생산하고 있는 A사는 최첨단 특허기술로 기존 화학 세제 성분이 첨가되지 않은 음이온 세정제를 출시, 사용 시 거품이 없고 인체에 안전한 제품으로 잔류 농약 등 각종 오염 물질과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균을 세척하는 세정제로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미국 내 유기농 및 친환경 시장 성장세 증가를 보고 기회를 포착해 2009년부터 본격적인 판로 개척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으며, 진출에 앞서 체계적인 준비로 미국 시장 진출을 시작했으며 우선 KOTRA 지사화 사업을 통해 2009년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 진출, 2010년에는 미국 지사 설립을 완료했다. KOTRA 미국 뉴욕 무역관과 로스앤젤레스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 서비스를 통해 어떤 방식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할지, 어떻게 개척할지 등의 구체적인 진출 방향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판로 개척, 현지법인 설립, 체계적인 지출 계획 등을 설립하는 등 초기진입에 필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제품의 특성상 유기농 및 친환경 주류시장 입점이 절실함을 깨닫고 틈새시장 공략을 계획해 지속적인 접촉으로 바이어와 미팅을 성사시켜 주요 유기농 및 친환경 마트인 Whole Foods Market 입점 추진 본격화에 성공, 로스앤젤레스 무역관과 협력해 정식 벤더로 등록했다. 바이어와의 꾸준한 연락을 통해 2013년에 Whole Foods Market 담당 바이어와의 미팅에서 제품 프레젠테이션과 질의·응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미국 내 42개 매장 입점에 성공했다. A사는 유기농 전문 식품점인 Whole Foods Market에 입점하기에 앞서 Whole Foods 매장 내에서 색상별로 제품의 성능, 안전성, 환경 유해성 등을 평가하는 'Green Seal' 인증 테스트를 거쳐 가장 높은 단계인 'Green Mark'를 획득하는 데 성공해 품질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데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전문 식품 라벨링 대행사를 통해 현지 시장 기준과 규제를 준수하는 라벨링을 제작해 제품에 부착, 관련 시행착오 및 통관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위험들을 최소화한 것이 주요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2) 현지 경쟁사들과의 차별화로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

프랜차이즈 빵집 A사는 2002년 로스앤젤레스에 첫 현지법인을 설립해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2005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첫 매장을 오픈해 미국 내 현재 3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인근 한인 교포사회 중심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국내브랜드 콘셉트를 그대로 가져와 카페형 매장에서 냉동생지를 굽는 형식의 bake-off 시스템으로 판매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져오는 냉동생지를 매장에서 직접 구워 고소한 냄새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의 후각을 자극하고 수시로 갓 구운 신선한 빵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성공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주요 성공 요인은 현지의 다른 베이커리들과의 차별화로 다양한 제품, 고객의 편의를 배려한 카페식 매장 운영,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꼽을 수 있다. 현지의 기존 베이커리들은 매장에서 직접 빵을 굽지 않고 공장에서 구워진 빵을 아침 일찍 배달해오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매장에서 판매하는 제품 종류도 100여 가지뿐이다. 하지만 A사의 경우 300여 종이 넘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이 폭이 넓은 것이 특징이다. 고구마 등 미국의 베이커리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없는 한국식 식재료를 사용해 차별화된 제품과 맛으로 고객들을 인기를 얻고 있다.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디저트들은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여성 고객들을 사로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A사의 매장에서는 고객들이 직접 원하는 페이스트리를 선택하고 고르는 것이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현지의 경쟁사들은 손님이 원하는 제품을 점원이 진열대에서 꺼내주는 방식이 대부분임에 비해 셀프서비스 방식을 채택해 손님들이 직접 고르고 담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커피와 주스 등의 음료도 제공하고 있어 매장을 들려 제품을 구매하고 가는 손님도 많다. 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커피와 함께 디저트를 즐기러 오는 손님들도 꾸준하다. 카페 형식의 매장은 편안한 분위기로 커피와 함께 직접 고른 페이스트리를 즐길 수 있어 편의성으로,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쾌적한 환경은 분위기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한국에서 다년간의 경험을 갖춘 본사 인력과 현지 사정과 문화에 정통한 현지 인력의 조화는 또 하나의 성공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진출 초창기에는 주부 사원 채용을 통해 주부 특유의 친화력으로 매장을 찾는 고객들을 대할 때 친절함으로 어필했다. 또한, 40~50대 여성들의 입소문 효과로 교포 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 이민자들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발판 마련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 탄탄한 현지 로드맵 구성으로 북미 시장 수출의 물꼬를 트다

자동차 부품 가공 및 제조업체 A사는 북미 시장 진출을 위해 KOTRA 시카고 무역관에 월드챔프 사업을 신청하였다. 월드챔프 사업이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을 선발하여 1:1 해외마케팅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기업으로 육성하는 수출 지원 사업이다. 성공적인 월드챔프 사업운영 및 성과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초기 로드맵 수립인데, A사를 담당했던 KOTRA 시카고 무역관은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마케팅 작업 및 실질적 딜러 발굴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본사 전문위원의 국내 업체 SWOT 진단과 시카고 무역관의 초기 사전조사를 토대로 A사의 북미 진출을 계획했다.

월드챔프 육성 대상 기업 A사-KOTRA 본사-무역관은 수차례 걸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컨설턴트 고용을 통한 잠재 딜러 발굴, 발굴된 딜러 방문 순회 상담회, 그리고 유망 딜러 방한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 이후 목표를 점점 좁혀나가는 역삼각형 형태의

마케팅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A사는 월드챔프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캐나다의 딜러십 D사 1개사와 미국의 딜러십 C사와 G사 2개사, 총 3개의 딜러가 A사와 딜러십 계약을 맺고자 제안했다. 이후 북미에 소재한 캐나다 딜러와 첫 딜러십 계약을 성사되고 첫 제품 선적을 완료하게 되었다. 미국 동부에 소재한 C사에도 제품을 선적하여 총 $1 백만 달러가량의 신규 수출을 달성하였다.

A사-KOTRA 본사-시카고 무역관에 이르는 유기적 소통, 신속한 의사 개진을 통해 로드맵의 세부사항을 적시에 수행, 수정해 나갔던 작업들이 A사의 미국 시장 진출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4) 지사화 사업을 통한 시장 개척

건설 기자재 업체인 D사는 달라스 무역관의 지사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몇 해에 걸쳐서 진행하며, 미국의 시장 조사 및 잠재 바이어 발굴을 해왔다. D사의 타깃 시장은 워낙 보수적인 건설 장비 시장이라 처음은 어려운 듯 보였으며, 단기간 내에 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해외영업팀 담당 이사의 적극적이면서도 바이어에게 부담 주지 않는 적절한 대처와 무역관 담당자를 통한 꾸준한 유선 연락 및 지속적인 접촉이 끝내 수출을 이루게 되었다. D사는 라스베가스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최대 규모의 건설장비 전시회를 2015년부터 참가해왔다. 너무나 큰 전시회이기에 글로벌 기업들의 큰 부스와는 차이가 나는 게 당연했다. 그러나 특수 품목으로 건설장비 집게를 제조하는 D사의 제품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고, 2015년에는 전시회장에서 관심을 보인 엔드유저에게 현장 계약 판매를 하였고, 2017년 전시회에서 제조 및 유통을 하는 R사와의 만남을 시작으로 2018년에 본격적인 첫 구매 오더를 받아 수출을 이루게 되었다. R사와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무역관을 통해 전혀 문제없이 진행이 되었고, 바이어사의 추천으로 큰 전시회보다는 미국 내 각 주에서 있는 소규모 전시회를 함께 참가하며 잠재 바이어 엔드유저들을 발굴 중에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물류 창고를 개설하여 좀 더 효과적으로 빠르게 유통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에 있다.

5) K-뷰티 트렌드에 힘입어 미국 시장 진출

A사의 뷰티 브랜드는 중국과 영국 시장 진출에 성공을 거두면서 미국으로 해외 유통망 확대 추진했다. KOTRA 뉴욕 무역관 지사화 사업 기업으로 가입해 본격적인 유통망 개척 시작했는데 KOTRA 뉴욕 무역관은 A사와 현지 디스트리뷰터 및 바이어 만남을 주선했으며, 뷰티 관련 전시회 정보 제공, 마케팅 전략 수립을 도왔다. 2017년 미국 시장 내 제품 홍보를 위해 서브스크립션 뷰티박스인 입시(Ipsy)를 통해 1년 가까이 BRTC와 퓨어힐스 제품을 공급, 회원들에게 꾸준히 제품과 브랜드를 노출했으며, 이를 통해 일반 소비자뿐 아니라 바이어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동시에 미국 바이어가 참관하는 뷰티 관련 전시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제품 홍보 및 유통망 개척에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A사는 미국 뷰티 디스트리뷰터 '심포니뷰티'와 협업을 통해 벌링턴, TJ맥스 등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진출했다. 2019년 초 미국 대형 드럭스토어에 브랜드 입점을 앞두고 있다. A사의 이번 드럭스토어 진출은 K-뷰티 섹션에 특정 제품을 납품하는 형태가 아니라 매장 뷰티 섹션에 브랜드로 입점하는 것이라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현지 진출 성공사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4. 출입국 안내

가. 비자

종류 및 발급절차

1) 비자 면제 프로그램

ㅇ 개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90일 이내 기간 동안 미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2008년 11월 17일부터 원칙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 입국 가능하다. 그러나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 취득 필요하다.

ㅇ 적용 대상 및 조건
- 사업, 오락, 혹은 환승 목적으로 입국
- 90일 이내 단기 체류
-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전자여권(e-passport)을 소지한 사람
- 미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ESTA: Electronic System of Travel Authorization)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
- 과거에 미국 입국 비자 발급이 거절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적이 없는 사람
- 미국 국경 인접 지역(멕시코, 캐나다, 버뮤다, 캐리비안)을 제외한 미국 외 타국행(귀국 포함) 항공권을 제시한 사람

ㅇ 이용 절차
-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다음, 미국 정부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이트에 접속, 여행 허가 확인

ㅇ 사이트 주소: http://www.cbp.gov/travel/international-visitors/esta
- 이름,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 번호 등 17가지 필수 정보와 주소 등 선택 항목 네 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미국 입국 가능 여부 확인
- '입국' 또는 '불허', 그리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대기' 등 3가지로 판정

ㅇ 유의사항
- 전자여행 허가제도 시행 관련, '대기' 판정이 나오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최종 답변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출국하고자 하는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72시간 이전에 전자여행 허가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
- 비자 면제프로그램을 이용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사람은 미국 체류 도중 학생, 취업 등으로 신분을 바꾸거나, 영주권 신청은 불가능
- 원칙상 관광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 유학, 취업 등으로 체류 목적을 변경시키는 것은 한국에 돌아가서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함
- 비자 면제프로그램 여행자들의 여권 요구사항: 2006년 10월 26일 혹은 그 이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터 페이지의 정보를 가진 내장된 칩이 요구됨
- 2005년 10월 26일에서 2006년 10월 25일 사이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데이터 페이지에서 인쇄된 디지털 사진이 요구됨
- 2005년 10월 25일 이전에 기계 판독 가능 여권이 발급 또는 갱신/연장된 경우, 요구되는 것은 별도 없음
- 비자 면제 프로그램 하에서 비자 없이 여행할 경우, 여권이 적어도 90일 동안 유효해야 함
- 여권이 90일 동안 유효하지 않다면, 여권 만료일까지만 미국에 체류할 수 있음

관련 상세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및 참조할 수 있다.

ㅇ 외교부 비자 면제프로그램: https://www.0404.go.kr/consulate/esta.jsp

2) 비자

ㅇ 취업 비자

취업 및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이에 적합한 비자를 사전에 취득해야 한다. 비 이민 취업비자인 일시적 숙련직/비숙련직/전문직 취업자(H), 회사 내 지사 전근자(L), 비범한 재능소유자(O) 혹은 직업 연예인, 예술인, 체육인(P), 국제적 문화교류 행사 참가자(Q) 또는 종교인(R) 비자는 미국에 있는 소속 회사나 단체가 취업 청원서(Petition)를 먼저 승인받아야 한다. 비자발급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발급하고 있다.

ㅇ 단기 취업 비자 - 전문직 취업 비자(H-1B)

4년제 대학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의 소지자들에게 부여되는 전문직 종사자 비자로 연간 65,000개가 책정돼 있다. 미국 내 대학원 졸업 이상의 학력자에게 20,000개가 추가 할당돼 1년에 총 85,000명에게 줄 수 있도록 이민법에 명시된 비자다. 신청조건은 신청자(학사 학위 또는 동등 학력 소지자)가 스폰서 고용주 업체가 필요로 하는 분야가 전문직종에 해당해야만 한다. 또한,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재정능력이 입증돼야 한다. H-1B 비자 접수는 매년 4월 1일에 시작하고, 5일간 접수하는데 2018~2019회계연도에 석사 이상 출신 쿼터에 9만 5,885명, 학사 출신 쿼터에 9만 4,213명이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석사 이상 출신 쿼터 경쟁률은 4.8:1, 학사 출신 쿼터 경쟁률은 2.6:1을 기록했다. 한편 전문직 취업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비자발급 심사 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그 심사가 까다로워졌다.

ㅇ 회사 내 지사 전근자 비자 - 상시 주재원 비자(L1)

미국 지사의 50%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의 본사가 한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미국 지사에 주재원으로 파견해 근무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비자이다. 이 경우 주재원은 한국 본사의 매니저급 이상의 중역이거나(L-1A), 회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자(L-1B)여야 하며, 최근 3년간 최소한 1년은 한국 본사에 근무했어야 한다. 해당 비자는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기간 연장을 통해 최장 7년간 체류할 수 있다. 배우자나 만 21세 미만의 자녀들의 경우 동반 가족 비자인 L-2 비자를 받을 수 있다.

ㅇ 투자 비자 - 상사주재원비자(E1), 투자자 비자(E2)

미국과 적절한 무역 및 운항에 대한 조약이 체결돼 있는 국가의 국민과 그를 동반하는 배우자나 자녀들은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투자비자는 아래의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 미국을 주요 대상 국가로 하는 실질적인 무역 업무를 하기 위해
- 상당량의 자본을 미국에 투자하거나 또는 투자 중에 있는 기업을 직접 확장 또는 운영하기 위해

E-비자 신청자와 그들의 가족은 반드시 그들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사관은 추후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귀하의 인터뷰 날짜를 통보한다. 비 이민신청서류에 e-메일 주소, 전화/핸드폰 번호(한국), 팩스 번호를 포함한 모든 연락처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서 신청한다.

신청자는 e-메일을 매일 확인해서 인터뷰 날짜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미국 대사관은 인터뷰 날짜를 놓친 것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터뷰 날짜에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경우 신청자의 서류는 신청자에게 반환되고 신청자는 다시 비자신청을 해야 한다. 13세 이하의 자녀는 비자 인터뷰 시 대사관에 오지 않아도 되나 가족들의 면접 시 실제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야 한다.

ㅇ 학생비자 - 학생비자(F1-M1)

미국에서 학업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비자이며, 모든 신청자는 비자신청 전 희망하는 학교나 프로그램으로부터 입학허가(I-20)를 받아야 한다. F1비자는 가장 일반적인 학생비자로 단과/종합 대학, 사립고와 같은 허가된 학교나 인가받은 영어프로그램 등을 다

니기 위한 경우 필요하며 학업이 주당 18시간 이상 이상의 수업을 듣는 경우도 포함된다. M1비자는 미국 교육기관에서 직업 관련 연구나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필요하다.

- 교환 방문 비자 - J비자

문화 교류 또는 교육의 목적으로 미국에 방문하기 위해 필요한 비이민 비자로, 미국 국무성이 인정한 공식기관의 스폰서십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무부 인정 기관은 DS-2019 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며, 이 서류를 근거로 J-1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J-1 비자는 교환학생, 오페어(Au Pair), 인턴십을 포함해 총 14가지이며, 방문 목적에 따라 미국 체류기간도 상이하다.

나. 휴대품 통관

휴대품 면세

만약 과세대상 물품이 있으면, 세관신고서에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이를 보고 세관 직원이 신고서에 세액을 계산해 적고 스탬프를 찍어서 돌려주면, 세관 뒤쪽에 있는 납세 카운터에 가서 세금을 납부한다. 과세대상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발견되면 압류당하거나 벌금을 물게 된다.

면세 반입 한도는 거주 여부에 따라 다르다. 비거주자의 경우 신변용품 이외에, 200개비 이하의 담배, 술 1병, 그 외 선물로 총액 100달러 이내 물품을 면세한다. 거주자인 경우 캐리비안 지역과 미국령 이외의 해외 국가에 48시간 이상 체류했을 시 800달러 이하 면세, 800달러 이상 1,800달러 이하 3% 관세 부과, 소지한 금액이 1만 달러 이상인 경우 세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반입금지품목은 무기류, 마약, 허가 없이 반입되는 모든 고기류, 동물, 과일, 야채, 나무 등의 식물류의 지참을 금하고 있으며, 짚 같은 것도 식물로 간주되므로 포장에 주의해야 한다. 단, 어포류, 멸치, 오징어 등과 김, 미역, 인삼(말린 것), 고추장, 된장, 김치, 젓갈류는 신고만 하면 통관이 가능하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입국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5. 유관기관

가. 대사관 및 한국기관

ㅇ 주미 대한민국대사관

전화번호	202-939-5600
주소	2450 Massachusetts Avenue N.W. Washington, D.C. 20008
홈페이지	http://overseas.mofa.go.kr/us-ko/index.do

ㅇ 미한국상공회의소

전화번호	212-644-0140
주소	460 Park avenue, #410, New York, NY 10022
홈페이지	http://kocham.org/

ㅇ 한국무역보험공사(뉴욕지사)

전화번호	212-355-2505
주소	460 Park Ave. 21st Floor NEW YORK, NY 10022, U.S.A.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

ㅇ 한국무역보험공사(LA지사)

전화번호	213-622-4314, 4315
주소	915 Wilshire Blvd. Suite 1640 Los Angeles, CA 90017 USA
홈페이지	https://www.ksure.or.kr

나. 현지정부 및 언론기관

ㅇ 백악관

전화번호	202-456-1414
주소	160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500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

ㅇ 상무부

전화번호	202-482-2000
주소	1401 Constitution Ave., NW, Washington, DC 20230
홈페이지	https://www.commerce.gov

ㅇ 법무부

전화번호	202-514-2000
주소	950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530
홈페이지	https://www.justice.gov

ㅇ 국무부

전화번호	202-647-4000
주소	2201 C St., NW, Washington, DC 20520
홈페이지	https://www.defense.gov

ㅇ 국방부

전화번호	703-571-3343
주소	1400 Defense Pentagon, Washington, DC 20301-1400
홈페이지	https://www.defense.gov

ㅇ 전체 미국 정부 안내

전화번호	844-872-4681
홈페이지	https://www.usa.gov/federal-agencies/a

ㅇ 뉴욕 타임즈

전화번호	844-698-6397
주소	620 Eighth Avenue, New York, NY 10018
홈페이지	https://www.nytimes.com/

ㅇ 월스트리트저널

전화번호	800-568-7625

주소	1211 6th Ave, New York, NY 10036
홈페이지	http://wsj.com

∘ 워싱톤포스트

전화번호	800-477-4679
주소	500 Pearl St, New York, NY 10007
홈페이지	https://www.cnbc.com/

∘ CNN

전화번호	404-827-1500
주소	1 CNN Center, Atlanta, Georgia 30303
홈페이지	https://www.cnn.com/

∘ CNBC

전화번호	877-280-4548
주소	1 CNBC Plaza Englewood Cliffs, NJ
홈페이지	https://www.cnbc.com/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유관기관)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6. 물가정보

가. 물가정보 표

1 USD : 1USD

No	구분	품목	단위	금액(USD)
1	식품	햄버거(맥도날드 빅맥)	단품	3.99
2	식품	비빔밥	1인분	17.95
3	식품	김치찌개백반	1인분	16.95
4	식품	신라면	1봉지	1.25
5	음료	커피(스타벅스-아메리카노)	1잔	2.65
6	음료	생수 (마트, 최저가)	500ml	1.25
7	음료	코카콜라(마트, 최저가)	500ml	1.99
8	의료	항생제	5정	10
9	교통	시내버스요금	기본요금	2.75
10	교통	지하철요금	기본요금	2.75
11	교통	택시요금	기본요금	2.5
12	서비스	헤어컷 (시내중심가, 외국인 애용)	1회	45
13	서비스	무연휘발유 1L	1L	0.83
14	서비스	전기요금	1Kwh	0.21
15	서비스	영화입장권	일반	9
16	여가	담배 (말보로라이트)	1갑	14
17	여가	소주 (한식당내 판매최저가)	360ml	9
18	임금	최저임금	법정최저	15
19	학비	국제/사립학교(고등학교 3학년) 수업료	연간	25000
20	금리	중앙은행 기준금리	%	2.25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물가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미국의 화폐 단위는 미 달러이며 지폐는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 50달러, 100달러 액권이 있다. 주화는 페니(1센트), 니켈(5센트), 다임(10센트), 쿼터(25센트)가 사용된다. 50달러와 100달러와 같은 고액 지폐는 소규모 상점에서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환전할 경우 20달러 액권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공항, 은행 등에서 가능하며, 유명 관광지의 경우에는 별도로 환전소가 마련되어 있는 곳들도 있다. 환전 시 대부분 여권을 제출해야 하므로, 관광지에서 외출 중 환전 계획이 있다면 여권 혹은 여권 복사본 등을 소지하는 것이 좋다.
현지 환전은 각종 수수료가 부과되고, 적용되는 환율이 비싼 편이라 되도록이면 출발전 한국에서 충분한 금액을 환전하거나 국제 현금 직불카드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신용카드 이용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매우 일반화돼 대부분의 상점에서 5달러 미만의 소액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만약 신용카드를 받지 않을경우 상점 입구, 계산대 앞 또는 메뉴판 등에 ‘Cash Only’라는 표시가 있다. 미국에서 불편함 없이 신용카드 사용을 하려면 출국 전 한국에서 소지한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 해외사용 신고를 해두는 편이 좋다. 거의 모든 택시에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며 최종 요금에 팁을 추가로 입력하고 결제할 수 있다.

나. 교통

교통상황

미국은 뉴욕시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중교통이 발달돼 있지 않다. 따라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도심 지역이 아니고 이동시 도움 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미리 렌트카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공항 주변이나 공항에 렌터카가 위치해 있으므로 비행편과 연계해 알아보면 용이하다. 또한 미국의 속도/거리 단위는 마일(1mile=약1.6km)을 사용하는 점과 STOP 표지판 등의 기본적인 미국교통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내 주요 렌트카 회사는 아래와 같다.

- Enterprise Rent-A-Car: www.enterprise.com
- Hertz Rent A Car: www.hertz.com
- Zipcar: www.zipcar.com
- Dollar Rent A Car: www.dollar.com
- Avis Car Rental: www.avis.com
- Budget: www.budget.com
- Alamo Rent A Car: www.alamo.com

버스

버스 시스템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뉴욕시를 기준으로 소개한다.

맨하튼 버스는 북상하는 Uptown, 남하하는 Downtown, 동서로 달리는 Crosstown의 셋으로 구분한다. 남북으로 달리는 버스는 2~3블록, 동서로 달리는 버스는 거의 1블록마다 버스정류장이 있다. 요금은 지하철과 동일하며 지하철 패스(Metro Card)로 요금을 지불하며 현금은 동전 사용만 가능하며 거스름돈을 돌려주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맨하튼의 MTA와 별개로 뉴저지와 맨하튼 지역을 연결하는 NJ Transit을 통해 인근 위성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많다. 버스와 지하철을 번갈아 탈 경우 2시간내에 환승하면 무료로 탈 수 있다.

택시

택시는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인 뉴욕시를 기준으로 소개한다.

뉴욕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노란색 택시는 Yellow Cab(NYC Cab)이라고 한다. 시간, 거리 병산제로 기본 요금은 3.30달러이고, 0.2마일당 0.5달러, 정차시 혹은 12마일 이하 속도로 달릴 경우 60초당 0.5달러가 추가된다. 주중 퇴근시간(16:00~20:00)에 1달러 할증이 있고, 심야시간(20:00~6:00)에는 0.5달러 할증이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최종가격의 10%의 팁을 더해 지불하는 것이 관례이다. 최근의 맨하탄의 택시들은 거의 대부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택시 요금은 물론 팁까지도 결제 가능하다. 최근에는 옐로우캡 대신 우버, 리프트, 비아 등 차량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 통신

핸드폰

미국 출장 혹은 여행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로밍 : 국내통신사 해외 로밍 제도 이용.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어 1주일 이내 여행자에게 추천하는 방법
- 국내에서 미리 유심카드 구입: 1주일 이상 장기 체류 시 적합하며, 현지에서 자신의 단말기가 미국에서 사용한지를 미리 알아볼 수 있음
- 미국에 도착하여 유심카드 구입: 한달 이상 머무르는 장기 체류시 적합. 현지 통신사를 직접 찾아가 영어로 개통해야 함

미국 내에서 유심카드를 구입하며 휴대전화를 사용할 계획이라며, 현재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가 미국의 주요 통신사(T-Mobile, AT&T, Verizon, Sprint)의 유심카드로 이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매장을 방문해 선불폰(pre-paid) 플랜을 비교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선택해 유심카드와 플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각 통신사별 선불폰 플랜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T-Mobile: https://prepaid.t-mobile.com/home
- AT&T: https://www.att.com/prepaid/plans.html

만약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싶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통신사의 대리점에 방문해야 한다. 휴대폰은 주로 기기값은 2년간 분할하는 방법으로 구입할 수 있으며, 만약 2년이 되기 전에 통신사를 옮기거나 가입을 해지할 경우 나머지 기기값을 모두 지불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의 통신사의 요금제는 통화시간에 데이터를 제외한 발신통화와 수신 통화 시간을 포함하고 있고, 문자건수에도 발신건수와 수신건수를 모두 포함한다. 스마트폰을 구매할 경우 일반적으로 데이터 요금제를 필수적으로 구입해야 하며 플랜에 따라 여러명이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면 하나의 데이터 요금제를 공유해 좀 더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휴대폰 신규 가입 시 핸드폰 등록 비용인 30달러 정도의 Activation Fee를 지불해야 하며 사회보장번호(SSN)를 필요로 한다. 만약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미국에 거주하는 친인척의 계좌에 패밀리 플랜으로 가입하거나 통신사마다 상이하나 수백달러의 보증금(Deposit)을

내야 한다. 만약 사회보장번호가 있으나 신용점수(credit score)가 낮거나 기록 자체가 없을 경우에도 통신사에 따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집전화 신청을 하려면 지역 전화회사에 연락해야 한다. 지역 전화회사는 지역마다 상이한데 AT&T, Verizon 등에서도 집전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화 설치에는 설치비가 부과되며 지역과 도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일에서 7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집전화 설치 시에도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하며 사회보장번호가 없다면 보증금을 지불해야 한다.

인터넷(와이파이)

인터넷은 지역 인터넷 서비스업체에 연락하여 손쉽게 연결할 수 있다. 한국처럼 서비스가 빠르지는 않으므로, 전화로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한 후 설치까지 넉넉 잡아 일주일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인터넷은 자신이 소유한 모뎀을 이용해 연결하거나 인터넷 회사로부터 모뎀을 렌트할 수 있다. 대신 매달 일정금액의 렌트비를 지불해야 하며, 인터넷 계약을 해지할 때 모뎀을 직접 돌려줘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다.
최근 통신사들이 인터넷, TV케이블, 집전화 혹은 인터넷, TV케이블을 함께 신청하는 패키지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자신에게 맞는 플랜을 신청하면 된다.
인터넷 회사는 미국 내 지역마다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서비스하는 인터넷 업체를 찾아 연락을 취하면 된다.

라. 관광명소

ㅇ 페롯 박물관(Perot Museum)

도시명	2201 N Field St, Dallas, TX 75201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5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자연사 박물관, 건강과학 박물관, 패밀리 어린이 박물관을 동시에 관람할 수 있다. 5개 층에 걸쳐 규모 55,000㎡의 전시공간에 지구 지표면부터 우주 천체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비고	전화: 1-214-425-5555 홈페이지: www.perotmuseum.org

ㅇ 그리피스 천문대(Griffith Observatory)

도시명	LA
주소	2800 E.Observatory Rd., Los Angeles, CA 90027
운영시간	화~금: 오후 12시~오후 10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10시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할리우드 산자락의 그리피스 공원내에 위치. 천무내의 전체망원경과 레이저쇼가 유명함. 영화 '이유없는 반항'의 배경으로 유명하며 다양한 할리우드 영화 및 TV 시리즈 촬영장소로도 유명하다. 고지대에 있어 로스앤젤레스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한다.
비고	전화: 1-213-473-0800 홈페이지: www.griffithobservatory.org

ㅇ 게티센터(Getty Center)

도시명	LA
주소	1200 Getty Center Dr., Los Angeles, CA 90049
운영시간	화~금, 일: 오전10시~오후 5:30 토: 오전 10시~오후 9시
휴무일	월요일
명소소개	석유재벌인 J. Paul Getty가 남긴 예술품으로 이루어진 박물관으로 세련된 건축양식과 LA가 내려다보이는 전경으로 유명함.
비고	전화: 1-310-440-7300 홈페이지: www.getty.edu

ㅇ 센트럴파크(Central Park)

도시명	뉴욕시
주소	맨하탄 59th~110th 스트릿, 5th 애비뉴~센트럴 파크 웨스트
운영시간	오전 6시~오전 1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뉴욕의 심장이라 불리는 센트럴 파크는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많이 등장해 해마다 2,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다.
비고	전화: 1-212-310-6600 홈페이지: www.centralparknyc.org/

ㅇ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Grand Central Terminal)

도시명	뉴욕시
주소	89 E 42nd St, New York, NY 10017
운영시간	오전 5시30분~오전 2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1871년 완공된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은 증기기관차 역으로 운영되었으나 환경 보호로 증기기관차 운영이 중단되면서, 1913년 현재의 모습으로 재탄생. 바로크 성당과 같이 화려한 모습과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그려놓은 아치형 천장을 보기 위해 많은 이들이 찾는 명소가 됐다.
비고	전화: 1-212-340-2583 홈페이지: www.grandcentralterminal.com

ㅇ 뉴욕공립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

도시명	뉴욕시
주소	476 Fifth Avenue (42nd Street Entrance)

운영시간	일: 오전 10시~오후 5시 월 :오전 8시~오후 8시 화, 수: 오전 8시~오후 9시 목: 오전 8시~오후 8시 금: 오전 8시~오후 6시 토: 오전 10시~오후 6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뉴욕공립도서관(New York Public Library)은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로 건축학적으로 아름다움뿐 아니라 희귀본을 포함한 수많은 도서를 소장하고 있다. 2개의 대리석 사자상이 이곳을 상징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 대리석 계단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한다. 맞은편에 위치한 브라이언트 파크는 도심 속의 휴식처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ㅇ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

도시명	뉴욕시
주소	맨하탄 42nd~47th 스트릿, 브로드웨이~7th 애비뉴
운영시간	24시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브로드웨이 극장가와 화려한 네온사인, 거리의 공연으로 가득한 타임스퀘어는 뉴욕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뉴욕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이기도 하다.
비고	홈페이지: www.timessquarenyc.org

ㅇ 식스 플로어 박물관(Sixth Floor Museum)

도시명	달라스
주소	411 Elm St, Dallas, TX 75202
운영시간	월: 오후 12시~오후 6시 화~일: 오전 10시~오후 6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1963년 11월 22일 케네디 대통령은 달라스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던 중 저격 당했으며, 식스 플로어 박물관은 오스왈드가 케네디를 저격했던 실제 장소로 텍사스 교과서 창고로 쓰이던 건물이었으나 현재 케네디 대통령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꾸며져 있다.
비고	전화: 1-214-747-6660 홈페이지: www.jfk.org

ㅇ 리유니언 타워(Reunion Tower)

도시명	달라스
주소	300 Reunion Blvd E, Dallas, TX 75207
운영시간	일~목: 오전 10시 30분~오후 9시 금~토: 오전 10시 30분~오후 10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달라스 시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높이 171m 전망대. 초고속 엘레베이터를 타고 55층 전망대에 오르면 달라스의 스카이라인을 감상할 수 있다.
비고	전화: 1-214-720-7040 홈페이지: www.reuniontower.com

ㅇ 이스턴 마켓(Eastern Market)

도시명	디트로이트
주소	1445 Adelaide, Detroit, MI 48207
운영시간	토 : 오전 7시~오후 4시(연중) 화 : 오전 9시~오후 3시(6월~9월) 일 : 오전 10시 - 오후 4시 (6월 - 9월)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디트로이트에 소재한 파머스 마켓으로 다수의 현지 주민들이 매주 방문하는 이 시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현지 농작물, 축산품, 신선한 허브 및 꽃이 진열되어 있으며 커피와 머핀 또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점도 위치한다.
비고	홈페이지: www.easternmarket.org/

ㅇ 디트로이트 미술관(Detroit Institute of Arts)

도시명	디트로이트
주소	5200 Woodward Ave, Detroit, MI 48202
운영시간	화~목 : 오전 9시~오후 4시 금: 오전 9시~오후 10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5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디트로이트 시내에 소재한 미술관으로, 약 100개의 갤러리에 65,000정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비고	전화: 313-833-7900 홈페이지: www.dia.org/

ㅇ 헨리포드 박물관(The Henry Ford Museum)

도시명	디트로이트
주소	20900 Oakwood Blvd, Dearborn, MI 48124
운영시간	오전 9시 30분~오후 5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미시건주 디어본에 소재한 박물관으로, 각종 엔틱카를 포함하여 John F Kennedy, Abraham Lincoln등 美 전 대통령의 자동차가 전시되어 있다.

비고	전화: 313-982-6001 홈페이지: www.fordpiquetteplant.org

ㅇ 컴퓨터 역사 박물관(Computer History Museum)

도시명	마운틴뷰
주소	1401 N Shoreline Blvd, Mountain View, CA 94043
운영시간	금~월: 오전10시~오후5시
휴무일	화~목
명소소개	1968년에 고든 벨이 역사 수집을 시작하면서 Whirlwined 컴퓨터를 보존하려고 만든 컴퓨터 역사 박물관이다.
비고	전화: 1-650-810-1010 웹사이트: www.computerhistory.org/

ㅇ 인텔 뮤지엄(Intel Museum)

도시명	산타 클라라
주소	2200 Mission College Blvd, Santa Clara, CA 95054
운영시간	월~토: 오전9시~오후6시
휴무일	일요일
명소소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회사이자 마이크로 프로세서 업체인 인텔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비고	전화: 1-408-765-5050 홈페이지: www.intel.com/content/www/us/en/history/museum-visiting-intel.html

ㅇ 시카고 미술관(Art Institute of Chicago)

도시명	시카고
주소	111 S Michigan Ave, Chicago, IL 60603
운영시간	목요일 제외한 월~일: 오전 10시30분~오후 5시 목: 오전10시30분~오후 8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시카고를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13세기부터 현대까지 세계적 수준의 미술품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인상파 작가들의 작품으로 유명하며 그림뿐 아닌 조각과 동양 미술품들도 보관하고 있다. 밀레니엄 공원과 근접해 함께 둘러보기 좋다.
비고	전화: 1-312-443-3600 홈페이지: www.artic.edu

ㅇ 밀레니엄 파크(Millennium Park)

도시명	시카고
주소	201 E Randolph St, Chicago, IL 60602
운영시간	오전 6시~오후 11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시카고의 가장 유명한 장소로 시카고의 녹지 조성을 위한 장기 계획을 통해 만들어진 공원이다. 호수를 따라 남북으로 길게 자리하고 있으며 공원 내에 야외 공연장이 있어 클래식 등을 감상할 수 있다. 공원 중심에는 Cloud Gate라는 거대한 조각이 있다. 이것은 콩처럼 생겼다고 해 The Bean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비고	전화: 1-312-742-1168 홈페이지: www.cityofchicago.org

ㅇ 셰드 수족관(Shedd Aquarium)

도시명	시카고
주소	1200 S Lake Shore Dr, Chicago, IL 60605
운영시간	평일: 오전 9시~ 오후 5시 주말: 오전 9시~ 오후 6시 (계절별, 특별 운영시간에 따라 상이함)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8,000여종의 어족류)이며 90,000갤론의 산호초류를 전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멸종 위기 동물인 벨루가 고래를 전시해 큰 인기를 끌었으며 주말에는 잠수부가 어족류에게 먹이를 주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비고	전화: 1-312-939-2438 홈페이지: www.sheddaquarium.org

ㅇ 윌리스 타워(Willis Tower)

도시명	시카고
주소	233 S Wacker Dr, Chicago, IL 60606
운영시간	3월-9월: 오전 9시~오후 10시 10월-2월: 오전 10시~오후 8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시카고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높은 건물로(110층) 본명은 Sears Tower이었으나 최근 건물주가 바뀌며 이름도 바뀌었다. 사면이 유리로 돼있는 103층의 전망대에서는 시카고의 전경과 미시간 호수를 감상할 수 있다.
비고	전화: 1-312-875-0066 홈페이지: theskydeck.com

ㅇ 디즈니랜드(Disneyland)

도시명	애너하임

주소	1313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운영시간	오전 8시~밤 12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미키마우스를 비롯한 디즈니 고유의 캐릭터를 중심으로 꾸민 놀이공원으로 디즈니랜드와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두 곳의 테마 파크로 이루어져있다.
비고	전화: 1-714-781-4636 홈페이지: www.disneyland.disney.go.com

ㅇ 스미소니안 박물관(Smithonian Museum)

도시명	워싱턴DC
주소	1000 Jefferson Drive, SW Washington, DC
운영시간	박물관 따라 상이하나 대부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운영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총 19군데의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등이 운영되며, 대부분 무료 관람이 가능하다. 유명 박물관으로는 자연사박물관 및 항공우주 박물관이 있다.
비고	전화: 1-202-633-1000 홈페이지: www.si.edu/museums

ㅇ 워싱턴 모뉴먼트(Washington Monument)

도시명	워싱턴DC
주소	2 15th St NW, Washington, DC 20024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10시이나, 현재 공사중으로 2019년 봄까지 전망대 입장 불가
휴무일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워싱턴 기념탑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몰에 있는 탑이다. 총 높이는 170m이며, 워싱턴 DC지역 내에 가장 높은 건물로 전망대에서 워싱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비고	전화: 1-202-426-6841 홈페이지: www.nps.gov/wamo/index.htm

ㅇ 링컨 기념관(Lincoln Memorial)

도시명	워싱턴DC
주소	2 Lincoln Memorial Cir NW, Washington, DC 20037
운영시간	24시간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을 기념하기 위해 지어졌으며, 내셔널 몰에 위치해 있다. 내부에는 링컨 대통령이 앉아있는 상이 있다.
비고	전화: 1-202-426-6841 홈페이지: www.nps.gov/linc/index.htm

ㅇ 유니버설 스튜디오(Universal Studio)

도시명	유니버셜 시티
주소	100 Universal City Plaza, Universal City, CA 91608
운영시간	토~월: 오전 9시~오후7시 화~목: 오전 10시~오후 5시 금: 오전 10시~오후 6시
휴무일	없음
명소소개	유니버설과 파라마운트 등 메이저 영화사들의 세트장과 NBC 방송 세트장, 소도구 및 영화 제작 과정을 놀이공원 형식으로 일반인들에게 공개한다.
비고	전화: 1-800-864-8377 홈페이지: ww.universalstudiohollywood.com

ㅇ 포트워스 스톡야드(Fort Worth Stockyards National Historic District)

도시명	포트워스
주소	2501 Rodeo Plaza, Fort Worth, TX 76164
운영시간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주말: 오전 11시~오후 6시
휴무일	일요일 및 주요 공휴일
명소소개	1800년대 후반부터 목장과 가축거래소가 조성되었던 곳으로 서부 개척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텍사스 대표 관광명소이다.
비고	전화: 1-817- 624-4741 홈페이지: www.fortworthstockyards.org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핑크 핫도그(Pink's Hot Dogs)

도시명	LA
전화번호	323-931-4223
주소	709 N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38

가격	4~10달러
영업시간	오전 9시30분~오전 2시
소개	전통 핫도그 식당으로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

ㅇ 엘파소 인(El Paseo Inn)

도시명	LA
전화번호	213-626-1361
주소	11 Olvera St, Los Angeles CA 90012
가격	10~20달러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7시
소개	전통 멕시코 식당으로 멕시코에 온듯한 소박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ㅇ 누가틴 앳 장조지(Nougatine at Jean-Georges)

도시명	뉴욕시
전화번호	212-299-3900
주소	1 Central Park West, New Yok, NY 10023
가격	31~50달러
영업시간	월~목 : 오전 7시~10시30분, 오후 12시~3시30분, 오후 5시30분~10시30분 금: 오전 7시~10시30분, 오후 12시~3시30분, 오후 5시~11시 토: 오전 8시~10시, 오후 12시~3시30분, 오후 5시~11시 일: 오전 8시~10시30분, 오전 11시30분~오후 3시30분, 오후 5시30분~11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소개	유명 요리사인 장 조지의 고급 식당으로 뉴욕을 찾는 많은 이들이 찾는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ㅇ 피터루거 스테이크 하우스(Peter Luger Steak House)

도시명	뉴욕시
전화번호	718-387-7400
주소	178 Broadway, New York , NY 11211
가격	50달러 이상
영업시간	월~목: 오전 11시45분~오후 9시45분 금~토: 오전 11시45분~오후 10시45분 일: 오후 12시45분~9시45분
휴무일	주요 공휴일
소개	뉴욕시 브루클린에 위치한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로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이다.

비고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

ㅇ 더 팜 투(The Palm Too)

도시명	뉴욕시
전화번호	212-697-5198
주소	840 Second Avenue New York, NY 10017
가격	50달러 이상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시45분~오후 10시30분 토: 오후 5시~10시30분 일: 오후 5~9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소개	스테이크, 해산물 전문 레스토랑으로 다양한 와인 셀렉션이 자랑이다.

ㅇ 업랜드(Upland)

도시명	뉴욕시
전화번호	212-686-1006
주소	345 Park Ave S, New York, NY 10010
가격	50달러 이상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시30분~오후 3시, 오후 5~11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2시45분, 오후 5~11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소개	캘리포니아 스타일 커리너리 철학을 바탕으로 한 콘템퍼러리 식당으로 500종의 와인 리스트가 있다.

ㅇ 리버티 버거(Liberty Burger)

도시명	달라스
전화번호	972-239-2100
주소	5211 Forest Ln, Dallas, TX 75244
가격	11~30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소개	달라스 지역에만 소재하는 로컬 햄버거 체인이다.

ㅇ 더 미팅 하우스(The Meeting House)

도시명	로체스터

주소	301 S Main St, Rochester, MI 48307
가격	50달러
영업시간	오후 4~10시
소개	밝은 분위기의 미국식 음식점으로, 파스타, 스테이크 등의 음식을 판매한다.

ㅇ 루말라티스 피자(LOU MALNATI'S PIZZERIA)

도시명	시카고
전화번호	312-786-1000
주소	805 S State St, Chicago, IL 60605, USA
가격	10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
소개	시카고 딥디쉬 피자를 판매하는 곳이다.

ㅇ 카페시토(CAFECITO)

도시명	시카고
전화번호	312-263-4750
주소	26 E Congress Pkwy #1, Chicago, IL 60605, USA
가격	10달러
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소개	라틴아메리카 음식을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식당이다.

ㅇ 시츄안 파빌리온(Sichuan Pavilion)

도시명	워싱턴DC
전화번호	202-466-7790
주소	1814 K St NW, Washington, DC 20006
가격	15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30분~오후 9시30분
소개	사천식 중국요리 식당이다.

ㅇ 올드 에빗 그릴(Old Ebbitt Grill)

도시명	워싱턴DC

전화번호	202-347-4800
주소	675 15th St NW, Washington, DC 20005
가격	20달러
영업시간	오전 7시30분~오전 2시
소개	1856년 개업한 백악관 근처의 유명 양식 레스토랑이다.

ㅇ 파운딩 파머스(Founding Farmers)

도시명	워싱턴DC
전화번호	202-822-8783
주소	1924 Pennsylvania Ave NW, Washington, DC 20006
가격	25달러
영업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소개	식재료를 농장에서 직접 받아 사용하는 팜투 테이블 식당으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다.

ㅇ 스시타로(Sushi Taro)

도시명	워싱턴DC
전화번호	202-462-8999
주소	1503 17th St NW, Washington, DC 20036
가격	80달러
영업시간	월~금: 오전 11시30분~오전 2시 월-토: 오후 5시 30분~10시
소개	오마카제 및 카이세키를 제공하는 유명 일식 음식점이다.

ㅇ 하드에이트 비비큐(Hard Eight BBQ)

도시명	콥펠
전화번호	972-471-5462
주소	688 Freeport Pkwy, Coppell, TX 75019
가격	11~30달러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소개	텍사스식 바비큐 식당이다.

ㅇ 세도나(Sedona)

도시명	트로이
전화번호	248-422-6167
주소	198 E Big Beaver Rd, Troy, MI 48083
가격	30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 오후 11시
소개	스테이크와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음식점으로, 근방 업체의 비즈니스 미팅 장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ㅇ 코나 그릴-트로이(Kona Grill - Troy)

도시명	트로이
전화번호	248-619-9060
주소	30 E Big Beaver Rd, Troy, MI 48083
가격	25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소개	미국식 일식과 간단한 양식 종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 기업들의 미팅장소로 또한 자주 사용된다.

- 한국식당

ㅇ 조선갈비(Chosungalbee)

도시명	LA
전화번호	323-734-3330
주소	33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가격	25~30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1시
소개	다양한 전통 한식 및 K-BBQ 전문 식당이다.

ㅇ 북창동 두부하우스(BCD Tofu House)

도시명	LA
전화번호	213-382-6677
주소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가격	10~12달러
영업시간	24시간

소개	순두부 전문 식당으로 다양한 종류의 순두부와 밑반찬을 맛볼 수 있다.

ㅇ 아라도(Time Island)

도시명	LA
전화번호	213-387-1199
주소	4001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가격	8~13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소개	한국식 횟집 전문점이다.

ㅇ 프로삼겹살(Pro Samgyubsal)

도시명	노스브룩
전화번호	847-715-9073
주소	3420 Milwaukee Ave Northbrook, IL 60062
가격	25달러
영업시간	오후 4시~오전 12시
소개	삼겹살이 주요 메뉴이며, 소고기 구이 메뉴도 판매한다. 구이와 곁들일 수 있는 간단한 식사가 가능하며 식당 내부가 커서 대규모 모임에 적합하다.

ㅇ 정식당(Jungsik New York)

도시명	뉴욕시
전화번호	212-219-0900
주소	2 Harrison St., New York, NY10013
가격	50달러 이상
영업시간	월~목: 오후 5시30분~10시30분 금~토: 오후 5시~10시30분 일: 오후 5~10시
휴무일	주요 공휴일
소개	임정식 쉐프가 운영하는 한식당으로 미슐렝 스타 레스토랑으로 유명세를 탔다. 고급 한식을 맛볼 수 있다.
비고	저녁 식사만 가능하다.

ㅇ 금강산(KumGangSan)

도시명	뉴욕시

전화번호	718-461-0909
주소	138-28 Norther Blvd., Flushing, NY11354
가격	11~30달러
영업시간	24시간
휴무일	없음
소개	플러싱 한인 타운에 위치한 한식당으로 수십년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한국식 바비큐와 한식 및 일식을 맛볼 수 있다.

ㅇ 허네임이스한(Her Name is Han)

도시명	뉴욕시
전화번호	212-779-9990
주소	17 E 31st St, New York, NY 10016
가격	11~30달러
영업시간	월~토: 오후 12시~2시30분, 오후 5시30분~11시15분 일: 오후 12시~2시30분, 오후 5시~9시15분
휴무일	주요 공휴일
소개	캐주얼 한식 레스토랑으로 국과 밥, 면종류의 음식을 판매하며, 소주와 칵테일 등 주류도 있다.

ㅇ 서울가든(Seoul Garden)

도시명	달라스
전화번호	972-484-6090
주소	2502 Royal Ln, Dallas, TX 75229
가격	10~25달러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소개	주요 메뉴는 불고기, 갈비, 전골 등. 한국인 외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다.

ㅇ 수라(Sura Korean Bistro)

도시명	달라스
전화번호	972-243-5656
주소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가격	10~25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10시

소개	주요 메뉴는 불고기, 찌개류, 갈비 등이 있다. 연회장이 마련되어 있어 개별 행사를 진행하기 좋다.

ㅇ 영동회관(Korea House)

도시명	달라스
전화번호	972-243-0434
주소	2598 Royal Ln, Dallas, TX 75229
가격	10~25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0시
소개	주요 메뉴는 불고기, 돌솥덮밥, 갈비 등. 차분한 분위기의 식당으로 외국인 손님 접대 시 좋다.

ㅇ 우래옥()

도시명	비엔나
전화번호	703-827-7300
주소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가격	15~40달러
영업시간	월- 토: 오전 10시~오후 10시 일: 오전 9시~오후 10시
소개	외국인 손님을 접대하기 좋으며 공항에 근접해 있다.

ㅇ 한국관(Korea Palace)

도시명	스털링 하이츠
전화번호	586-978-0500
주소	34748 Dequindre Rd, Sterling Heights, MI 48310
가격	15달러
영업시간	오전 10시~오후 11시 30분
소개	고기 및 한식류를 주로 판매한다.

ㅇ 산수갑산(San Soo Gab San)

도시명	시카고
전화번호	773-334-1589
주소	5247 N Western Ave, Chicago, IL 60625
가격	25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전 1시
소개	순두부찌개, 된장찌개 등 식사류를 비롯해 해물찜, 간장게장, 왕갈비, 주물럭 등의 요리까지 다양한 한국 음식을 선보임. 식당 내부가 커서 대규모 모임에 적합하다.

ㅇ 씨알 삼계탕(Ssyal Ginseng House)

도시명	시카고
전화번호	773-427-5296
주소	4201 W Lawrence Ave Chicago, IL 60630
가격	20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오후 9시 30분
소개	삼계탕이 주요 메뉴이며, 비빔밥, 우거지국, 순두부찌개 등 식사류도 가능하다.

ㅇ 한강(Han Gang Korean Restaurant)

도시명	애난데일
전화번호	703-256-7077
주소	7243 Little River Turnpike, Annandale, VA 22003
가격	15~70달러
영업시간	월~토: 오전 11시~오후 10시 30분 일: 오전 11시~오후 10시
소개	비빔밥, 냉면 등을 포함한 대표 한식 메뉴와 한식 바비큐 및 코스 요리를 제공한다.

ㅇ 삼미정(Sammi)

도시명	트로이
전화번호	248- 457-1835
주소	3634 Rochester Rd, Troy, MI 48083
가격	10달러
영업시간	오전 11시 ~오후 9시30분
소개	가벼운 음식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미시건주에서 찾기 힘든 분식류의 음식 또한 판매 중에 있다.

ㅇ 소 코리안 바비큐(S Korean Bbq)

전화번호	571-446-4950
주소	572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가격	10~135달러
영업시간	일~수: 오전 11시~오전 12시 금~토: 오전 11시~오전 2시
소개	인근 고깃집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식당이며 미국인들에게 굉장히 인기 많은 한식당. 고기 무제한을 25달러 정도에 즐길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힐튼 로스앤젤레스 에어포트(Hilton Los Angeles Airport)

도시명	LA
주소	5711 West Cenutry Blvd, Los Angeles, CA 90045
전화번호	855-605-0316
홈페이지	https://www3.hilton.com/en/index.html
숙박료	80~120달러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깨끗한 내부시설을 보유. 공항과 가까움.

ㅇ 엠버시 스위트 로스엔젤레스(Embassy Suites Los Angeles)

도시명	LA
주소	9801 Airport Blvd, Los Angeles, CA 90045
전화번호	855-605-0319
홈페이지	https://embassysuites3.hilton.com/en/
숙박료	80~140달러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깨끗한 내부시설을 보유. 공항과 가까움.

ㅇ 콘코드 호텔 뉴욕(Concorde Hotel New York)

도시명	뉴욕시
주소	127 E 55th St, New York, NY 10022
전화번호	212-355-2755
홈페이지	https://www.concordehotelnewyork.com/
숙박료	300~400달러 대

소개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로 청결하고 세련된 인테리어가 특징이다.

ㅇ 그랜드 하얏트 호텔(Grand Hyatt New York)

도시명	뉴욕시
주소	109 E 42nd St, New York, NY 10017
전화번호	212-883-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new-york/grand-hyatt-new-york/nycgh
숙박료	200~300달러 대
소개	뉴욕시 맨해튼 타임스스퀘어 인근에 소재한 4성급 호텔로 위치가 훌륭하고, 깔끔한 것이 특징이다.

ㅇ 파커 뉴욕(Parker New York)

도시명	뉴욕시
주소	119 W 56th St, New York, NY 10019
전화번호	212- 245-5000
홈페이지	https://www.parkernewyork.com/
숙박료	300~400달러대
소개	뉴욕시 맨해튼 미드타운의 센트럴 파크에 인접한 4성급 호텔로 출장자들에게 인기 있는 호텔이다.

ㅇ 코트야드 바이 매리어트 달라스 노스웨스트(Courtyard by Marriott Dallas Northwest)

도시명	달라스
주소	2930 Forest Ln, Dallas, TX 75234
전화번호	972-620-80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hotel-photos/dalnw-courtyard-dallas-northwest/
숙박료	80~100달러
소개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깔끔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달라스무역관 맞은 편에 위치하여 도보로도 접근이 가능하다.

ㅇ 옴니 달라스 호텔 앳 파크 웨스트(Omni Dallas Hotel at Park West)

도시명	달라스
주소	1590 Lyndon B Johnson Fwy, Dallas, TX 75234
전화번호	972 869 4300

홈페이지	https://www.omnihotels.com/hotels/dallas-park-west
숙박료	140~160달러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달라스 무역관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ㅇ 더블트리 바이 힐튼 호텔 달라스 니어 더 갤러리아(DoubleTree by Hilton Hotel Dallas Near the Galleria)

도시명	달라스
주소	4099 Valley View Ln, Dallas, TX 75244
전화번호	972-385-9000
홈페이지	https://doubletree3.hilton.com/en/hotels/texas/doubletree-by-hilton-hotel-dallas-near-the-galleria-DALVVDT/index.html
숙박료	140~160달러
소개	갤러리아 쇼핑몰에 인접하고 있으며, 달라스 무역관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소재하고 있다.

ㅇ 빌트모어 호텔 앤 스위트 산타 클라라 호텔(Biltmore Hotel and Suites Santa Clara Hotel)

도시명	산타 클라라
주소	2151 Laurelwood Rd, Santa Clara, CA 95054
전화번호	408-988-8411
홈페이지	https://www.hotelbiltmore.com
숙박료	100~120달러
소개	비즈니스맨들에게 적합한 호텔로, 내부시설도 제법 깨끗하고 위치도 인텔 본사 근처에 위치해 있다.

ㅇ 힐튼 산타 클라라(Hilton Santa Clara)

도시명	산타 클라라
주소	4949 Great America Pkwy, Santa Clara, CA 95054
전화번호	408-330-0001
홈페이지	http://hiltonsantaclara.com/
숙박료	150~300달러
소개	리바이스 경기장과 산타클라라 컨벤션 센터 인근에 위치해 있다.

ㅇ 하얏트 하우스 산타 클라라(Hyatt House Santa Clara)

도시명	산타 클라라

주소	3915 Rivermark Plaza, Santa Clara, CA 95054
전화번호	408-486-0800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ko-KR/hotel/california/hyatt-house-santa-clara/sjcxc
숙박료	200~300달러
소개	실리콘밸리 무역관 인근의 호텔로 취사시설이 있는 콘도형태로 장기숙박에 유리하다.

ㅇ 하얏트 리젠시 맥콜믹 플레이스(Hyatt Regency McCormick Place)

도시명	시카고
주소	2233 S Martin Luther King Dr., Chicago, IL 60616
전화번호	312-567-1234
홈페이지	https://www.hyatt.com/en-US/hotel/illinois/hyatt-regency-mccormick-place/chimc
숙박료	110~140달러
소개	많은 전시회가 개최되는 맥코믹 센터에 근접하여 전시회 참가객들에게 적합한 호텔. 내부시설도 깨끗하며 차이나타운 및 다운타운과 근접해있다.

ㅇ 윈담 그랜드 시카고 리버프론트(Wyndham Grand Chicago Riverfront)

도시명	시카고
주소	71 E. Wacker dr, Chicago, IL 60601-3755
전화번호	877-999-3223
홈페이지	https://www.wyndhamhotels.com/wyndham-grand/chicago-illinois/wyndham-grand-chicago-riverfront/overview?CID=LC:HR::GGL:RIO:National:46897
숙박료	115~150달러
소개	다운타운 중심가에 위치해있으며, 오래된 호텔이지만 리모델링이 진행되어 내부가 깨끗함. 시카고 중심가 호텔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ㅇ 웨스틴 미시간 애비뉴 시카고(The Westin Michigan Avenue Chicago)

도시명	시카고
주소	909 North Michigan Avenue, Streeterville, Chicago, IL 60611
전화번호	312) 943-72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chiwi-the-westin-michigan-avenue-chicago/
숙박료	110~140달러

소개	시카고의 유명한 거리인 다운타운 미시간 애비뉴에 위치함. 존 핸콕 센터 및 시카고 워터 타워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어, 관광과 비즈니스를 동시에 행할 수 있다.

ㅇ 레지던스 인-디트로이트 워런(Residence Inn - Detroit Warren)

도시명	워런
주소	30120 N Civic Center Dr, Warren, MI 48093
전화번호	586-558-805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dtwri-residence-inn-detroit-warren/
숙박료	99~229달러
소개	미국식 아파트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메리어트 그룹의 체인으로, 호텔 내부에서 조리가 가능하며, 조리 도구가 제공되어 장기 출장객이 애용한다.

ㅇ 해밀턴 호텔(Hamilton Hotel)

도시명	워싱턴DC
주소	14th and K Street, NW, Washington, DC 20005
전화번호	202-682-0111
홈페이지	https://hamiltonhoteldc.com
숙박료	80달러 대
소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하며, 가격이 저렴한 편이다.

ㅇ 메이플라워 호텔(Mayflower Hotel)

도시명	워싱턴DC
주소	1127 Connecticut Ave NW, Washington, DC 20036
전화번호	202-347-3000
홈페이지	http://www.themayflowerhotel.com/
숙박료	130~150달러
소개	비즈니스 호텔로 인지도가 높으며,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ㅇ 매리엇 말키스 호텔 워싱턴DC(Marriot Marquis Washington DC)

도시명	워싱턴DC
주소	901 Massachusetts Ave NW, Washington, DC 20001
전화번호	202-824-9200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travel/wasco-marriott-marquis-washington-dc/
숙박료	110~140달러
소개	깔끔한 시설을 자랑하며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이 좋다.

ㅇ 매리엇 트로이(Marriott Troy)

도시명	트로이
주소	200 W Big Beaver Rd, Troy, MI 48084
전화번호	248-680-9797
홈페이지	https://www.marriott.com/hotels/hotel-rooms/dtttt-detroit-marriott-troy/
숙박료	119~229달러
소개	디트로이트 근교인 트로이에 소재한 메리어트 그룹의 호텔로, 깔끔한 내부를 가지고 있다.

ㅇ 햄튼 인(Hampton Inn)

도시명	트로이
주소	100 Wilshire Dr, Troy, MI 48084
전화번호	248-247-3200
홈페이지	https://hamptoninn3.hilton.com/en/index.html
숙박료	143~189달러
소개	디트로이트 근교인 트로이에 소재한 힐튼그룹의 호텔 체인으로, 깔끔한 내부를 가지고 있다.

<자료원 : 숙박료는 스탠다드 룸 기준, 각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ㅇ LA 팜츄리 게스트 하우스(LA Palm tree guest house)

도시명	LA
주소	1241 S Bronson Ave, Los Angeles, CA 90019
전화번호	213-219-4099
홈페이지	https://www.palmtreehousela.com/
숙박료	10~35달러
소개	LA 팜츄리 하우스는 LA시의 허가를 받은 허가업소로 한인타운의 안전하고 조용한 곳에 위치해 있다.
비고	카카오톡 ID: jongok0420

ㅇ LA 써니하우스(LA Sunny house)

도시명	LA
주소	1035 Westchester Pl, Los Angeles, CA 90019
전화번호	213-327-6223
홈페이지	https://www.lasunnyhouse.com
숙박료	30~120달러
소개	산책과 운동을 하시기에 아름다운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ㅇ 우정장(Friendship Inn)

도시명	서니베일
주소	958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전화번호	408-733-8800
홈페이지	https://www.friendshipinn.com/
숙박료	169달러
소개	한인이 운영하는 합리적 가격대의 숙박시설이다.

사. 치안

치안상황

미국은 대체로 치안이 잘 확립되어 있어 여행객이나 출장자들도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하는 지역에 따라 범죄율이 높은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치안상황은 주요 도시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지역별 치안상황은 아래와 같다.

1) 뉴욕

뉴욕시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몰리는 맨하탄 지역은 대체로 치안이 양호한 편이다. 주요 관광지와 명소마다 경찰 인력이 배치되어 있고, CCTV도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총기 사고와 테러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과거 위험 지역으로 꼽혔던 맨하탄 할렘은 최근 도시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과거와 달리 현대화되고, 안전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막다른 골목에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고, 범죄자의 타겟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밖에 브롱스와 브루클린 일부 지역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 뉴욕시 범죄율은 뉴욕시경(NYPD)가 운영하는 통계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뉴욕시 범죄율 확인 웹사이트: https://compstat.nypdonline.org

2) LA

미국 서부 한인 비즈니스 밀집 지역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의 경우 영어가 능숙하지 않아도 생활에 불편함이 거의 없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고 치안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하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기타 대도시와는 달리 대중교통이 잘 발달한 축에 속하지는 않은 편이다. 그렇다 보니 한인타운 내에서는 낮 시간 외에는 먼 거리를 걸어다니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 차량 혹은 렌터카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한인타운 내에는 단기 혹은 장기 체류 고객을 대상으로 방 한 칸에 식사까지 제공하는 하숙집들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정보는 한인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운타운의 경우 치안 유지를 위한 도시 재정비 움직임과 최근 활발해진 재개발 움직임으로 인해 고층 오피스 및 호텔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주변에 Little Tokyo, China town도 존재한다. LA 패션 디스트릭트 및 자바 시장, 파이낸셜 디스트릭트 등이 있고 바로 인접해서 노숙자가 상주하고 있는 지역도 있으니 잘 알고 다닐 필요가 있다. 다운타운 남쪽으로 한인 타운과 인접한 USC(University of Sothern California) 근처의 South Central LA지역(Inglewood, Compton 지역)의 경우 1992년 LA 폭동 발생의 중심지로 오늘날도 치안이 좋지 못한 축에 속한다.

3) 시카고

시카고시는 마피아와 갱단 등 범죄조직 소탕을 위해 경찰력을 강화시킨 1991년 이후 범죄발생률이 꾸준히 감소 추세를 기록하며, 현재는 미국의 다른 대도시와 비교 도시의 전반적인 치안상태는 매우 양호한 편이나 총기사고, 마약범죄 등의 불안요인은 상존한다. 시내 중심가는 치안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번화가인 다운타운과 도시의 북쪽에 위치한 부촌을 벗어날 경우 간혹 소매치기와 같은 절도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한인상가(식당, 잡화상 등)가 밀집한 시카고시의 북쪽에 위치한 옛 코리아타운이 있었던, 로렌스와 링컨가 주변은 낮에는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밤에는 통행이 적어 취약한 지역이다. 시카고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오바마 하우스가 위치한 남부 지역은 흑인층이 주거 비중이 매우 높고 치안의 다소 문제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지역이며, 특히 시카고 남부 중에서도 시카고대학을 기준으로 140번가까지 흑인 밀집지역은 살인강도사건 등이 자주 발생해 주야를 불문하고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4) 디트로이트

디트로이트 지역은 범죄발생률이 대도시 중 매년 1~2위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 방문·출장 시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 극심한 불경기로 인해 버려지거나 불탄 가옥이 많으며 총기사고, 마약범죄, 강간, 절도 등의 강력 범죄 발생률이 높아 경찰들도 디트로이트 지역 근무를 기피할 정도이다. 디트로이트 시내(Downtown)는 경찰이 상주해 낮에는 치안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8마일 등 시 외곽 지역에서 특히 많은 범죄가 발생한다. 살인강도사건 등이 자주 발생하므로 주야를 불문하고 8마일 등의 지역은 최대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5) 마이애미

마이애미는 비슷한 크기의 메트로폴리탄 도시와 비교했을 때 평균 범죄율이 높은 편에 속한다. 폭력범죄는 등급 1-100 중 90.8로 미국 평균(31.1)보다 3배정도 높으며, 재산범죄는 61.7로 미국 평균(38.1)보다 약 2배정도 높다. 마이애미 데이드 내에서 많은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지역은 Liberty City, Overtown, Opa Locka, Carol City, Miami Gardens, Little Haiti 등이 있으며 이 지역들은 해가 진 이후에는 되도록이면 차로도 지나가지 않기를 권한다. 특히 마이애미 내 관광지로 유명한 Wynwood 바로 옆에 위치한 Overtown은 치안이 아주 좋지 않은 지역이기에 관광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마이애미 데이드 경찰청에서는 시민 범죄 감시대(Citizens' Crime Watch)와 협력하여 범죄율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수상한 사람이나 사고를 바로 경찰에서 신고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OP(Community on Patrol)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으로 관심있는 지역에 일어난 범죄를 검색 할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응급 전화인 911을 통해 교통사고 상황을 알린다. 인명 피해가 있을 경우, 구급차가 필요함을 알려 환자가 빠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

록 해야한다. 911 신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조서를 꾸민다. 또 교통사고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 견인 혹은 수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사고를 대비해 항상 운전 시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등을 지참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수리는 여러 곳의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둘 필요가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 분실을 대비해 복사본과 휴대전화로 미리 여권을 촬영해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과 대사관에 영락을 해야 한다. 한국 대사관에 신고를 하면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ㅇ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 ㅇ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 ㅇ 대사관 및 영사관 연락처
  - 주 미국 대사관: 202-641-8746(긴급), 202-939-5600
  - 주 뉴욕 총영사관: 646-674-6000
  - 주 로스엔젤레스 총영사관: 213-385-9300
  - 주 애틀랜타 총영사관: 404-522-1611
  - 주 호놀룰루 총영사관: 808-595-6109

3) 응급 전화번호

- ㅇ 화재 신고: 911
- ㅇ 범죄 신고: 911
- ㅇ 응급환자 발생 신고: 911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8. 생활정보

가. 주택

주택 임차 방법 및 유의사항

1) 주택임차 방법

주택 임차 방법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비슷하다. 온라인을 통해 거주하고 싶은 지역과 아파트, 주택 등을 리서치해 매니지먼트사나 주택소유주에게 연락해 임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온라인 리서치가 불가하다면, 렌트 전문 부동산 에이전시를 통하거나 직접 아파트 매니지먼트를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은행 서류, 은행잔고 증명, 최근 2~3년간 세금보고 서류, 고용증명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며, 경우에 따라 신용도를 조사하는 경우도 있다.
비용은 일반적으로 한 달 치 렌트와 한 달 치 렌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요구하며, 그 외 부가적으로 서류 진행에 따른 각종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뉴욕의 경우 주택 임차 수요가 높아 주택 임차에 따른 부동산 중개인 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료는 임차료 1~1.5개월분이다.

2) 계약 시 유의사항

무엇보다도 정원관리와 주요 주택관리는 집주인이 관리하는 것으로 명시할 필요 있다. 한국에서 정원 관리 경험이 없을 경우 잔디를 죽일 수 있는데 만일 잔디가 죽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그리고 전화, 전기, 가스 등 공공서비스, 케이블TV 등에 가입할 경우 세입자가 직접 전화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는 자신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좋다. 이들 서류들은 자녀의 학교 등록 시 이들 서류가 거주 사실확인서로 사용되고 있다. 전화, 전기, 가스 회사들은 미국에 처음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사전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일정액의 금액을 보증금으로 Deposit 할 것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될 경우 돌려받을 수 있다. 북부 뉴저지 버겐카운티 경우에는 100달러를 보증금으로 예탁하고 있다. 만일 집주인이 세입자임을 확인해 주어야 할 경우는 집주인이 전화, 전기, 가스회사 등에 사전에 전화를 걸어서 새로운 세입자에 대한 정보를 고지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3) 입주 시 유의사항

입주 전 부동산 소개업자와 함께 대상 주택을 세밀히 점검해볼 수 있으며, 문제가 있을 경우 부동산 소개업자를 통해 입주 전에 수리를 요청하거나 소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으며 보증금(Security deposit)을 전액 회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모든 문제점은 부동산 소개업자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울러 입주할 당시, 가전제품이나 전등, 벽, Door Lock 등과 같은 시설이나 도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 지나치지 말고 증명하는 서류를 만들어 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100% 환수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대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실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바로 말해서 수리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월세로 렌트비를 지급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월세의 10%~20%까지도 연체료를 요구하는 집주인들도 상당수 있으므로 체납이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전화

집 전화의 경우 AT&T, 버라이존 등 통신사를 통해 간단하게 설치할 수 있다. 원하는 통신사에 직접 연락을 취해 집 전화 설치 의사를 밝히면, 해당 통신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 전화기 설치를 도와준다.
통신사를 선택하기 전 미리 리서치를 통해 원하는 플랜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요즘은 TV 케이블, 인터넷과 유선전화를 함께 설치하면 더욱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랜도 있다.

전압/플러그

미국은 110v/60Hz를 사용하므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자제품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미국 방문 전 맞는 플러그를 준비하고, 필요할 경우 변압기도 준비해야 한다.

식수

물은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구매하거나 수돗물을 정수해 마신다. 많은 미국인들이 수돗물을 컵에 따라 바로 마시고, 식당에서도 수돗물을 마시는 물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수도관 노화 등으로 수돗물에서 납을 비롯한 중금속이 검출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나. 차량 구입 및 운전면허

구매방법

개인의 선호도 및 재정 상황에 따라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다. 신차 구입 시에는 경제적으로 부담되기는 하나, 고장이 잦지 않아 차량 수리비가 비싼 미국에서는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는 잦은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Carfax(해당 차와 관련된 과거 기록, www.carfax.com) 등을 딜러샵에 요구해 사고, 재난 등에 대한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자동차 구매는 딜러를 방문해 신차 혹은 중고차를 구매(신차의 경우 리스)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가의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동차 융자를 통해 구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자동차 대출 이자는 구매자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지며, 신용등급이 낮거나 미국에서의 신용 기록이 없을 경우 융자가 불가하거나 보증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차량가격

신차의 가격은 딜러에서 MSRP를 제공하지만, 중고차의 경우, 연식과 마일리지, 모델, 사고 여부 등에 따라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미국 소비자들이 중고차 가격을 알아보는 데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이 바로 자동차 전문 평가기관인 켈리 블루북이다. 중고차 가격은 켈리 블루북 웹사이트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 켈리블루북 웹사이트: https://www.kbb.com

운전면허 취득

미국은 주마다 운전면허 발급절차와 요구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해당 주의 차량국(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을 인터넷에서 서치해서 운전면허 취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면 훨씬 편리하다. 하지만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한국과 동일하다.

최근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을 미국에서도 인정해주는 주가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주는 2018년 1월 기준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애리조나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이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가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실기와 필기시험 없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해당 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을 치르지 않더라도 거주하는 주의 기본적인 교통법규 및 신호 표지판 등은 미리 숙지한 후 운전을 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주의 필기시험 통과 후, 지정된 날짜에 실기시험(Road Test)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ㅇ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사이트
- https://www.0404.go.kr/consulate/consul_license.jsp

ㅇ 주별 운전면허 발급기관(DMV) 사이트
- 뉴욕주: https://dmv.ny.gov/
- 뉴저지주: http://www.state.nj.us/mvc/About/MyMVC.htm
- 캘리포니아주: https://www.dmv.ca.gov/portal/dmv
- 매사추세츠주: https://www.massrmv.com/
* 여타 주의 운전면허발금기관 웹사이트는 www.google.com에서 DMV와 주명을 넣고 검색하면 된다.

국내 지상사 주재원들이 주로 거주하는 뉴저지 주의 경우,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거주지 증명, 여권, Social Security Number와 함께 6point를 채워야 하는데, Point를 채우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여권(4점), 은행 현금카드/Bank Statement/신용카드 중 하나(1점), 보험카드(1점)를 준비한다.
② 각 항목별 Point 점수는 아래 URL에서 확인 가능하다.
- 링크: http://www.nj.gov/mvc/pdf/Licenses/ident_ver_posterpint.pdf
③ 뉴저지 주의 경우, 상기 6 Point와 함께 한국 운전면허증이 있을 경우에 영사관 공증을 거쳐 제출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필기시험도 한국어로 응시 가능하다.

우리나라와 운전면허증 상호인증 협정이 체결된 주에서는 미국 체류 비자를 발급받고 거주하는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가 필기와 주행시험 없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다. 은행 계좌 개설

주요은행

ㅇ Chase Bank: 개인은행, 신용카드, 모기지, 자동차 융자, 투자 자문, 기업대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적으로 5,300개 이상의 지점과 15,500개의 현금인출기 보유(www.chase.com)
ㅇ Bank of America: 개인은행, 투자, 자산관리, 기타 금융 및 위험관리 상품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주 주요 금융기관 중 하나(www.bankofamerica.com)
ㅇ Citibank: 뉴욕에 본사를 둔 금융 서비스 회사로 포춘 500대 기업 중 32위에 오른 대기업. 전 세계 160여 개국에 진출해 있고 개인은행, 신용카드, 모기지, 기업대출, 투자자문 등 광범위한 업무 수행(https://online.citi.com)
ㅇ Bank of Hope: 뱅크오브호프는 2016년 7월 29일 BBCN 뱅크와 윌셔뱅크의 동등합병으로 탄생한 한국계 은행으로 뱅크오브호프는 11개 주에 걸쳐 63곳의 지점과 8곳의 대출사무소 운영하고 있음(https://korean-bankofhope.com/).
ㅇ 우리아메리카은행: 우리아메리카은행은 1984년 한국 우리은행의 미국 내 현지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23개 지점 운영(https://www.wooriamericabank.com/)

계좌 개설방법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여권, 운전면허증 등)만 지참하면 은행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가급적 은행을 바꾸지 않고 계속 이용하는 것이 크레딧(신용)을 쌓는 데 유리하다. 처음 은행을 선택할 때는 FDIC(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의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은행을 찾는 것이 필수다. FDIC 회원 은행의 경우는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체킹, 세이빙 등 은행 계좌당 25만 달러까지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주식투자 계정은 해당되지 않는다.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신용(Credit)의 점수가 매우 중요하다. 동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은행계좌 내 잔고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이 유지되느냐와 빌린 돈에 대해서 얼마나 잘 갚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목돈을 구좌에 입금해 두는 것보다는 금융거래를 반복하는 것이 크레딧을 쌓는 데 좋다. 만일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크레딧이 있을 경우 자신의 크레딧 점수를 무료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 무료 크레딧 점수 확인 사이트: www.creditkarma.com

크레딧이 없는 초창기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회사와 협약을 맺고 있거나 주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인맥을 이용해 신용에 대한 신분이 확인되면 발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만일 이런 네트워크가 없을 경우 자신의 은행 잔고를 담보로 은행에서 일정액을 빌린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이자와 함께 갚는 것으로 2~3회 반복하면 신용이 쌓이고, 이러면 가장 크레딧 금액이 적은 주유소 신용카드부터 발급을 받게 된다. 신용 카드 발급 전에는 데빗카드(Debit Card: 직불카드)가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고 이런 과정이 보통 6개월 정도가 지나면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크레딧이 쌓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많은 일들이 크레딧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차량할부 이자, 주택 모기지 이자율 등도 크레딧에 많은 영향을 받으므로, 크레딧 점수를 최대한 빨리 쌓고, 크레딧이 훼손될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는 결제수단으로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계좌에 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수표가 은행으로 돌아가는 경우 '바운스(발급한 수표를 현금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는 크레딧에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은행 계좌 개설은 비교적 간단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SSN 번호와 여권 혹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인근 은행 지점을 방문, 소정의 양식을 기입해 제출할 경우, 바로 현장에서 편리하게 계좌가 개설된다. 은행 계좌 개설 시, 직불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계좌가 개설되고 직불카드를 신청했을 경우, 통상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직불카드와 개인용 체크(수표)가 배달된다. 미국은 공과금이나 다른 비용 지불 시 개인용 체크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온라인뱅킹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수표 사용이 예전처럼 많지 않은 추세다. 또한, 은행 내 잔고가 제로(0)일 때는 직불카드 거래가 금지되도록 하는 OVERDRAFT 조항을 선택해 나중에 잔고가 마이너스(-)가 됐을 경우, 은행이 대납함으로써 '대납금액+고율의 벌칙성 수수료'를 지불하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라. 교육

- 주요 국제학교

ㅇ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Chicago-South Loop

도시명	Chicago, IL
커리큘럼	유치원 이전 아동부터 12학년 까지 커리큘럼이 있음. 한 반에 평균 15명 명이 수업을 들으며 영어, 수학, 과학, 디자인, 외국어(프랑스어, 독일어, 중국어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학비	$30,000/year
홈페이지	https://www.nordangliaeducation.com/our-schools/chicago/south-loop
비고	영국계

ㅇ Dalla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Dallas, TX
커리큘럼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 30분. 방과 후에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활동은 운동과 미술, 언어, 컴퓨터 등 다양함. 입학 2년 이내에 두 개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특징
학비	유치부 $17,150 1~6학년 $18,450 7~9학년 $20,000 10~12학년 $21,950

홈페이지	https://www.dallasinternationalschool.org
비고	프랑스계

ㅇ The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Michigan
커리큘럼	미시건주 파밍필드 힐즈에 소재한 국제 학교로, 유치원 과정부터 12학년 과정까지 지원하며, 한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온 학생을 위한 맞춤 수업을 진행. 방과후 활동으로 축구, 골프, 탁구 등의 활동이 있음.
학비	$ 14,000~18,000
홈페이지	http://www.theinternationalschool.org/

ㅇ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New York, NY
커리큘럼	1947년 유엔 학부모들에 의해 설립되어 자녀들을 위한 국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함. 현재 뉴욕 맨해튼과 퀸즈 두 곳에 캠퍼스가 위치하고 약 1,600명의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음. 수업 언어는 영어이고 모든 학생들에게 스페인어와 프랑스어를 교육함. 아랍어, 중국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러시아어를 선택적으로 학습 가능함. 학년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8시 25분에 등교해 4시 25분에 하교.
학비	1~4학년 까지 연간 $35,720 5~8학년 까지 연간 $37,040~37,555 9~12학년 까지 연간 $ 38,810~39,770
홈페이지	https://www.unis.org

ㅇ Washington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Washington D.C.
커리큘럼	초,중, 고등 과정을 모두 제공하며 언어 교육에 특화되어 있음. 수업시간은 중고등과정의 경우 오전 8시 15분 부터 각 3시 20분과 3시 45분까지임. 초등 과정의 경우 오전 8시 25분부터 오후 3시 25분까지 수업이 진행됨.
학비	초등과정의 경우 $36,600, 중등과정은 $40,790, 고등과정은 $41,380
홈페이지	https://www.wis.edu

- 현지학교

ㅇ Lake Forest Academy

도시명	Lake Forest, IL
커리큘럼	일반 고등학교 과정
학비	연간 $44,400

홈페이지	https://www.lfanet.org/
비고	사립학교

∘ Cranbrook School

도시명	Bloomfield Hills, MI
커리큘럼	미시건주 블룸필드에 소재한 사립 학교로, 유치원 과정과 초-중-고등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함.
학비	$ 35,000
홈페이지	https://schools.cranbrook.edu
비고	사립학교

∘ Walter Payton College Prep

도시명	Chicago, IL
커리큘럼	일반 고등학교 과정
학비	무료(추가 부대비용 제외)
홈페이지	https://www.wpcp.org/
비고	공립학교

∘ TAG Magnet School

도시명	Dallas, TX
커리큘럼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4시 30분. 특별활동으로는 체스, 비디오게임, 영화, 요가, 사진 등 다양함.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tagmagnet.org/
비고	영재 학생들을 위한 고등학교로 US News와 WorldReport가 발표한 2018년'Top High Schools in America'에서 11위를 차지

∘ Greenhill School

도시명	Dallas, TX
커리큘럼	수업시간은 아침 7시 45분~오후 3시 30분. 방과 후에는 특별활동을 선택할 수 있으며 특별활동은 운동과 미술, 음악, 컴퓨터 등 다양함.

학비	유치부~1학년 25,550달러 2~4학년 25,650달러 5~6학년 29,525달러 7~8학년 31,225달러 9-11학년 31,325달러 12학년 31,675달러
홈페이지	https://www.greenhill.org
비고	사립학교

∘ Hancock Park Elementary School

도시명	Los Angeles, CA
커리큘럼	일반 공립 초등학교와 동일
학비	학비는 연간 약 $20,000로 전미에서 상위10% 성적을 유지하는 학교임.
홈페이지	https://www.hancockparkschool.com
비고	공립학교

∘ The Archer School for Girls

도시명	Los Angeles, CA
커리큘럼	여학생 대상 사립 학교로 6-12학년 여학생 대상만 입학 가능. 매년 1월 31일 신청서 접수 마감. 11월부터 2월 중순까지 열리는 오픈하우스 참석하여 학부모 설명회에 참가해야만 접수 가능.
학비	학비는 연간 약 $25,600이며 추가비용으로 약 $2,000 소요. 학생의 약 40%가 각종 학비 보조혜택을 받고 있음.
홈페이지	https://www.archer.org/page
비고	사립학교

∘ John Burroughs Middle School

도시명	Los Angeles, CA
커리큘럼	일반적인 공립 중학교. 지원에 앞서 수학, 영어, 언어 등의 평가시험 필수
학비	학비는 연간 약 $30,000 달러이며 추가로 약 $1,000의 비용이 소요됨.
홈페이지	https://www.loyolahs.edu/
비고	공립학교

∘ Loyola High School

도시명	Los Angeles, CA
커리큘럼	사립 고등학교. 원서, 에세이, 부모 신앙 리포트 제출 필요. 그 외, 학교 증명서, 교장 추천서, 영어 수학 성적표, 성직자 추천서 필요. 1~2월 입학시험이 있으며 입학시험후 면접이 있음.
학비	연간 $6,000 가량
홈페이지	https://www.loyolahs.edu/
비고	사립학교

∘ Lisbon Grade School

도시명	Newark, IL
커리큘럼	일반 중학교 과정
학비	무료(추가 부대비용 제외)
홈페이지	https://www.lisbon.k12.il.us/
비고	공립학교

∘ Rochester High School

도시명	Rochester Hills, MI
커리큘럼	미시건주 로체스터 힐즈에 소재한 공립 고등학교로, 교육 과정의 경우 로체스터 교육청 지정 교육 과정을 따름.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www.rochesterhighschool.org
비고	공립학교

∘ District of Columbia International School

도시명	Washington D.C.
커리큘럼	중등 및 고등과정을 지원하며, 수업시간은 아침 8시 20분~오후 6시. 스페인어, 프랑스어 혹은 중국어 수업을 제공
학비	무료
홈페이지	https://dcinternationalschool.org/
비고	공립학교

마. 병원

ㅇ 김형석 치과

도시명	Wayne, MI
주소	35836 W. Michigan Ave. Wayne, Michigan 48184
전화번호	734-728-9300
진료과목	치과

ㅇ Kaiser Permanente Santa Clara Medical Center

도시명	Califonia
주소	700 Lawrence Expy, Santa Clara, CA 95051
전화번호	408-851-1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비고	Kaiser 보험 필요

ㅇ Stanford Express Care

도시명	Califonia
주소	52 Skytop St #10, San Jose, CA 95134
전화번호	669-294-8888
진료과목	응급병원

ㅇ Good Samaritan Hospital

도시명	Califonia
주소	2425 Samaritan Dr, San Jose, CA 95124
전화번호	408-559-2011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Northwestern Memorial Hospital

도시명	Chicago, IL
주소	251 E. Huron St. Chicago, IL 60611
전화번호	312-926-2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Rush University Medical Center

도시명	Chicago, IL
주소	1653 W. Congress Parkway Chicago, IL 60612
전화번호	888-352-7874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University of Chicago Medical Center

도시명	Chicago, IL
주소	5841 S. Maryland Avenue Chicago, IL 60637
전화번호	888-824-02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UT Southwestern Medical Center

도시명	Dallas, TX
주소	6201 Harry Hines Blvd., Dallas, TX 75390
전화번호	214-633-5555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Texas Health Presbyterian Hospital Dallas

도시명	Dallas, TX
주소	8200 Walnut Hill Ln, Dallas, TX 75231
전화번호	214-345-6789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Baylor University Medical Center

도시명	Dallas, TX
주소	3500 Gaston Ave, Dallas, TX 75246
전화번호	214-820-0111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Hollywood Presbyterian Hospital

도시명	Los Angeles, CA
주소	1300 N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27

전화번호	213-413-3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Cedars- Sinai Medical Center

도시명	Los Angeles, CA
주소	8700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48
전화번호	310-423-3277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Good Samaritan Hospital

도시명	Los Angeles, CA
주소	12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전화번호	213-977-2121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NYU Langone Medical Center

도시명	New York, NY
주소	550 First Avenue, New York, New York 10016
전화번호	212-263-73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Lenox Hill Hospital

도시명	New York, NY
주소	210 East 64th Street, New York, NY 10065-7471
전화번호	212-434-2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 Mount Sinai Hospital

도시명	New York, NY
주소	1 Gustave L. Levy Place, New York, NY 10029
전화번호	212-241-65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정 소아과

도시명	Rochester, MI
주소	930 W. Avon Rd. #17 Rochester, Michigan 48307
전화번호	248-651-5454
진료과목	소아과

ㅇ 천종길 내과

도시명	Southfield, MI
주소	24293 Telegraph Rd. Southfield, Michigan 48033
전화번호	248-579-3352
진료과목	내과

ㅇ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900 23rd St NW, Washington, DC 20037
전화번호	202-715-4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MedStar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2131 K St NW, Washington, DC 20037
전화번호	202-715-40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ㅇ Howard University Hospital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2041 Georgia Ave NW, Washington, DC 20059
전화번호	202-865-6100
진료과목	내과, 심장내과, 정형외과, 신경과, 안과, 피부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전 과목

바. 쇼핑 및 여가생활

- 쇼핑센터/몰/백화점

ㅇ Beverly Hills- Rodeo Drive

주소	Rodeo Drive, Beverly Hills, CA 90210
홈페이지	https://rodeodrive-bh.com/
비고	최고급 브랜드 쇼핑이 목표라면 베버리 힐스의 로데오 거리는 아이 쇼핑에 그치더라도, 꼭 들러야 할 명소. 전세계의 명품 부티크 샵들이 즐비하고 아름다운 상점들 속 유명 셀럽들도 자주 목격 되는 곳임.

ㅇ Water Tower Place

주소	835 N Michigan Ave, Chicago, IL 60611
홈페이지	https://www.shopwatertower.com/en.html

ㅇ Southgate Market

주소	1101 S Canal St, Chicago, IL 60607
홈페이지	https://www.mccafferyinc.com/portfolio/southgate-market

ㅇ Galleria Dallas

주소	13350 Dallas Pkwy, Dallas, TX 75240
홈페이지	https://www.galleriadallas.com/
비고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635 LBJ Fwy.와 Dallas N. Tollway가 만나는 지점에 위치한 갤러리아 달라스는 200여개가 넘는 고급 상점 및 백화점이 들어선 쇼핑몰. 빙상 스케이트를 즐길 수 있는 아이스 링크가 유명하다.

ㅇ NorthPark Center

주소	8687 N Central Expy, Dallas, TX 75225-4427
홈페이지	https://www.northparkcenter.com/
비고	유명 디자이너들의 매장이 밀집해 있으며, 다양한 이벤트가 많이 개최되는 달라스 최대 규모 쇼핑몰이다.

ㅇ Fairoaks Mall

주소	11750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홈페이지	https://www.shopfairoaksmall.com/

비고	버지니아 페어팩스에 위치한 쇼핑몰로 타이슨스 코너 몰보다 규모는 작지만 Sushi On, Cheese Cake Factory 등 괜찮은 레스토랑들이 있음.

ㅇ Stonebriar Center

주소	2601 Preston Rd, Frisco, TX 75034
홈페이지	https://www.shopstonebriar.com
비고	북 텍사스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쇼핑몰롤 각종 브랜드와 백화점이 밀집해 있다. 이 곳에서 쇼핑을 하기 위해 멀리에서 찾아오는 방문객의 수도 매우 많다.

ㅇ The Americana at Brand

주소	889 Americana Way, Glendale, CA 91210
홈페이지	https://americanaatbrand.com/
비고	총 250개의 매장과 5개의 백화점이 들어선 대형 쇼핑 센터로, 엘에이 관광 도중에 효율적으로 쇼핑하기 좋은 곳에 위치

ㅇ The Stanford Shopping Center

주소	660 Stanford Shopping Center, Palo Alto, CA 94304
홈페이지	https://www.simon.com/mall/stanford-shopping-center
비고	스탠포드 대학 근처에 위치한 복합쇼핑몰로 아울렛으로 유명한 사이먼그룹에서 운영함.

ㅇ Fashion Outlets of Chicago

주소	5220 Fashion Outlets Way, Rosemont, IL 60018
홈페이지	https://www.fashionoutletsofchicago.com

ㅇ Santana Row

주소	377 Santana Row, San Jose, CA 95128
홈페이지	http://www.santanarow.com/
비고	실리콘밸리의 가로수길로 아마존북스토어, 테슬라 매장, 부티크호텔, 다양한 레스토랑들이 있음.

ㅇ Westfield Valley Fair

주소	2855 Stevens Creek Blvd, Santa Clara, CA 95050
홈페이지	https://www.westfield.com/valleyfair

비고	실리콘밸리의 업스케일 쇼핑몰로 노드스트롬, 메이시스 등 주요 백화점들과 애플스토어, 마이크로소프트 , 갭, 디즈니스토어 등 매장이 위치

ㅇ Somerset Collections

주소	2800 W Big Beaver Rd, Troy, MI 48084
홈페이지	https://www.thesomersetcollection.com/
비고	디트로이트 근교인 트로이(Troy)에 위치한 쇼핑몰로, 180개 이상의 매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식당과 푸드 코트 또한 위치함.

ㅇ Tysons Corner Mall

주소	1961 Chain Bridge Rd, Tysons, VA 22102
홈페이지	http://www.tysonscornercenter.com/
비고	버지니아 주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로 디씨 중심지에서 차로 약 30분 소요

ㅇ Woodbury Outlet

주소	498 Red Apple Court, Central Valley, NY 10917
홈페이지	https://www.premiumoutlets.com/outlet/woodbury-common
비고	명품 팩토리 아웃렛

ㅇ Macy's

주소	151 W 34th Street, New York, NY 10011
홈페이지	https://www.macys.com/
비고	중저가 백화점

ㅇ The Grove at Farmer's Market

주소	189 The Grove Dr. Los Angeles, CA 90036
홈페이지	https://thegrovela.com/
비고	2002년에 설립된 옥외 쇼핑몰로, 약 50개의 매장과, 백화점, 레스토랑, 영화관 등이 입점. 인근의 파머스마켓에서는 다양한 먹거리와 식재료 구입 가능

- 식품점

ㅇ Federal Plaza Farmer's Market

도시명	Chicago, IL

주소	W Adams St &S Dearborn St, Chicago, IL 60604
취급 식료품	신선 과일, 채소, 꽃 등을 판매
비고	다운타운 지역에서 열리는 파머스마켓. 시카고 근교에서 생산된 과일, 채소, 음식들을 판매한다.

∘ Komart

도시명	Dallas, TX
주소	2240 Royal Ln #306, Dallas, TX 75229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한국제품
비고	달라스 지역 내 주요 한인 마트

∘ Whole Food Market

도시명	Birmingham, MI
주소	2100 E Maple Rd, Birmingham, MI 48009
취급 식료품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비고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다 가격대가 있는 편

∘ H Mart

도시명	Carrollton, TX
주소	2625 Old Denton Rd, Carrollton, TX 75007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한국제품
비고	미국의 주요 한인 마트

∘ J.P. Graziano Grocery

도시명	Chicago, IL
주소	901 W Randolph St, Chicago, IL 60607
취급 식료품	치즈, 소시지 등 각종 이탈리아 식재료
비고	정통 이탈리아식 치즈, 육류, 소시지 등을 판매하며 해당 재료로 만든 샌드위치, 샐러드도 취급한다.

⚬ Food Bazaar Supermarket

도시명	Long Island City, NY
주소	42-02 Northern Blvd, Long Island City, NY 11101
취급 식료품	남미, 한국 식품을 포함한 아시안 식품
비고	미국 식품을 포함한 다양한 해외 식료품을 판매하는 대형 수퍼마켓이며 24시간 운영됨.

⚬ Trader Joe's

도시명	Los Angeles, CA
주소	1600 N Vine St, Los Angeles, CA 90028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다양한 문화권의 특색있는 식재료 판매로 유명. 미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음.

⚬ Whole Foods

도시명	Los Angeles, CA
주소	6350 W 3rd St, Los Angeles, CA 90036
취급 식료품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비고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다 가격대가 있는 편

⚬ Galleria Market

도시명	Los Angeles, CA
주소	325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취급 식료품	한국 식료품
비고	한인타운에 위치한 한인마트로 신선식품뿐 아니라 한국의 유명 식품 브랜드 제품들 판매

⚬ Whole Foods

도시명	New York, NY
주소	10 Columbus Circle Ste Sc101, New York, NY 10019
취급 식료품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비고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다 가격대가 있는 편

∘ Safeway

도시명	Santa Clara, CA
주소	3970 Rivermark Plaza, Santa Clara, CA 95054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고기 등 각종 식료품과 공산품, 유제품 판매
비고	미국의 가장 대중적인 슈퍼마켓 체인

∘ Central Market

도시명	Southlake, TX
주소	1425 E Southlake Blvd, Southlake, TX 76092
취급 식료품	육류, 치즈, 와인 등 각종 식료품

∘ Hankook Supermarket

도시명	Sunnyvale, CA
주소	1092 E El Camino Real, Sunnyvale, CA 94087
취급 식료품	한국식료품
비고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국마켓

∘ H Mart

도시명	Troy, MI
주소	2963 E Big Beaver Rd, Troy, MI 48083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한국제품
비고	미국의 주요 한인마트

∘ Whole Foods Market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1440 P St NW, Washington, DC 20005
취급 식료품	천연 및 유기농 제품, 친환경 제품
비고	신선한 유기농 제품 및 건강 관련 식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프리미엄 슈퍼마켓 체인임. 다른 식료품점보다 가격대가 있는 편

∘ The Wharf DC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1100 Maine Ave SW, Washington, DC 20024
취급 식료품	수산시장
비고	수산시장과 음식점들이 모여있는 곳

∘ Trader Joe's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1101 25th St NW, Washington, DC 20037
취급 식료품	과일, 생선 등 각종 식료품과 특산품
비고	다양한 문화권의 특색 있는 식재료 판매로 유명. 미각을 자극하는 독특한 상품들로 구성되어 있음.

- 기타 편의시설

∘ Dyker Beach Golf Course

도시명	Brooklyn, NY
주소	1030 86th St 7th Ave, Brooklyn, NY 11228
홈페이지	https://www.dykerbeachgc.com
소개	브룩클린 공원 안에 있는 18-Hole 골프코스

∘ Sheridan Park Pool

도시명	Chicago, IL
주소	910 S. Aberdeen St. Chicago, IL 60607
홈페이지	https://www.chicagoparkdistrict.com/parks-facilities/sheridan-park-pool
소개	Sheridan Park에 위치한 공공 수영장

∘ Dwight D. Eisenhower Golf Course

도시명	City of Industry, CA
주소	1 Industry Hills Parkway, City of Industry, CA 91744
홈페이지	https://www.ihgolfclub.com/course-practice/eisenhower-course
소개	18-Hole 골프코스

∘ Stevens Park Golf Course

도시명	Dallas, TX
주소	1005 N. Montclair Avenue, Dallas, TX 75208

홈페이지	http://www.stevensparkgolf.com
소개	달라스에 소재한 골프장

∘ Bowes Creek Country Club

도시명	Elgin, IL
주소	1250 Bowes Creek Blvd, Elgin, IL 60124
홈페이지	http://www.menahousehotel.com
소개	일리노이 엘긴에 소재한 골프장

∘ Texas Star Golf Course

도시명	Euless, TX
주소	1400 Texas Star Pkwy, Euless, TX 76040
홈페이지	https://www.texasstargolf.com
소개	율레스에 소재한 골프장

∘ Aroma Spa &Sports LLC

도시명	Los Angeles, CA
주소	36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홈페이지	https://www.aromaresort.com
소개	골프 연습장 및 피트니스 센터

∘ Equinox

도시명	New York, NY
주소	10 Columbus Cir, New York, NY 10019
홈페이지	https://www.equinox.com/
소개	미국 전역에 지점을 갖춘 고급 피트니스 센터. 일부 지점을 수영장을 갖추고 있음.

∘ The Golf Club at Chelsea Piers

도시명	New York, NY
주소	Pier 59, 18th Street Hudson River Park, New York, NY 10011
홈페이지	https://www.chelseapiers.com/golf/
소개	맨하탄 첼시피어에 위치한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골프 연습장

⚬ Emagine Royal Oak

도시명	Royal Oak, MI
주소	200 N Main St, Royal Oak, MI 48067
홈페이지	http://www.emagine-entertainment.com/locations/royal-oak/
소개	디트로이트 근교 로얄오크(Royal Oak)에 소재한 영화관

⚬ Santa Clara Golf &Tennis Club

도시명	Santa Clara, CA
주소	5155 Stars and Stripes Dr, Santa Clara, CA 95054
홈페이지	https://www.santaclaragc.com/
소개	산타클라라에 소재한 골프장 및 테니스클럽

⚬ Sand Canyon Country Club

도시명	Santa Clarita, CA
주소	27734 Sand Canyon Rd., Santa Clarita, CA 91387
홈페이지	https://www.sandcanyoncc.com
소개	27-Hole 골프코스

⚬ Sanctuary Lake Golf Course

도시명	Troy, MI
주소	1450 E South Blvd, Troy, MI 48084
홈페이지	https://www.golftroy.com/sanctuary-lake
소개	디트로이트 근교 트로이(Troy)에 소재한 골프장

⚬ East Potomac Golf Course

도시명	Washington, DC
주소	972 Ohio Dr SW, Washington, DC 20024
홈페이지	https://www.golfdc.com/east-potomac-gc
소개	벚꽃을 볼 수 있는 골프코스. 2개의 9-Hole 코스와 1개의 18-Hole 코스가 있음.

사. 현지 공휴일

공휴일명	날짜	비고
New Year's Day	2019-01-01	
Birthday of Martin Luther King, Jr.	2019-01-21	
Washington's Birthday	2019-02-18	2월 셋째 월요일
Memorial Day	2019-05-27	5월 마지막 월요일
Independence Day	2019-07-04	
Labor Day	2019-09-02	9월 첫째 월요일
Columbus Day	2019-10-14	10월 둘째 월요일
Veterans Day	2019-11-11	
Thanksgiving Day	2019-11-28	11월 넷째 목요일
Christmas Day	2019-12-25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생활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9. KOTRA 무역관 안내

뉴욕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460 Park Avenue, 14th Floor, New York, NY 10022
- 전화번호: +1-212-826-0900
- 이메일: kotrany@hotmail.com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newyork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지하철
    4,5,6 트레인 59st
    E, M 트레인 5Av/53
    F 트레인 Lexington/63ave
    N, Q, R 트레인 Lexington/59st 역에서 하차
    Park Av, 57st으로 도보 10분 시티은행 옆 건물. 지하철 요금은 $2.75
  - 버스: QM21, X10, X10B, X17, X17J, X63, X64, X68, X31 M101, M102, M103, Q32
    Park Av, 57st으로 도보 5~10분 시티은행 옆 건물.
  - 택시: 공항에서 맨하탄까지 약 $60

- 건물 도착 후
  - 14층에 위치.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로스앤젤레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4801 Wilshire Blvd. Suite 104, Los Angeles, CA 90010
- 전화번호: +1-323-954-9500
- 이메일: info.kotrala@gmail.com
- 홈페이지: www.kotrala.com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택시: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수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 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받을 수 있음. 소요시간은 30분 정도며 요금은 $30-40 정도임(Tip 별도)
  - 렌터카: 405번 프리웨이(북)으로 진입하셔서 약 10분간 북진. 10번 프리웨이(동)로 프리웨이를 변경하셔서 약 20분 서쪽으로 진행. Crenshaw로 나가는 출구로 프리웨이에서 벗어나 Crenshaw 북쪽으로 진행. Crenshaw가 끝나는 지점에서 Wilshire Blvd를 만나게 되며 동 지점에서 좌회전하여 약 3~5분간 서쪽으로 진행하면 우측에 해외무역관 건물을 만나게 됨.

- 건물 도착 후
  - 로비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방명록을 작성 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방문 시간 및 휴무 등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시카고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11 E Upper Wacker Dr #2229, Chicago, IL 6060
- 전화번호: +1-312-644-4323
- 이메일: info@kotrachicago.com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chicago

공항-무역관 이동

- 택시이용
  -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수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함.
  - 소요시간은 40분-1시간 정도이며, 요금은 $ 45 - 50정도임. 요금의 15%를 별도로 팁으로 주는 것이 현지 관행

- 공항 Shuttle 이용(Go Airport Express 기준)
  - 공항 셔틀은 우리나라의 밴 정도의 크기로 매일 아침 6:00에서 저녁 11:30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운행됨
  - 시내 주요호텔과 연결되어 특히 호텔에서 공항, 공항에서 호텔까지의 이동에 편리함
  - 요금은 1인당 평균 28불 정도임.
  - Ticket 구입 및 Pickup 장소는 Terminal 1, 2, 3의 경우 짐 찾는 곳(Baggage Claims) 맞은편에 위치하며 Terminal 5의 경우 세관신고서(US Customs)를 나와 밖에 위치하고 있음

- 전철 이용
  - 약 45분 소요 (요금: $2.50) Blue Line 전철은 공항과 시내까지 24시간 운영되며 Lake St. 과 Clark 역에서 하차
  - 시카고 무역관까지는 도보로 약 15분 정도 소요됨.

달라스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3030 LBJ Freeway #1200, Dallas, TX USA 75234
- 전화번호: +1-972-243-9300
- 이메일: inquiry@kotradallas.com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dallas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택시: 짐을 찾고 밖으로 나오면 택시 정류장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운전수에게 무역관 주소를 보여주면 무역관 앞까지 안내. 소요시간은 약 15분이며, 요금은 $35~$45 정도 (Tip 별도)
  - 렌터카: 공항에서 무역관까지는 약 12마일 거리. 공항 북쪽 출구를 거쳐 635번 고속도로 EAST 방향을 타고 달라스를 향해 오다가 JOSEY EXIT으로 나온 뒤, 635번 고속도로 갓길로 약 100M를 가면 오른쪽에 17층짜리 유리 건물 두 동이 나오는데 동쪽에 있는 건물이 무역관 소재 건물 ('CLUB CORP'라는 글씨가 써 있는 건물의 12층 1200호)

ㅇ 건물 도착 후
- 건물 1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된다. 자동차로 이동한 경우 주차 후 건물 1층 Security Desk에서 Visitor List를 작성해야 한다.

워싱턴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1660 L St. NW, Suite 301, Washington DC 20036
ㅇ 전화번호: +1-202-857-7919
ㅇ 이메일: washington@kotradc.org
ㅇ 홈페이지: www.kotra.or.kr/KBC/washingtond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버스 SL1번 탑승 후 Reston Station에서 하차 후 Wiehle- Reston East 지하철역에서 Silver Line 이용하여 Farragut West Station에서 하차 후 도보로 약 4분
- 공항에서 5A 번 버스를 이용하여 N Moore St &Rosslyn Station에서 하차 후 Rosslyn Station에서 Orange line을 이용하여 Farragut West Station에서 하차 후 도보로 약 4분
- 택시: 공항에서 택시 이용 시 워싱턴 디씨 중심지까지 약 $60-$68 달러

ㅇ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싸인 후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3층 301호 워싱턴 무역관 도착

실리콘밸리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ㅇ 주소: 3003 North First Street, San Jose, CA 95134, USA
ㅇ 전화번호: +1-408-432-5000
ㅇ 이메일: info@kotrasv.org
ㅇ 홈페이지: www.kotrasv.org

공항-무역관 이동

ㅇ 공항 출발 시
- 승용차 이용 : 101 Highway나 280 Highway를 통해 올 수 있으며, 약 1시간 소요
- 공항 밴 서비스 이용 탑승 및 티켓 구매 : International Terminal 3층 Information
* 공항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밴 서비스
* 온라인 예약(https://www.supershuttle.com) 혹은 전화 (415)558-8500 예약 가능
- 한인 콜택시 이용 : 공항에서 KOTRA까지 약 $120 정도 청구 반드시 출국 전 사전예약이 필요
- 우버(Uber)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 (출국 전 자신의 스마트폰에 미리 설치)

ㅇ 건물 도착 후
- 로비 Security Desk에서 방문처를 밝히고 신분증을 제시하면 무역관에 유선으로 확인 후 출입증을 제공해 준다.

- 무역관의 확인을 위하여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디트로이트 무역관

무역관 주소 및 우편배송지

- 주소: 101 West Big Beaver Road Ste 545, Troy MI 48084
- 전화번호: +1-248-619-1601
- 이메일: dtt_ktc@kotra.or.kr
- 홈페이지: www.kotra.or.kr/KBC/detroit

공항-무역관 이동

- 공항 출발 시

  - 우버 / 리프트 : 스마트폰 앱인 우버 또는 리프트를 사용하여 무역관 주소인 101 West Big Beaver Road를 입력 후 배정된 운전자를 통해 무역관 방문이 가능하다 (50 - 70달러)
  - 택시: 공항에서 무역관으로 이동시 약 60-80달러가 소모되며, 요금의 10-20% 정도의 수고비 (Tip)가 금액에 가산된다

- 건물 도착 후

  - 무역관은 컬럼비아 센터 빌딩(101동) 5층에 위치. 방문 전 이메일 또는 유선으로 방문 일정을 사전에 협의하는 것이 좋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국가정보(참고정보-KOTRA 무역관 안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